ISSN 2093-5811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년 6월

차 례

-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오원석 · 박광서 · 김필준 · 강성훈 / 1
-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 · LEE, Chun-Su / 25
-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전후한 유로화와 달러화의 환율변동성과 조건부공분산 분석 ····· 김종선 / 43
- 달러 선물을 이용한 무역대금 변동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임병진 / 67
-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선혜 · 박세운 / 87
- 자연자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김미정 · 최대석 / 117
- 한-우즈베키스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 유승균 / 153
-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실증 연구 ····· 오문갑 / 171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관한 연구 ····· 손용정 / 195

□ 부 록 ····· 213

한국무역보험학회

ISSN 2093-5811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Volume 16 Number 2 June 2015

Contents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Import Insurance in Usage
  Oh, Won Suk · Park, Kwang So · Kim, Pil Joon · Kang, Sung Hoon / 1
-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 · LEE, Chun-Su / 25
- An Analysis on Price Volatility and Conditional Covariance Effect between Won-Euro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 Kim, Chong-Sun / 43
- An Empirical Study on the Trading Price Fluctuation of Foreign Exchange to Risk Management by Dollar Currency Futures
  ····· Yim, Byungjin / 67
- A Study on the Impact of Political Risk on the FDI Inflow
  ····· Lee, Sunhae · Park, Sae Woon / 87
-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ulation of Trade in Natural Resources ····· Kim, Mie-Jung · Chae, Dae-Seok / 117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ervice Trade between Korea-Uzbekistan ····· Yoo, Seung-Gyun / 153
-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Partnetship between Shippers and Forth-Party Logistics Providers in China ····· Oh, Moon-Kap / 171
- A Study on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Korea FTA
  ····· Son, Yong-Jung / 195

▫ Annex ····· 213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1~23.

논문접수일 : 2015.05.22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오 원 석* · 박 광 서** · 김 필준 *** · 강 성 훈****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수입보험제도와 활용현황
Ⅲ.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
Ⅳ. 수입보험의 활용 확대방안
Ⅴ.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입보험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입보험의 인수실적이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이 99%, 대기업 사용 비중이 75%를 차지하여 특히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중소기업의 사용실적이 미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입보험의 사용 부진 사유가 수입보험에 대한 K-sure의 소극적 지원, 대상품목의 제한, 홍보부족 등 때문이었다.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을 수입기업, 국민경제, 수출증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활용확대 방법으로 고객 친화적으로 현행 수입보험제도의 재정비, 새로운 수입보험 상품의 개발, 수입보험에 대한 K-sure의 역할 재정립,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수입보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역보험기금의 부족, 무분별한 수입증대 및 국내 생산업자의 저항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수입보험, 무역보험, 수입자용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수입지원제도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mail: wsoh@skku.ac.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E-mail: kspark40@konkuk.ac.kr
*** 공동저자,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E-mail: kpj0326@ksure.or.kr
**** 공동저자, 한국수입협회 부장, E-mail: shogang@koima.or.kr

Ⅰ. 서 론

무역의 궁극적 목적이 수입을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수입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수출지원에 상응하는 수입지원제도의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 수출용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은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실현되며, 내수용 소비재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수입은 수입국의 반발을 무마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8위라는 무역규모에 걸맞은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수입지원제도로서 수입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에 도입된 수입보험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원자재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 무역보험법의 제정[1]으로 무역보험이 수출보험에서 수입보험으로 확대하였지만, 수입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 수입기업 및 정책당국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법에서 수입이란 대체로 수출용 원자재 및 물품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만 이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수입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입보험의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술하면 수출과 균형을 이루는 수입의 입장에서 무역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수입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입보험의 확대 필요성을 수입자측면, 국민경제적 측면, 수출증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수입보험 상품과 활용현황을 제도 자체, 인수실적 및 통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보험의 활용 확대방안으로써 현행 수입보험 보완, 새로운 수입보험 상품개발, 무역보험기금 확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에는 박성하(2010), 안근우(2012), 오원석 외(2012), 유승균 외(2012), 이주태 외(2012), 이현준 외(2012), 최미수(2013) 등이 있다.[2] 이들 연구들은 주로 수

---

1)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함에 맞추어 종전의 수출보험법(법률 제2063호로 1968.12.31.에 제정된 후 2009.4.1.까지 17차례 개정)을 무역보험법(법률 제10228호(2010.4.5.)으로 대체하여 입법됨

2) 박성하(2010), “국가경제에 중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수입보험”, 『무역보험』; 안근우(2012), “인수사례로 본 수입보험제도”, 『무역보험』; 오원석 · 이병문 · 박세훈 · 유승균(2012), “무역 1조달러 수성을 위한 수입보험 확대방안”, 한국무역보험학회 ; 유승균 · 한수범(2012), “수입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이주태 · 안병수(2012), “우리나

입보험제도 소개 내지 수입보험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수입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활용확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방식을 병행하여 선행 연구논문, 입법자료,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수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우리나라 수입보험제도와 활용현황

1. 우리나라 수입보험 상품

2015년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에서 제공하는 수입보험상품에는 국내기업의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 수입자금을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하는 『금융기관용』이 있다.[3)]

수입자용 수입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험(해외수출국의 국가위험)과 수입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해외 수출기업의 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4)] 즉,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에 선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출국 또는 수출기업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가 지급하는 보험이다.

반면에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K-sure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K-sure가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제도와 유사하나,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수출에 포커스를 둔 반면, 수입보험 금융기관용은 순수하게 수입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라 수입보험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이현준 · 임현나 · 장봉제(2012),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활성화 방안”,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 논문 ; 최미수(2013), “수입보험 약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3)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 상품: https://www.ksure.or.kr/trade/insurance/importer01.jsp

4) 박성하(2010), “국가경제에 중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수입보험”, 『무역보험』 통권 제160호, 한국무역보험공사, p.35

다. 금융기관용 수입보험과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금융기관이 무역업체를 위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실행 후 해당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경우 K-sure가 은행이 약관을 준수할 경우에 대위변제하는 보증 성격이다. 금융기관용 수입보험과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운영방법에서 유사하나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수입보험(수입자용/금융기관용)과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비교

구 분	수입자용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험계약자	국내 수입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피보험자	국내 수입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계약상대방	해외 수출기업	국내 수입기업	국내 중소수출기업
보험목적물	국내 수입기업의 선급금	국내 수입기업을 위한 대출/지급보증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대출/지급보증
담보위험	수출국위험/수출기업 위험(단기수출보험과 동일)	국내 수입기업 위험	국내 수출기업 위험
대상 거래	주요자원, 시설재, 첨단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주요자원, 시설재, 첨단제품[5]	수출용 원자재
도입 시기	2010. 7월	2010. 7월	2002. 2월
한도책정방식	보상한도 (단기수출보험과 동일)	인수한도	인수한도
심사 포인트	해외 수출기업 신용위험	국내 수입기업 신용위험	국내 수출기업 신용위험
지원방식	개별	회전/개별	회전/개별
부보율	95%(중소기업 100%)	100%	90%[6]
보험요율[7] (1년 기준)	0.36%(A)~1.26%(F)	· 대출 및 유전스 L/C: 0.5%(A)~1.45%(F) · 일람불 L/C: 0.13%(A)~0.36%(F)	0.5%(A) ~ 1.45%(F)
보험금 지급시한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내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내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내
구상약정 체결	–	K-sure↔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K-sure↔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 자료: 저자 작성

2.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활용현황

(1) 수입보험 활용 관련 통계

수입보험이 도입된 2010년 이후 2015년 1월까지 수입보험 인수실적은 7.7조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887.3조원)의 0.87%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 비중이 74.86%, 금융기관용이 99.18%로써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수입보험 인수실적은 2013년 2.2조원을 기록한 후 2014년 소폭(전년 대비 1.16%) 하락하였고, 이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8] 해당기간 이용업체수는 전체 41,758개사의 2.29%인 956개사로써 전체 인수실적 중에서 수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0.87%) 보다는 높았다. 이용업체는 대기업이 34개사(수입보험 전체 이용업체의 3.56%)에 불과하나, 인수실적은 74.86%로 대기업의 건당 평균 거래금액이 컸다. 수입자용은 7개사(수입보험 전체 이용업체의 0.73%)만 이용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수입자용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수입보험 인수건수는 7,833건으로 전체(3,583,199건)의 0.22%로 전체 실적 대비 수입보험 인수실적 비중(0.87%)과 전체 이용업체수 대비 수입보험 이용업체수 비중(2.29%) 보다 낮았다. 수입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423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3조4,128억원)의 1.24%에 불과하지만, 수입보험 사고율 및 손해율은 각각 0.55%, 491.86%로 전체(0.38%, 107.13%) 보다 각각 0.17%p 및 384.7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자(K-sure) 입장에서는 수입보험이 타 종목에 비해 영업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금융기관용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에서 수출용원자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6) 1994.11월 제도 도입이후 2012.6월까지 100%이었으나, K-sure와 은행과의 리스크 분담차원에서 2012.7월부터 부분 보증제를 실시하였다.

7) 수입보험의 경우 주요자원에 대한 할인율이 30%이며,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의 경우 유망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 20% 할인하고 있으며,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요율이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대출 및 유전스 L/C와 동일한데 그 이유는 K-sure입장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이든 국내 수입기업이든 결국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 대하여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행한 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 K-sure는 그동안 철강 또는 원목 수입기업의 보험사고가 급증(2014년 수입보험 보험금지급액: 325억원)하여 책정 가능한도를 줄이고 동 품목에 대한 보험요율을 할증하는 등 수입보험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입보험 인수실적이 2014년 1월 2,410억원에서 2015년 1월 1,275억원으로 47.10% 감소하였는데, 전체 종목 인수실적 하락폭인 10.95%(2014년 1월 135,798억원 → 2015년 1월 120,929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 수입보험 활용이 미진한 사유

우선, 2010년 수입보험 도입 시 수입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상품설계를 하지 않았고, 수입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에 소극적[9]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K-sure는 애초부터 수입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아니라 K-sure가 수입거래도 지원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회사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추된다. K-sure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공적 수출지원기관으로써 수출을 지원해 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수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간 전체 보험종목의 손해율은 107.13% 이지만 수입보험의 손해율은 491.86%로써 타 종목에 비해 약 4.6배에 달하여 무역보험기금 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 K-sure는 철강 또는 원목 수입기업에 대해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음으로, 수입보험 대상품목이 주요자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입보험 대상품목이 주요자원, 시설재, 첨단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등 일정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10] 특히, 수입보험 대상품목은 주로 대기업이 취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중소 수입기업이 상기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7.1%에 달하여 중소기업에게 수입보험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응답도 있다.

특히, 금융기관용에 비해서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활용이 저조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보험이 도입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입보험 인수실적은 7.7조원인데 이 중 99.18%(76,791억원)가 금융기관용이고 수입자용은 0.82%에 불과하다.

국내 수입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자기 자금으로 선지급하고 추후 문제가 있을 때 보상받기를 원하기 보다는 실제 자금차입 효과가 있는 금융기관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수입자들이 선급금 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item)이 많지 않아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화 획득용 원료의 경우는 이미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에서 수출용 원자재라는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입자용 수입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선지급해야 하지만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K-sure의 신용보증서가 수입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역할을 제공함으로 자기 자금의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9) 이현준 · 임현나 · 장봉제,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보험학회 제5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2012.11, pp.21-22

10) 이제홍, “적용 가능한 무역보험상품의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6, p.42

Ⅲ.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

1. 수입보험 관련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입협회[11]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1일간(2015. 3. 2. ~ 3.12.)에 걸쳐서 e-mail과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104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수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수입보험제도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수입보험 미활용 사유, 수입보험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입보험의 확대가 필요한 품목 및 업종, 수입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등이었다. 설문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활용 가능한 제도로 보완한 후에 이용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입보험의 도입 사실은 상당수(43.2%) 인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수입자용 수입보험과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등의 구분 및 자사의 취급품목이 수입보험 대상품목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88.5%, 93.3%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모르거나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된다. 수입보험 최초 도입 시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수입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따라서 완전하고 이용 가능한 수입보험으로 제도를 개선한 후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압도적(88.5%)이었다. 따라서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수입기업들이 바라는 이용기업 친화형(user-friendly)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입보험을 활용품목의 범위를 넓혀주어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입품목이 수입보험 해당품목이 아니라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행 수입보험은 중소 수입기업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보험 해당품목을 확대할 경우에는 수입보험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79.7%에 달하였다. 수입관행의 개선과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입보험을 확대를 해야 하며, 가급적 이용이 쉽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입품목 확대를 전제로 수입자가 선급금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

11) 한국수입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ma.or.kr

들어 줄 때 수입비용도 줄일 수 있고, 對수출자 협상력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입보험제도의 개선 요청사항은 대상품목의 확대, 수입자용 보상금액 비율 확대, 중소기업 우대방안 강구 등이다. 확대를 요청하는 품목으로는 생활용품,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이 다수였다. 현행 수입보험인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며, 신규로 수입보험에 해외수출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제도와 수입보험 대상에 중계무역의 경우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필요성

(1) 수입기업 측면에서의 필요성

수입기업이 수입보험을 이용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굴하더라도 상대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으로 거래 성사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입보험은 이러한 국제거래에서의 신용위험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물품의 특성, 계절적 수요 등 때문에 선수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입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계약물품의 적기 미인도 및 선급금 미회수 위험 등을 회피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의 가격 협상력이 제고되어 수입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가격을 요구할 수 있으며,[12] 수입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인상 전 계약시점의 가격 적용을 요구할 수 있어 수입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13] 특히 세계적인 저금리시기에 선급금을 활용하는 경우 제품가격 인하를 통해서 금융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수입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이 강화된다. 수입보험과 무역금융을 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금융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원자재 수입에 이용되는 수입보험에서는 무역금융의 한도를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도가 여유 있는 경우에도 다른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수입기업이 수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금융과 함께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을 활용함으로써 수입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12) 최미수, "수입보험 약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2013.12. p.177
13) 이주태 · 안병수(2012), 전게논문, p.270

신용조회를 활용한 거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수입보험(수입자용)은 K-sure가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입기업의 신용 못지않게 해외 수출기업의 신용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사전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에 노출된 신규 거래선 거래나 새로 발굴한 상품 거래에 소극적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수출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연계성이 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수입물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원활한 수입을 위한 지원제도는 국내물가의 안정뿐만 아니라, 수입의 약 40%가 수출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입의 특성상 수입부문의 지원은 국내산업과 수출로 연결되며, 중소무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대부분의 중소 무역기업들이 대기업 또는 중소제조기업에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입보험을 통한 신용위험의 회피는 단가 인하를 통한 수출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할 수 없는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여 국내 산업 및 소비자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의 역할은 수입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국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폭을 넓혀 국민후생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또한 수입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기술을 해외에서 국내로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된 기술은 국내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와 투자의 확대를 유발하고, 고용을 촉진·확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지난 10년간 무역의 평균 경제성장 기여율이 76%를 상회하고, 한국이 세계무역에서 8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역이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부자재, 기계류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의 약 60%는 내수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등 대외변수의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변동은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수입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국내에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여 국내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1> 국제 원자재 및 상품가격 하락의 국내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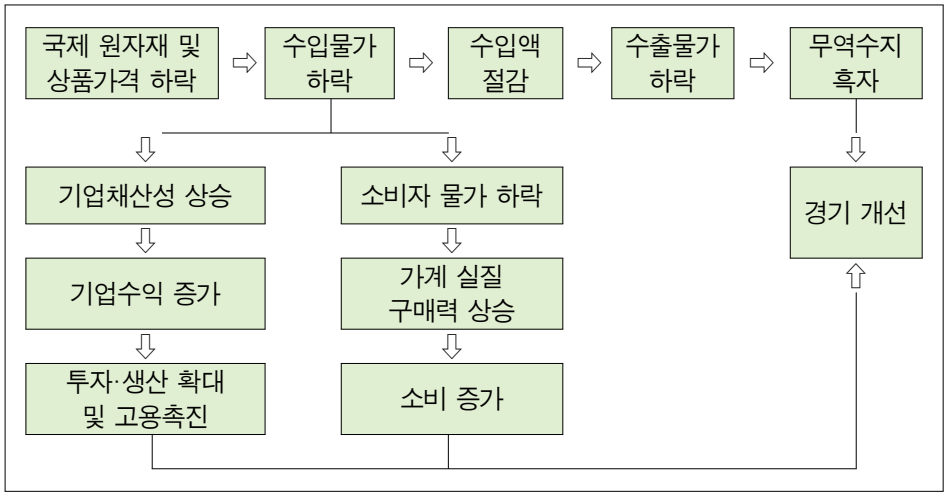

* 자료: 홍성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KIET 산업경제』, 2015. 3, p.8을 일부가공

(3) 수출증대 측면에서의 필요성

수출과 수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우리나라 무역구조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수입이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자본재 및 원·부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상호 연계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2014년 총수입액 5,155억불 중에서 원자재는 3,158억불, 자본재는 1,447억불, 소비재는 546억불로서 전체의 41.6%가 수출을 전제로 하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부자재와 부분품을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붙여서 재수출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수입 중 소비재를 제외하고 원·부자재와 자본재 수입의 약 50%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 강소기업의 육성은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역할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원·부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로 이를 제외한 순수 소비재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의 10%에 불과하다.

균형무역에 대한 의지표출은 통상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14] 2008년 글로벌 금융

14) 이주태·안병수(2012), 전게논문, p.258

위기 이후에 미국·영국·스페인 등 무역 적자국과 중국·일본·독일 등 흑자국 사이에 무역불균형 시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을 제외하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470억불대의 사상 최고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시정논의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가 상존하고 신규제기 가능성도 높으며, FTA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국내산업 보호수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식품위생, 기술장벽(TBT),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성장해 온 만큼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수출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수입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인식제고도 필요하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7위, 수입 9위, 무역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대부분이 수출지원 위주로 되어 있다. 금융, 보험, 물류, 마케팅 등 지원이 수출경쟁력 강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무역인력 양성 또한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지원정책은 정부 부처별 및 경제지원별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One-stop으로 지원해 줄 기관조차 변변치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으로 무역흑자 기조가 정착되었지만, 만성 무역적자의 기억으로 인해 수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수출과 수입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발전되어야 하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필요한 시점이다.

Ⅳ. 수입보험의 활용 확대방안

1. 현행 수입보험제도의 정비

(1) 수입의 개념 재정립 및 수입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

무역보험법 제2조(정의) 제1호의 무역에 대한 정의[15] 중에서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아

15) 무역보험법 제2조,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울러 K-sure의 업무방법서 제6조(무역보험의 종류) 제14호[16] 수입보험의 정의에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별표의 지원 및 물품을 말함)의”를 삭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보험 대상품목의 확대를 위한 법률적인 제한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17]

설문조사 결과 수입보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수입보험 품목에서 절대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수입보험은 주요자원,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처리 물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물품, 공장자동화 물품, 산업기술 연계 및 개발용 물품, 첨단제품, 외화 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한하여 보험을 인수한다. 현재는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욕구가 더욱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물품은 내수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보험의 인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입보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거래물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18]

<표 2> 수입보험의 단계별 확대품목

구 분	품 목	확 대 사 유
1단계	생활용품	· 국민후생과 직결되는 사치품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2단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 국민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은 물가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필요
3단계	의약품・의료기기・의료용구	· 고령화 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확보

* 자료: 저자 작성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치품을 제외한 국민후생과 직결되는 생활용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식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도 있을 것이다.

16) 업무방법서 제6조. 14. “수입보험”은 수입을 위해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별표의 자원 및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7) 유승균・한수범(2012), 전게논문, p.46

18) 오원석・이병문・박세훈・유승균(2012), 전게보고서, p.62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에 직결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용구 등으로 확대하고, 사치품을 제외한 생활용품 등으로 단계별 확대가 필요하다.

(2) 선급금 비율, 중계무역, 외화획득용, 수입신용장 등의 개선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입보험(수입자용)에서 현행 계약금액의 30% 이내를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중계무역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선급금 비율의 상향 조정은 업계의 의견과 기금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외화가득 효과가 높은 중계무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원자재를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와 수입보험(수입자용) 제도 등 2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을 이용하지 못한다. 외화 획득용 원자재에 대한 지원제도를 단일화하고 수입신용장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상술하면, 현행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관 제2조(신용보증대상)에서 『*4.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 수입 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를 삭제하고 동 조항을 수입보험(금융기관용)에 포함시키되, 결제방식도 신용장에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조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보험(수입자용)과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의 대상거래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포함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위험은 수입보험(수입자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입기업이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장보다는 무신용장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리스크 부담이 적은데 수입신용장에 대하여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무신용장방식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명칭도 제2조 제4항 때문에 복잡하게 된 것이므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을 수입보험(금융기관용)으로 옮길 경우 명칭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행 약관이 상기 조항만 수입 관련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도 부합한다.

2. 새로운 수입보험 상품의 개발

수입기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수출자용)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K-sure는 해외 건설업체 및 조선업체를 위해 해외 발주자를 수익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수입거래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해외 발주자이지만, 수입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국내 수입기업 또는 해외 수출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 수입보증보험 거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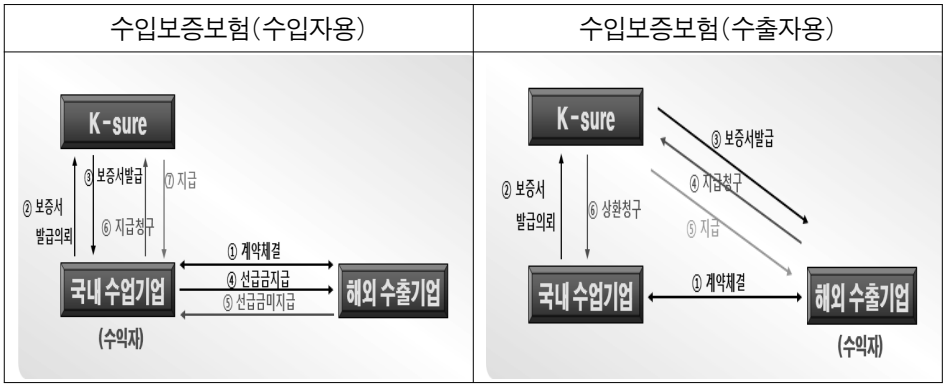

* 자료: 저자 작성

(1)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은 수출보증보험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운영방식이 동일하지만, 수익자가 해외발주기업이 아니라 국내 수입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수금환급보증[19]은 해외 발주자가 국내 수주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K-sure가 보증하는 제도인 반면,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수입보험(수입자용)과 담보위험은 동일하나, 수입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계약자가 국내수입기업이고,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은 보증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수업기업 또는 금융기관[20]이라는 차이가 있다.

19) AP Bond(Advance Payment Bond) 또는 R/G(Refund Guarantee)로 부름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① 국내 수입기업과 해외 수출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K-sure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③ K-sure는 해외 수출기업의 신용상태를 체크한 후 양호한 경우 국내 수입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직보증서(Stand-by L/C 또는 Demand Guarantee)를 발급하고, ④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⑤ 동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⑥/⑦ K-sure에게 보증서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게 된다.

<표 3> 수출보증보험·수입보험·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의 비교

구 분	수출보증보험 (선수금 환급보증)	수입보험 (수입자용)	수입보증보험 (수입자용)
보험계약자	· 국내 수주기업[21]	· 국내 수입기업	· 국내 수입기업 또는 금융기관
수익자	· 해외 발주기업	· 국내 수입기업 (보험금 수취인)	· 국내 수입기업 또는 금융기관
주요 담보위험	· 국내 수주기업의 계약불이행 위험 ·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을 위험	· 해외 수출기업의 선급금 지급불능 위험 · 국내 수입기업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 해외수출기업의 선급금 지급불능 위험 · 국내수입기업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보험금 지급일	·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험금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자료: 저자 작성

(2)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은 수익자가 해외 수출기업인 경우이다.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① 국내 수입기업과 해외 수출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국내 수업기업이 K-sure에 해외 수출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③ K-sure는 국내 수업기업의 신용상태, 해당물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수출기업에게 직보증서를 발급하고, ④/⑤ 추후 국내 수입기업이 어떠한 사유(담보위험은 품질 관련 클레임은 제외하고 주로 국내 수업기업의 유동성위험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로 수입

20) K-sure가 국내 수업기업(수익자)에게 직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국내 수입기업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K-sure가 해외 수출기업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자는 금융기관이 된다.

21) 수출보증보험도 수출자용(보험계약자: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용(보험계약자: 금융기관)이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수출자용으로 설명함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해외 수출기업은 K-sure에 지급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⑥ K-sure는 국내 수업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표 4> 수입보험(금융기관용)과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 비교

구 분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 국내 수입기업
수익자	· 금융기관 (보험금 수취인)	· 해외 수출기업
주요 담보위험	· 금융기관이 국내 수입기업에게 수입거래를 위하여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행한 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해외 수출기업이 외상조건으로 국내 수업기업에게 수출을 행한 후 자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 자료: 저자 작성

해외 수출기업이 수익자인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의 경우 주요 리스크는 국내 수입기업의 신용위험이므로 K-sure는 수입기업의 신용상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입보증보험은 보증 성격이므로 '정당한 청구위험(fair calling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입기업의 신용위험을 잘 분석하여야 하고, '부당한 청구위험(unfair calling risk)'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기업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한 수출입기업에 한하여 동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수입보험에 대한 K-sure의 입장 재정립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바꾼 K-sure가 수입보험을 도입한 것은 수출 · 수입 상호연계 및 무역 · 투자 융합 등 무역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22] K-sure는 수입보험 도입 당시 수출확대를 위한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활성화 및 중요물자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험대상을 기존 "수출"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수출위주 지원에서 수출용원자재 및 주요물자 등에 관한 수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무역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도입이후 약 5년 동안 동 제도에 대한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그 인수비중이 전체 실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 지식경제부, 수출보험법 개정법률 법안심의자료, 2010.2, p.1

따라서 K-sure는 수입보험에 대하여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K-sure는 최근 수입보험 사고가 증가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지원실적이 수출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입보험은 앞으로 그 이름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보험의 확대는 무분별한 수입증대 및 국내 생산업자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수출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수입기업이 수입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선급금 지급으로 가격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이 내수의 60%를 차지하여 수입보험의 확대는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의 확대는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연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확대인지 축소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수입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출보험기금과 구분되는 수입보험기금의 마련이 요구된다. K-sure의 손실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이지만, 무역관련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무역보험기금의 유동성이 악화되는데[23], 무역보험기금은 보험사고 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아울러 K-sure의 대외 신인도에 중요하다.[24]

K-sure의 5개년 평균 기금배수는 약 83배로 다른 국가 ECA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대형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기금배수가 91배를 기록한 후 2014년에 67배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다른 ECA의 비하기금배수(10～30배)에 여 여전히 높은 편이고, 2010년 외부 컨설팅기관이 「무역보험운영 개선방안」에서 기금배수를 2015년 52배 이내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수입보험(타종목의 약 4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K-sure의 전체 기금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보험기금을 분리하여 수출보험기금과 별도의 “수입보험기금(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3) 박문서 · 유승균,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무역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12, p.45

24) 기금의 차입(무역보험법 제34조)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무역보험법 제36조)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그 동안 중소 조선사 문제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K-sure는 손해율이 높은 수입보험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입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째, 정부 또는 타기금(예 무역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무역보험기금은 정부의 출연에 거의 100% 의존해 왔지만 그 출연금액이 보험금 지급금액에 연동되어 있지도 않고 매년 규칙적이지도 않은 문제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매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출연을 받는 방법도 있다. 다른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처럼 K-sure의 제도로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출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K-sure는 2009년 수출보험법 개정 시 금융기관 출연금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 수출자 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보 · 기보가 이를 적극 반대하고,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K-sure의 입장은 '금융기관이 K-sure 제도로 수혜를 입지만, 이에 대한 대가인 출연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K-sure의 지원제도 중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인 상품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별 지원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보험료 수입을 구분하여 타 보증기관과 비교 · 분석한 후 그 자료를 보증수혜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K-sure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K-sure가 개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별출연을 확대할 수 있다. K-sure는 우량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출연을 통한 K-sure의 기금 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기업은행과 "특별출연 및 보증 · 보험료 지원을 통한 우량 중소 · 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5] 이 협약으로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중소 ·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인수실

25) 협약보증 내용: 기업은행은 수출보증 · 보험한도 우대기금 800억원과 보증 · 보험료 지원금 2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K-sure에 출연하면, K-sure는 이를 재원으로 수출입기업에 총 3조원의 보증서 및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그 이후 기업은행과는 제2차 추가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외환은행과 국민은행과도 상기 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규 협약보증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2,500억원으로 그중 기업은행이 52% 차지한다.

적의 대다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효과가 제한되었다.

넷째, 기존의 무역보험기금의 일정 부분을 매년 수입보험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로부터 수입보험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정기적 출연 또는 K-sure와 개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확대가 불가능 한 경우 기존의 무역보험기금의 일정률을 수입보험 지원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K-sure의 전반적이고 중장기적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무역보험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무역보험법에 근거규정[26]을 마련한 바 있으나, 실제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대규모 보험사고에 대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이자율도 상승할 수 있으며, 채권매각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 기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발행 자체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 K-sure의 담보력 부족으로 영업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의 채권발행 경험이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K-sure는 안정적 기금배수 유지 및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예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수입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 강화

수입보험이 활성화 되면 수입보험기금의 고갈과 같은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수입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새로운 수입보험 상품개발에 따른 특정 품목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현행 수입보험의 대상 품목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경우 특정 품목의 경우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수입보험제도 확대의 수혜자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될 가능성도 많다. 현

---

26) 채권의 발행 등(무역보험법 제34조의2)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 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에도 대기업이 수입보험의 인수실적의 3/4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보험제도를 확대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수입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확대되는 수입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보험 대상품목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해당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품질이 낮은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수입기업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수입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수입보험의 활용확대 방안으로 현행 수입보험제도의 개선, 수입보험 관련 신상품의 개발, 수입보험에 대한 K-sure의 역할 재조명,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확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수입보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무역보험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K-sure는 대상품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는 주요자원, 시설기자재, 첨단제품, 외화 획득용 원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와 일본(NEXI)의 선불수입제도 등을 참고하여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1단계로는 국민후생과 직결되는 사치품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2단계로는 국민들 먹거리는 물가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중요하므로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3단계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본격 진입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구 등의 순으로 요구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화 획득용 원료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용보증대상으로 되어 있어 이용기업으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고객 친화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K-sure는 수출보증보험과 유사한 수입보증보험 같은 신상품을 도입해야한다. 설문조사에서 수입업체들은 효과적인 수입보험 상품으로 현행 수입보험의 제도 정비와 함께 해외수출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동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수익자

를 자신으로 하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수입보증보험(수입자용)과 국내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수입한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수출기업을 수익자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수입보증보험(수출자용)을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수입보험에 대하여 K-sure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수입보험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예 지원효과)와 부정적 효과(예 손해율 증가로 인한 기금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수입보험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름뿐인 수입보험이 아니라 실제 수입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K-sure는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동 보험의 사고증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한도를 축소하기 보다는 사고증가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보험제도를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입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여야 한다. 수입보험은 수출보험에 비하여 손해율이 거의 4배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보험의 적극적 운영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또는 K-sure는 적극적인 수입보험을 위하여 정부 또는 타기금(예 무역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수입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계정을 마련하거나, 타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처럼 금융기관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받거나, 업무협약을 통하여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재성, “A Study on Improvement of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무역상무연구』 제60권 제4호,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13.12

박문서 · 유승균, “무역 1조달러 시대와 한국무역보험의 역할”,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12

_____,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무역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12

박성하, “국가경제에 중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수입보험”, 『무역보험』 통권 제160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안근우, “인수사례로 본 수입보험제도”, 『무역보험』 통권 제165호,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오원석 · 이병문 · 박세훈 · 유승균, “무역 1조달러 수성을 위한 수입보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12

유승균 · 한수범, “수입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12

이제홍, “적용 가능한 무역보험상품의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6

이주태 · 안병수,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2.11

이현준 · 임현나 · 장봉제,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활성화 방안”, 제5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 논문집, 2012.11

최미수, “수입보험 약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12

홍성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5. 3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업무방법서, 무역보험제도해설

_____,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약관, 수입보험(수입자용) 약관

_____,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약관

한국수입업협회, “우리나라 수입보험의 특성과 활용방안”, 『Korea Import Focus』 제7호, 2012. 5

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on of Import Insurance in Usage

Oh, Won Suk · Park, Kwang So · Kim, Pil Joon ·
Kang, Sung Hoon

This study went through the current import insurance scheme as well as its usage since its inception in 2010. It turns out that the underwriting volume of import insurance was not more than 1% of that of the total amount; large corporations were a major user, i.e. approximately 75%; the underwriting amount of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was negligible. In addition, a survey aiming to find out a lukewarm usage in import insurance shows the following results: K-sure's inactive support for import insurance, limitations on items, and a lack of promotion. Based on this survey, in order to increase the usage of import insurance, this study focused on a need to expand import insurance from the dimension of importers, national economy, and export enlargement. It suggests that the current import scheme be reorganized towards customer friendly, new schemes be introduced, K-sure's role for import insurance be overhauled, enough financial resources be available for consistent operation of impor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points out potential ensuing problems due to the expansion such as insufficient Export Fund, indifferent import increase, and national producers' resistance.

Keywords : import insurance, trade insurance,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import insuran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import support scheme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25~42.

논문접수일 : 2015.06.03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YU, Jae-Har* · LEE, Chun-Su **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Service Marketing Strategy of K-sure
Ⅳ. Expert Panel Survey Results and Strategy
Ⅴ. Conclusion

Abstract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 First author, Gumi University, Prof., E-mail: jasonyu@gumi.ac.kr
** Corresponding auth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E-mail: leecs@pknu.ac.kr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Keywords : K-sure, Service strategy, Repositioning strategy, Differentiation strategy

Ⅰ. Introduction

Korea's rapid growth in trade can be attributed to export to world market which was the logical way for a relatively resource poor country like Korea to surviv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organizations considered export expansion to be the greatest national task. In light of such emphasis on trade, importance of trade insurance that can stably support export industry also needs to be addressed.

Currently, Korean government is taking initiatives in plans to expand export supporting infrastructure for new markets by setting up overseas exhibitions and trade centers and further expanding trade finance and trade insuranc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d high potential enterprises in order to strengthen financial and marketing support and to reinforce infrastructure(Korean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4). Despite government initiatives, active use of trade insurance has been

lackluster thus far.

Trade insurance can be classified as a form of financial service and growth in service sector will further create nation's value add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ossible improvement schemes in the service level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nd to facilitate marketing of K-sure's trade insurance products.

Expert panel survey consisting of academia and customs house brokers along with review of extant literature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establish strategy to facilitate service of K-sure. In addition, considering ever competitive environment, repositioning strategy of K-sure is also presented. Expert panel study consisting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customs house brokers who are considered to be experts in trade will lead to further related studies and provid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sights.

Ⅱ. Literature Review

Trade insurance system provides coverage against risks that are normally not covered under marine insurance. K-sure's trade insurance is an non-profit policy insurance to promote export by providing compensation for unforeseen loss incur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provided export loans to exporters and producers, due to credit risks such as cancellation of contract by the importer, bankruptcy, delays in payment and to contingency risks such as war, civil revolt or restriction on foreign currency exchange in importing nation(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www.ksure.or.kr).

Even though trade insurance bases its technical form on insurance, it encompasses policy objective of export trade and foreign transactions and the risk it covers is flexible in nature. In other words, limits of risk coverage is flexib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foreign and domestic environment and also on national policy directives(Chun, 1994)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export insurance system was first brought forward when Korea first implemente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the initial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export expansion was the foremost policy

objective(Park, 2009).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use of forms of settlement in addition to secure payment settlement form of letter of credit,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from advanced countries to other nations put export firms at risks. And Korean government realized need for systematic means to protect exporters from risks and introduced export insurance system as a part of export promotion policy of second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Park, 1989).

Amount of trade insurance K-sure underwrote consistently increased from 15,307 billion Korean won in 1997, 73,158 billon won in 2005 and to 203,680 billion won in 2013. Despite rapid growth in overall amount of insurance sold, growth has been lopsided with short-term insurance comprising 80% of total sales.

K-sure currently provides 13 insurance systems, 2 guaranty systems and other services related to foreign transactions. As for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K-sure provides following support: First, providing currency exchange loss compensation and repayment of foreign exchange gain, forward sale and purchase of foreign exchange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prevent foreign exchange loss. Second, providing survey on financial status, industry reputation and settlement history in liaison with 74 credit information agencies in 41 nations. Third, providing guaranty on operating expense loans for production of export products. Fourth, providing guaranty on 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 after the shipment of export products. Fifth, providing compensation for outstanding balance of exports for export contracts under 2-year duration. Sixth, providing compensation for liabilities in importer risks, letter of credit risks and importing country risks. Seventh, providing collection service for outstanding balance in connection with lo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Korean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4).

Seong(2012, pp.53-57), in his study asserted that in order for K-sure to maintain its public interest, its corporate activities must continued. Thus even though K-sure is a public institution, corporate governance safety measures akin to private firms must be implemented. In addition, Seong proposed a principle of proper oper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provided for by delegation of legislative system improvement and proposed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his recent survey of strengthening of the audit.

Choi(2014, p.42) pointed out problems associated with duty of disclosure, return of insurance premium, effects of insurance premium payment delay, notice of redundant insurance and common misunderstanding of insured firm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the system. In particular, foreign investment insurance can be deemed as a public insurance which is operated by the nation industry-wise and policy-wise and categorized it as corporate insurance since policy holders are normally companies. However, legislative intention of protecting policy holders in common insurance should also be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insurance.

Yang(2013, p.76) studied cases involving reimbursement claims on guaranty money on export guaranty between K-sure and the negotiating banks. Negotiating banks assumed payment certificate by the importer under letter of credit terms or product confirmation certificate requested in additional terms as non-document terms and studied cases where inspection duty was negligent and criticized court's judgment in which it disregarded common practice.

Kang and Choi(2014, p.127) claimed that there are limits to how much SMEs can manage credit risks on their own and thus credit risks should be offset in cooperation and mediation with K-sure. Main clients of K-sure are large corporations and there are limits to SMEs in using services provided by K-sure. They asserted that credit risks should be offset i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Lee(2011, p.17)'s study showed that K-sure's export insurance on medium and long-term exports is tailored towards large corporations and neglects SMEs due to the size of exports. Thus in order to increase use by exporting SMEs, either new products should by provided or facilitate use of current products that are in high use to provide insurance coverage to SMEs. Special inducement that can favor SMEs over large corporations in terms of insurance premium, insurance rate, credit evaluation standard and grace period in insurance payment should be introduced(La, 2013).

K-sure's business volume witnessed continued growth despite recent setback in global economy. Owing to the introduction of guarantee commitment partnership program and SME Plus+ group insurance program, the share of SMEs in K-sure's business volume has soared in recent years but not yet on par with SMEs' share of Korean exports(www.ksure.or.kr/english/jsp/about/about_07.jsp). Thus, K-sure should introduce more measures to lure more SMEs as its clients.

<Table 1> Business Volume and Share of SMEs

(unit : trillion Korean won, %)

Year	Volume	SMEs	% share of SMEs
2009	165.0	19.7	11.9
2010	187.4	19.0	10.1
2011	192.2	18.9	10.0
2012	202.3	29.5	14.6
2013	203.7	35.9	17.6

Source: Annual Report 2013, www.ksure.or.kr/english/jsp/info/AnnualRptListInq.jsp

Ⅲ. Service Marketing Strategy of K-sure

1. Outline of Service Marketing

Concept of service marketing was created as importance of marketing strategy was emphasized in financial, real estate, travel, communication and education services in line with growth in service industry. For an effective marketing, features of service must be understood and differentiated strategy other than product marketing is needed. In planning and executing service marketing, 3P mix of people, physical evidence and process of service assembly must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raditional 4P mix of product, price, place and promotion(Lee & Lee, 2009).

Trade insurance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insurance and insurance transaction as a kind of financial service simultaneously. When buying an insurance or obtaining guaranty, transaction involves monetary payment so insurance includes financial service. In general, marketing can be defined in terms of product, object, tools and items while service can be defined in terms of action, effort and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service and product are tangibility aspect. Tangibility means being able to confirm the product form with eye sight.

On the other hand, service is intangible and lacks physical qualities that consumers can evaluate. As a result, it becomes a challenge for firms in terms of marketing mix.

In responding to the question “How can we advertise service which has no forms and can not be seen?”, firms set up marketing strategy that can approach customers in need of service. “Quality of service” and “Customer maintenance” should by considered. Determinants of service quality are credibility, assurance and empathy among others. Determinants of customer relationship maintenance are right insight, customer memory and establishment of trust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se factors, repositioning strategy to facilitate use of insurance products in trade insurance are proposed.

2. Repositioning Strategy

According to Jack Trout, repositioning refers to “re-adjusting” customer perception not entirely changing customer perception on a product(Trout, 2010). K-sure needs to re-adjust to facilitate export trade insurance. Current customers’ perception of service marketing positioning of K-sure should be re-adjusted to facilitate export insurance and then it can be deemed as “repositioning strategy” of K-sure

Positioning refers to what happens in potential customer’s mind on product or services not the action taken. Such positioning has important implication not only in product market but also in intangible services market. Thus positioning of product or service refers to how customers perceive competing goods based on certain attributes(Lee & Lee, 2009, p.276). Initial positioning can become inappropriate with time and thus new positioning strategy is needed based on detailed analysis.

In this study, we base our study on extant studies(Cho and Kim, 2006; Kang and Choi, 2014; Lee, 2011) which pointed out the deficiencies in trade insurance product utilization by SMEs and then came up with repositioning strategy.

Current K-sure’s marketing made companies to purchase insurance product that suits their needs. But as mentioned above, we deemed that there were discrepancies as per product attributes and thus propose repositioning of K-sure to facilitate trade insurance. Based on customer differentiation by specified purpose and product attributes, service perception was identified and hereby propose repositioning of K-sure based on 3 fundamental strategies.

Marketing means to utilize trade insurance product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Interaction strategy

involves participation of K-sure and its clients. Since the main purpose is to facilitate use by SMEs, participation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 will further create synergy. SMBA is currently active in on-line export support and is further expanding its off-line activities in areas of overseas exhibition participation and export consulting services(The Korea Economy Daily, http://www.hankyung.com).

Ⅳ. Expert Panel Survey Result & Strategy

1. Methodology and Survey Composition

<Table 2> Survey Composition

Area	Survey items
Expert information	- number of years in profession - position/title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 factors considered when selecting a trade insurance product - whether products offered are tailored to suit firm size - difference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Opinion on image of K-sure	- perceived image of K-sure - effective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 need for strengthening service marketing

Experts in academia and practical field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10 experts in academia were selected from pool of professor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trade insurance specialists on the listing at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professors who are academically active at Trade Insurance Academy. Also 10 customs house brokers were selected for their practical expertise. Total of 20 experts were subject

of the survey. Experts were surveyed in 4 areas in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sure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2. Expert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years in profession shows that 45% of experts have more than 10 years of work experience. As for the position, 10 were customs house brokers, 5 assistant professors, 1 associate professor and 4 full professors.

<Table 3> Years in Profession

Years	Frequency	%
1-2	4	20
3-5	6	30
6-8	1	5
9-10	0	0
10+	9	45
total	10	100.0

<Table 4> Position/Titles

Position	Frequency	%
customs house broker	10	50
assistant professor	5	25
associate professor	1	5
full professor	4	20
total	10	100.0

3.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

In survey 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 subjects were asked on whether products offered by K-sure are tailored to suit firm size an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A. Trade Insurance Selection Factors

Multi-choice selection survey was conducted on factors most considered when selecting a trade insurance products. 5 questions were asked on cost of trade insurance product, suitability for firm size, effectiveness of trade insurance product and security of trade insurance product.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security aspec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33%) and then effectiveness of trade insurance.

<Table 5> Trade Insurance Selection Factors

Questions	Frequency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price of trade insurance product	6	22.2	22.2
suitability for firm size	5	18.5	40.7
effectiveness of trade insurance product	7	25.9	66.7
security of trade insurance product	9	33.3	100.0
total	27	100.0	

B. Availability of products offered to suit firm size

<Table 6> Availability of Trade Insurance Products for Firm Size

Questions	Frequency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more available to large corporations	14	70.0	70.0
more available to SMEs	3	15.0	85.0
suitable for both	1	5.0	90.0
not suitable for both	1	5.0	95.0
others	1	5.0	100.0
total	20	100.0	

Survey on whether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uit firm size showed that 70% of respondents considered more products were offered to suit large corporations. Only 15% of respondents considered more products were offered to suit the needs of SMEs.

C. Difference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On multi-choice survey questions on differences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transaction amount and corporate perception were factors for difference.

<Table 7> Differences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Questions	Frequency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corporate perception	6	27.3	27.3
business size	7	31.8	59.1
transaction number	2	9.1	68.2
transaction amount	7	31.8	100.0
total	22	100.0	

4. Opinion on Image of K-sure

In survey of opinion K-sure image, questions were asked on perceived image of K-sure, effective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and need for service marketing.

A. Survey on perceived image of K-sure

In multi-choice survey of K-sure's perceived image, questions were asked on whether K-sure had public image, private image, ambiguous image or no image. Experts responded that strongest image of K-sure is of a public image and then ambiguous image.

<Table 8> Perceived Image of K-sure

Questions	Frequency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Public image	17	85.0	85.0
Ambiguous image	3	15.0	100.0
Total	20	100.0	

B. Effective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In multi-choice survey of best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to companies, questions were asked on means of e-mail, catalog via mail, exhibition, on-site visits by consultant and others. The results shows that sending catalog via mail was considered the best mean and then e-mail and visits by consultants.

<Table 9> Effective Means to Provide Information

Questions	Frequency	Valid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E-mail	6	28.6	28.6
Catalog via mail	7	33.3	61.9
Exhibition	1	4.8	66.7
Visit by consultants	6	28.6	95.2
Others	1	4.8	100.0
Total	21	100.0	

5. Service marketing repositioning strategy of K-sure

In survey of need for strengthening service marketing, 60% responded “very necessary” and 40% responded “necessary”. Thus, based on expert panel survey, we hereby present 3 strategies.

A. Promotion strategy(image improvement strategy)

Five general promotional tools can be advertising, sales promotion, public relations, personal selling and direct marketing(Brassington & Pettit, 2000). Since the target client base is rather predetermined, K-sure should focus on direct marketing as well as personal selling. In addition to personal selling promotion strategy on clients, direct on-line promotion marketing activity to execute image improvement strategy is needed. The expected effects are improving favorable corporate image to internet users and effective marketing will be possible in an environment without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Financial sector has extended its “face-to-face” selling towards direct marketing of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orm of telephones and e-mails(Lee, 2002). In on-line marketing, traditional marketing procedure of problem diagnosis, situation analysis, target and strategy determination, detailed plan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hould also be followed. By sending information e-mail on trade insurance products, K-sure will be providing opportunities to firms which had not yet perceived the need for insurance products and understood the role of K-sure. In addition, insurance products tailored to the needs of SMEs will be also promoted.

The clients of K-sure insurance products are firms. As for firms, they will likely have multiple transactions or contracts within a given period but will not be able to look up an insurance product everytime. Furthermore, they might not be aware of the suitable corresponding insurance products and even if they are in need of an insurance, they might not be able to purchase an insurance everytime. Insurance product tailored to the needs of SMEs is 'SME Plus Insurance'. This insurance encourages use of trade insurance. And in this insurance enables firms to buy an insurance product that suits their size much more easily than commonly used short-term export insurance(Park, 2009, p.32).

Promotion strategy must be carried out for SMEs that are not aware of such insurance. K-sure should send trade insurance product notice to exporting firms on weekly or monthly basis to instill an awareness that such products are available. However, K-sure must take into account that firms can not allocate much time in insurance purchase so insurance information bulletin should be limited to 3 pages with easy to read and understand content. Through such means, K-sure should make itself available to firms which had previously been not accessed K-sure on frequent basis and reach out to the firms first. And also such will lead to improvement in positive image of K-sure.

B.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Successful new product development depends on an understanding of consumer needs and product development efforts that meet the needs of users(Hauser, Tellis, and Griffin 2006). The inability to adequately assess and fulfill consumer needs is often results in failure of new product(Ogawa and Piller 2006). Process of reflecting consumer needs is often rather difficult because these needs are often complex and may not always be identified through traditional marketing research methods(O'Hern and Rindfleisch 2009; von Hippel 2005). But in case of K-sure, needs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re rather transparent.

K-sure should merge and abolish insurance types and reconstruct product portfolio in order to improve operation efficiency. Current stock of insurances are almost predetermined for use by SMEs and large corporations. For example, the insurance mostly used by SMEs is the agricultural and raw material price fluctuation insurance and the insurances mostly used by large corporations are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export insurance. Insurances that are used almost

exclusively by SMEs must be adjusted to tailor more for their use. In addition, short-term export insurance must be made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SMEs.

C. Interaction strategy

Using periodicals for promotion strategy is a passive means for the clients. Proactive strategy to induce participation of client base and make them “interact” with K-sure is needed. Nature of service calls for interaction of service provider and the client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role of clients in course of service delivery is emphasized(Lee & Gong, 2008, p.9). Interaction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user is mutual or reciprocal action where two or more parties have an effect upon one another. Business parties are in contact with each other for a business reason, and in these contacts they have opportunities to influence one another’s processes(Grönroos, 2011). Interactive communicate processes occur partly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with each other that can merge into one integrated process, where both parties are active and may directly influence each other(Ballantyne & Varey, 2006). New product mix must be developed by continuously checking validity and deliverability of new product mix, have them reflected in promotion strategy and then re-coordinate opinions to come up with a product for use.

K-sure holds meeting when in need for interaction. Also, SMBA is expanding its role by providing on-line export support to encourage exports. By promoting trade insurance product congruously with SMBA will create synergy between two institutions.

V. Conclusion

In this study, means to strengthen services of K-sure were discussed based on opinion of expert panel. K-sure is in need of a new repositioning strategy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service of trade insurance products.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of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 opinion on image of K-sure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Based on the survey, repositioning initiative based on 3 basic strategy of promotion, product development and interaction is

presented.

Panel study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a trade insurance product is the security of insurance. This shows that firms consider the inherent feature of insurance to be most important. The question on whether insurance is tailored to suit the size of large corporations and SMEs, experts expressed that trade insurances were biased more toward large corporations. This coincides with extant studies that also point out trade insurances are mo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and new measures are needed to meet the demands of SMEs. On multi-choice survey questions on differences in trade insurance product use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accounted for the difference with perception and transaction number in descending order. Experts responded that public image of K-sure was the strongest image and ambiguous image as well. To improve problems associated with image, sending catalogs via mail was deeme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lay trade insurance information to firms with e-mails and visits by consultants in following order.

K-sure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in recent years accompanied by Korea's export growth. However, K-sure should make its services more available and tailored to meet the demand.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what perceptions K-sure currently has and in what improvements are needed to make K-sure more available to future clients. From point of the security view, exporting firms will find exporting less risky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K-sure.

This study also has some limitations. Most extant repositioning case studies were focused on target markets, product ranges and brands when firms were experiencing decrease in sales of existing products, when consumers' tastes and needs have changed, or when a change in strategy was needed due to a shift in competitive environment. However, this study presented repositioning for the sake of productive future of continued growth not of continuation of extant case studies. The proposed repositioning strategy encompass ideas that can cause discord between public interest and corporate profit. Thus additional in-depth study is called for. Lastly, even though the study was based on survey on expert panel, future study needs for a Delphi method involving more structured and a greater number of surveys and also more systematic sampling of experts to generalize the findings of the study.

Reference

Ballantyne, D. and Varey, R., “Creating Value-in-Use through Marketing Interaction: The Exchange Logic of Relating, Communicating and Knowing”, *Marketing Theory 6(4)*, 2006.

Bassington, F. and Pettiff, S., *Principle of Marketing, 2nd Edition*,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0.

Cho, W. and Kim, S., ″An Empirical Analysis of Export Insurance for 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7(1)*, 2006.

Choi, B., ″A Study on Problems and Reform Suggestions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5(1)*, 2014.

Chun, C., *Trade Insurance Practice*, Il-Shin Publishing, 1994.

Grönroos, C., “A Service Perspective on Business Relationships: The Value Creation, Interaction and Marketing Interfa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40(2),* 2011.

Hauser, J., Tellis, G. and Griffin, A., ‘‘Research on Innovation: A Review and Agenda for Marketing Science’’, *Marketing Science 25(6),* 2006.

Kang, D. and Choi, K., “A Study on Commercial Risk Management of the Exports by Smaller Enterpriser in Korea: A Focus on Trade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5(2)*, 2014.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ues and Measures in Export Support System of SMEs*, *no. 244*, 2014.

La, K.,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Risk, Small and Medium Export Enterprises, Trade Insurance System”,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Review 28(1)*. 2013.

Lee, J., “A key to Marketing Financial Services; the Right mix of Products, Services, Channels and Customer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6(3),* 2002.

Lee, S. and Lee, J., *Service Marketing, 3rd ed“*, Samyoung Publishing, 2009.

Lee, S., “Change of Export Payment Methods and Export Insurance’s Rol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7(2)*. 2011.

Lee, Y. and Gong, T., “The Effects of Customer Personality on Consumption Emotion

and Service Performance : The Moderating Role of Customer Contact", *Service Marketing Journal 1(1)*, 2008.

O'Hern, M. and Rindfleisch, A., (2009), "Customer Co-Creation: A Typology and Research Agenda," in Naresh K. Malhotra (ed.) *Review of Marketing Research vol. 6*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09.

Ogawa, S. and Frank T., "Reducing the Risks of New Product Development,'' *Sloan Management Review 47(2)*, 2006.

Park, H.,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 The Experience of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5(1)*. 2009.

Park, J., "SME Plus Insurance to Insure against Outstanding Export Balance", *Export Insurance Magazine, Insurance Index*, 2009.

Park, J., "Study on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Korea Export Insurance System", *Export Insuranc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3*. 1989.

Seong, S., "A Study on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bout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3(4),* 2012.

The Korea Economy Daily, http://www.hankyung.com.

Trout, J. and Rivkin, S., *Repositioning*, K-books, 2010.

Yang, U., "A Study on the Problems and Measures of Solution for Claiming Guarantee Money to Korean Trade Insurance Institut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4(4),* 2013.

www.ksure.or.kr/english/jsp/about/about_07.jsp, 2015.04.05.

www.ksure.or.kr/english/jsp/info/AnnualRptListInq.jsp, 2015.04.05.

국문요약

리포지셔닝을 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 발전방안

유 재 하 · 이 춘 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한국무역보험공사, 서비스전략, 리포지셔닝전략, 차별화전략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43~65.

논문접수일 : 2015.05.27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전후한 유로화와 달러화의 환율변동성과 조건부공분산 분석*

김 종 선**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전후한 원/유로와 원/달러의 환율변동성 및 조건부공분산 분석을 위해 GARCH류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원/유로와 원/달러의 환율변동성은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어, 지속적인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변동성 충격이 있을 때 외환시장이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은 원/유로가 원/달러보다 충격의 지속성이 다소 길었다. 셋째, 원/유로의 경우는 환율변동성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원/달러의 경우는 환율변동성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넷째, 조건부 공분산 분석 결과, 원/유로와 원/달러간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시간가변적 양(+)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유로화와 달러화, 정보의 비대칭성, 조건부이분산, 조건부공분산

* 이 논문은 2015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광주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E-mail: chosukim@gwangju.ac.kr

Ⅰ. 서 론

금융자유화, 금융통합화, 금융증권화, 그리고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범세계적 금융환경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980년~90년대에는 금융시스템이 취약하거나 금융혁신이 미흡했던 개발도상국들이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혁신을 주도해왔던 선진국들까지도 뜻하지 않게 금융·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끝없는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미국 리먼사의 파산을 계기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 여파로 2010년 5월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1,100억 유로의 EU-IMF 구제금융이 실행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 되었다. 이어 아일랜드는 2010년 11월 총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포르투갈은 2011년 5월 EU로부터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스페인도 2012년 6월 EU로부터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이른바 소위 PIIGS국가들[1]의 재정위기로 인해 범세계적으로 금융·재정위기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재정·금융정책을 총동원해서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미 중앙은행(FRB)의 양적완화정책(QE : Quantitative Easing)과 유럽 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5년여에 걸친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는 2013년을 고비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부터 거시경제 지표들이 미미하게나마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이른바 출구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2013년 12월 미국 중앙은행(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기존 월 850억달러인 자산매입 규모를 2014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100억달러씩 축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월 말에는 자산매입(Tapering)을 종료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2015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본격적 출구전략이 예상된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급격히 불안정해져 2008년 9월 16일에 1,108원선이었던 원/달러환율이 2009년 3월 3일에는 1,573원 선까지 치솟은 이후 안정세를 찾아 2010년 4월 하순엔 1,100원선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 5월 하순엔 유로존 재정위기의 대두로 1,253

1)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이스, 스페인을 의미함.

원 선까지 상승 후 다시 안정을 이어와 2015년 3월 말 현재는 1,105원 선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상대적 안전자산(safety assets)으로 인식된 유로화에 대한 인기는 높아져 원/유로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2008년 9월 16일 1,581원 수준이었는데, 2009년 3월 9일에는 1,991원 선까지 치솟아 유로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5월 이후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과 더불어 유로화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하여 특히, 2015년 들어 소위 그리스의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능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3월말에는 1,200원 선 아래로 하락하여 유로화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다. 총 수출로 보면 대유럽수출이 대 일본수출보다 많아 유로화의 추락은 우리나라 수출에 엔저현상 못지않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2)3)]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로존의 단일통화가 도입된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기간이 포함된 2015년 1/4분기까지의 시장위험에 따른 달러화와 유로화의 환율변동성 및 조건부 공분산 분석을 통해 환위험 헤지 및 무역금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절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절에서는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조건부이분산 분석을 위한 GARCH 모형, 비대칭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GJR모형, 조건부공분산 분석을 위한 2변량-GARCH모형을 소개한다. 제Ⅳ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데, 총3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유로존의 단일 통화가 도입된 1999년 1월부터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까지이며, 제2기는 미 리먼사 파산 후 2008년 10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2010년 4월까지로 구분하며, 제3기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시행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된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이다. 이렇게 구분한 각 하위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더미가 포함된 더미-GARCH 및 더미-GJR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위험에 따른 환율변동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한 2변량-GARCH모형을 이용해 원/유로와 원/달러환율간의 조건부공분산을 추정하여, 두 변수간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위험 헤지 및 무역금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Ⅴ절에서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

2) 2014년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5.4%, 12.3%이었고, 이어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로, 일본(5.6%)보다 높았음.

3) 우리나라엔 원/유로화 직거래시장은 부재하므로, 본 연구의 원/유로환율은 원/달러와 유로/달러간 재정환율로 산정한 환율이므로, 분석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함.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환율변동성에 이용된 모형은 표준편차, 분산, 변동계수 등을 환율변동성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선택하여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조건부적 변동성측정방법으로서 환율의 시간가변적 분산(time-varying variance), 즉 조건부 이분산(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건부 이분산을 다루는 모형이 Engle(1982)에 의해 개발된 "자기회귀조건부 이분산모형(ARCH)"이다. 이 모형은 오차의 조건부이분산이 시차를 갖는 오차항들의 제곱에 의하여 설명된 것을 말한다. 이 모형을 일반화시켜서 Bollerslev(1986)는 오차항들의 제곱뿐만 아니라 시차를 갖는 조건부이분산에 의하여 오차의 분산이 설명되어짐을 설명하고 이를 "일반화된 자기회귀 조건부이분산 모형(GARCH)"라 하였다.

한편 Engle-Lillien-Robins(1987)은 조건부분산이나 조건부표준편차가 위험의 척도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조건부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GARCH 모형을 일반화한 GARCH-M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충격의 비대칭성 효과(asymmetry effect)를 고려하기 위한 Nelson(1991)에 의해 개발된 EGARCH(exponential GARCH) 모형, Sentana(1991)에 의해 개발된 QGARCH 모형, 그리고 외부의 충격이 레버리지효과 및 비대칭성효과를 갖는지 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기 위한 GJR(TGARCH)모형은 Glosten-Jaganathan-Runkle(1993)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구 · 개발되어 왔다.[4)]

또한 Bollerslev, Engle, and Wooldridge(1988), Engle and Kroner(1995), Engle(2002), Lundblad(2007), 그리고 Brunctti and Gibert(1998) 등에 의해 다변량-GARCH 모형 및 다변량-FIGARCH 모형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2.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국내 실증연구로서 환율의 변동성 분석에 GARCH 모형을 적용한 논문으로는 홍갑수(1990)를 시작으로, 주상영(1996), 정찬우(1996), 이근영(1999, 2002), 정재식

4) GARCH류 모형은 Engle(1982, 2002), Bollerslev(1986), Nelson(1991), Brunctti and Gibert(1998) 등 참조.

(1999, 2008), 조갑제(2003), 윤옥자 외(2004), 조하현 · 이승국(2004), 홍정효(2007), 김종선(2009, 2013), 조정구(2012), 박범조(2014)등 다수의 저작들이 있다. 이들은 단일변량-GARCH 모형, 다변량-GARCH모형 및 다변량-FIGARCH모형 등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의 크기 및 비대칭성 등 변동성의 특성, 변동성의 전이효과, 그리고 환율변동성과 외환거래량의 관계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를 대표적인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GARCH모형을 이용한 환율변동성의 비대칭성 등의 특성과 관련한 실증연구로서, 성용범 · 김기석(2000)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기간만을 대상으로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의 비대칭성의 존재를 입증한 바 있다. 반면, Park(2002)은 유럽 주요국의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갑제(2003), 김종선(2009) 등도 외환위기가 포함된 시계열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환율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으나, 김종선(2013) 등은 원/달러환율과는 달리 엔/달러환율의 경우는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둘째 유형은 GARCH류 모형을 활용한 환율변동성 분석과 관련한 변동성의 동조화 및 전이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로서, 조하현 · 이승국(2004)은 FIGARCH모형을 이용하여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간에 안정적인 균형관계(동조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홍정효(2007)는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간 가격발견기능의 존재를 확인하여, 외환시장의 비효율성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박해식 · 김영도(2008)는 원/달러와 엔/달러환율간 동조화와 탈동조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시장개입이 동조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유형으로 환율변동성과 외환거래량간의 관계를 분석한 정재식 · 주상영(1999)은 GARCH류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량이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입증하였으나, 최근 박범조(2014)는 DCC-M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원/달러 환율변동성과 외환거래량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지는 기간에는 두 변수간 동적 상관관계가 음(-)의 관계임을 입증한 바 있다.

Ⅲ. 분석의 방법

1. GARCH류 모형

일반적으로 조건부 이분산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GARCH 모형 중 가장 기본적인 GARCH(1,1)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X_t = a_0 + a_1 \cdot X_{t-1} + \varepsilon_t \quad (1)$$

$$\varepsilon_t = Z_t \cdot h_t^{\frac{1}{2}}, \; Z_t \sim N(0, 1) \quad (2)$$

$$h_t = b_0 + b_1 \cdot \varepsilon^2_{t-1} + b_2 \cdot h_{t-1} \quad (3)$$

$$(b_0 > 0, \; b_1 \geq 0, \; b_2 \geq 0, \; b_1 + b_2 < 1)$$

식(1)은 조건부 평균방정식이고, 식(2)는 이노베이션이며, 식(3)은 조건부 분산방정식을 나타낸다. 먼저, ARCH모형에서 조건부분산은 과거의 표본분산(즉, 예측오차)의 함수로 구성된다. Bollerslev(1986)는 ARCH모형을 일반화하여 GARCH모형을 일반화하였는데, GARCH모형에서는 조건부분산이 과거의 표본분산 뿐만 아니라 조건부분산의 시차로 구성된다.

이때 모수들에 대한 양(non-negative)의 조건은 조건부 분산이 양(+)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며, $b_1 + b_2 < 1$의 조건은 ARCH과정이 안정적(covariance-stationary)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또한 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 충격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 충격의 효과가 반감되는 중앙시차(median lag)는 다음과 같다.

$$Median \;\; lag = -\frac{\log 2}{\log b_2} \quad (4)$$

따라서 b_2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충격의 효과는 오래 지속(기억)되어 안정상태(steady state)로 돌아오는 데 매우 늦다는 의미이다.

한편, 충격의 비대칭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간단한 모형인 Nelson(1991)의 EGARCH(Exponential GARCH)모형의 분산방정식은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_t = b_0 + b_1 \cdot |z_{t-1}| + b_2 \cdot h_{t-1} \quad (5)$$

단, $z_{t-1} = \varepsilon_{t-1} / \sqrt{h_{t-1}}$을 의미함.

이때 GARCH(1,1)모형에서는 오차항이 공분산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b_1 + b_2 < 1$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EGARCH(1,1)모형은 $b_2 < 1$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GARCH(1,1)모형보다 덜 제약적이다.

또한 비대칭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EGARCH(exponential GARCH)모형의 개발에 이어, 충격의 비대칭성효과(asymmetry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 보완·발전된 Glosten-Jaganathan-Runkle(1993)의 GJR(즉, TGARCH) 모형의 분산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5].

$$h_t = b_0 + b_1 \cdot \varepsilon^2_{t-1} + b'_1 \cdot \varepsilon^2_{t-1} \cdot I_{t-1} + b_2 \cdot h_{t-1} \quad (6)$$

(단, I_t =1 if $\varepsilon_t < 0$, and 0 if $\varepsilon_t > 0$)

이때 음의 충격(나쁜 뉴스)이 발생하면 I_t =1 , 양의 충격(좋은 뉴스)이 발생하면 I_t =0이 됨으로서 원/달러환율에 양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b_1이 되며 , 또한 음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b_1 + b'_1$ 가 된다. 만약 음의 충격이 양의 충격보다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다시 말하면,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 $b_1 + b'_1 > b_1$, 결국 $b'_1 > 0$ 이 되어야 한다[6].

따라서 원/달러환율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충격(음의 충격)이 원/달러환율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충격(양의 충격)보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우에 비대칭성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규분포 가정하에 추정하고자 하는 대수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Theta) = \sum_{t=1}^{T} [-0.5 \ln 2\pi h_t - o.5 \varepsilon_t^2 / h_t] \quad (7)$$

---

5) 소위 GJR모형에 관해서는 Glosten, L.R., et al(1993)을 참조.

6) GJR모형에서는 환율예측모형의 잔차를 충격(뉴스)의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함.

이 식(7)에서 Θ는 모형에서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며, 이때 대수우도함수는 BHHH(Berndt, Hall, Hall, and Hausman) 연산방식을 이용해 $L(\Theta)$를 극대화시킨다.

한편, Engle(1982)의 ARCH모형을 일반화시킨 Bollerslev(1986)의 GARCH모형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시간가변적(time-varying)인 시계열상관의 특성을 보이는 분산을 모형화 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을 보이기 때문에, GARCH 모형의 조건부 이분산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이 원/유로 및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식(8)처럼 분산방정식에 2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더미-GARCH모형을 설정하였다.

$$h_t = b_0 + b_1 \cdot \varepsilon^2_{t-1} + b_2 \cdot h_{t-1} + \sum_{i=3}^{n} b_i \cdot D_i \quad (8)$$

단, Di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전후한 환율변동을 고려한 기간별 더미변수

이때, D_i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이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동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더미변수로서 식(8)의 분산방정식에 포함하여 더미-GARCH모형을 설정한다.

2. 다변량-GARCH 모형

Bollerslev, Engle, and Wooldridge(1988)에 의해 확장되고, Engle and Kroner(1995), Engle(2002), 그리고 Lundblad(2007) 등에 의해 발전된 다변량-GARCH모형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2변량-GARCH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변량-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전후한 환율변동의 충격에 따른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의 두변수간 조건부 공분산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변량-GARCH(1,1)모형의 조건부 분산식, 조건부 공분산식, 그리고 로그우도함수는 각각 식(9), 식(10), 그리고 식(11)과 같다.

조건부 분산식: $h_{1t} = a_2 + a_3 \cdot \varepsilon^2_{1,t-1} + a_4 \cdot h_{t-1}$,

$$h_{2t} = b_2 + b_3 \cdot \varepsilon^2_{2,t-1} + b_4 \cdot h_{t-1} \quad (9)$$

조건부공분산식: $h_{12,t} = c_1 + c_2 \cdot \varepsilon_{1,t-1} \cdot \varepsilon_{2,t-1} + c_3 \cdot h_{12,t-1}$ (10)

따라서 ARCH 모수 c_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건부공분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며, GARCH 모수 c_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한편 2변량-GARCH(1,1)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 = \text{상수항} - \frac{1}{2}\sum_{t=1}^{T}(\log|\Omega_t| - u'_t\Omega_t^{-1}u_t) \quad (11)$$

$$\text{단, } \Omega_t = \begin{bmatrix} \sigma_{1t}^2 & \sigma_{12t} \\ \sigma_{12t} & \sigma_{2t}^2 \end{bmatrix}, \quad u_t = (\varepsilon_{1t}, \varepsilon_{2t})'.$$

이때, $|\cdot|$는 행렬식(determinant)이며, σ_{1t}^2와 σ_{2t}^2는 각각 2변량에 대한 조건부분산이고, σ_{12t}는 2변량간의 조건부 공분산이다. 그리고 ε_{1t}와 ε_{2t}는 각각 2변량의 이노베이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금융 · 재정위기를 전후한 시장위험을 감안하여 설정한 더미-GARCH모형 및 더미-GJR모형을 이용하며 기간별 환율변동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2변량-GARCH모형을 이용하여 원/유로화와 원/달러환율간의 조건부공분산을 추정하여 두 변수간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실증분석 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총 표본기간을 제1기(1999년 1월~2008년 9월), 제2기(2008년 10월~2010년 4월), 제3기(2010년 5월~2015년 3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기는 유로존의 단일통화가 도입(1999년 1월)된 후 미국 리먼사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이고, 제2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확산된 시기이며, 제3기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시행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된 시기이다. 또한 실증분석 자료는 한국은행 DB에서 제공하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의 원/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기준환율)의 일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각각 총 4,083개이다.

[그림1]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 추이(1999.1.~ 20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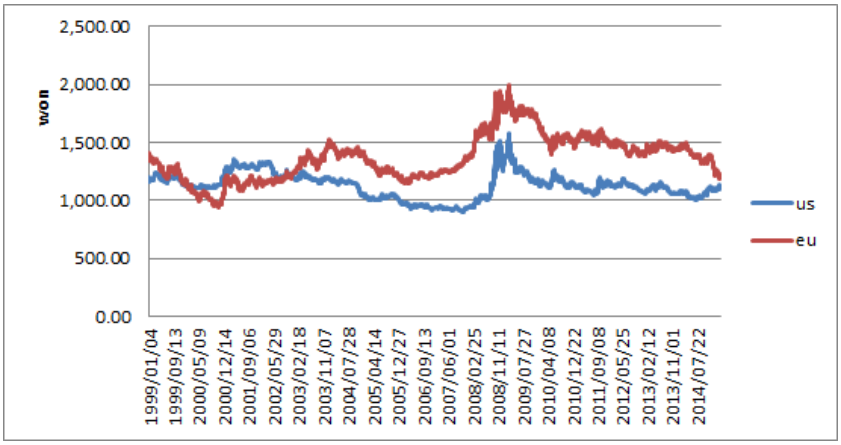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1]은 199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전후의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2년경부터 원/달러환율에 비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원/유로환율이 2008년 하반기 전후 더욱 강세를 보였는데, 2015년 들어 유로화의 추락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2]와 [그림3]은 각각 원/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의 추이를 백분율로 보여준다. 2008년 하반기이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변동성의 확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2] 원/유로환율의 변동성 추이(1999.1.~ 20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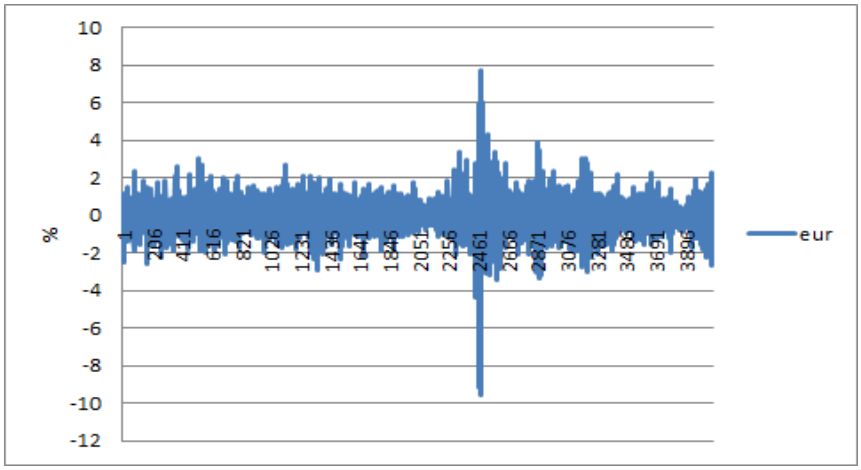

[그림3] 원/달러환율의 변동성 추이(1999.1.~ 20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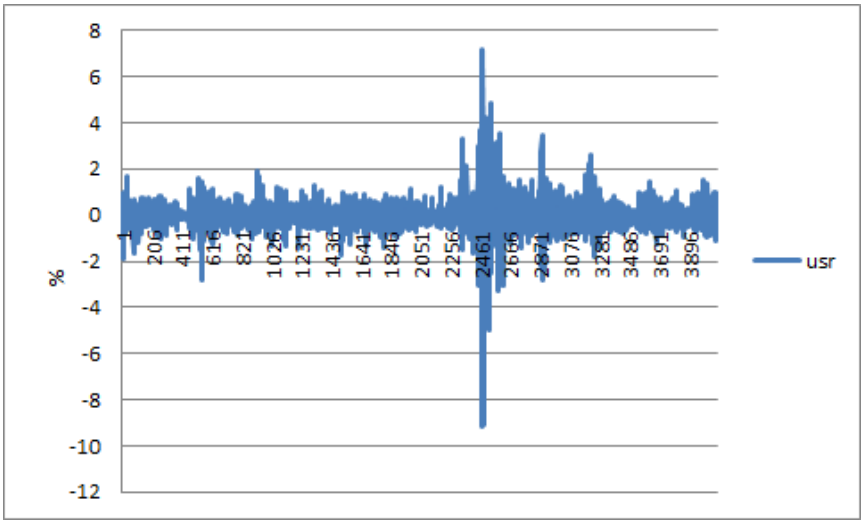

다음 <표 1>은 실증분석에 사용할 환율의 총3기에 걸친 각기별 기초통계량이다. 이때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은 각각 자연대수를 취한 후,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들기 위해 각 환율변화율(⊿lnX)은 차분하여 구하였다. 먼저, 원/유로의 경우 환율변화율의 표준편차는 제1기에 0.00744, 제2기에 0.01569, 제3기에 0.00824로 각각 추정되어 제1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제2기와 그리스 발 재정위기가 확산된 제3기에 환율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원/달러의 경우에도 환율변화율의 표준편차는 제1기에 0.00432, 제2기에 0.01371, 제3기에 0.00522로 각각 추정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제2기에 환율변동성이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한편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는 제2기와 전체표본에서는 각각 음(-)의 값으로 나타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초과첨도는 모든 기에서 정규분포의 초과첨도인 0보다 크게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체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Ljung-Box 검정결과, 모든 기에서 대체로 환율변화율이 계열상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원/유로 및 원/달러환율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QM(10) 및 $Q^2(10)$의 검정통계량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즉 원/유로 및 원/달러의 환율변화율에 자기상관이 심하게 걸려 있어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조건부 이분산 모형(즉, GARCH 모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7]

7) $Q^2(10)$은 환율변화율의 제곱에 대한 10계차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검정하는 Ljung-Box 통계량

<표 1> 환율변화율(⊿lnX) [1]의 기초 통계량(일간자료)

구 분		표본평균	표준편차	최고치	최저치	왜도	초과첨도	QM (10)	Q^2 (10)	ADF (1)
전체표본 (1999.1 ~ 2015.3)	원/유로 환율	-0.000033	0.00880	0.0769	-0.0959	-0.18	10.38	63.16 [0.00]	2269.1 [0.00]	-35.72
	원/달러 환율	-0.000013	0.00615	0.0714	-0.0919	-0.64	37.92	196.41 [0.00]	2437.5 [0.00]	-31.49
제1기 (1999.1 ~ 2008.9)	원/유로 환율	0.000090	0.00744	0.0337	-0.0438	0.04	1.37	30.98 [0.00]	247.9 [0.00]	-16.75
	원/달러 환율	0.000016	0.00432	0.0371	-0.0305	0.65	8.36	49.66 [0.00]	1000.2 [0.00]	-15.37
제2기 (2008.10 ~ 2010.4)	원/유로 환율	-0.000285	0.01569	0.0769	-0.0959	-0.25	8.35	44.91 [0.00]	266.3 [0.00]	-27.96
	원/달러 환율	-0.000220	0.01371	0.0714	-0.0919	-0.80	12.95	65.41 [0.00]	248.7 [0.00]	-24.06
제3기 (2010.5 ~ 2015.3)	원/유로 환율	-0.000146	0.00824	0.0387	-0.0337	0.16	1.87	86.11 [0.00]	531.3 [0.00]	-48.93
	원/달러 환율	-0.000007	0.00522	0.0349	-0.0279	0.71	5.42	22.67 [0.01]	630.0 [0.00]	-44.19

주: 1) 한은 DB의 기준환율의 일간자료를 ⊿lnx = log(x(t)) - log(x(t-1))방식으로 차분함
2) [ ] 안의 값은 각각 환율변화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확률값(P-value)
3) 단위근 검정을 위한 ADF검정의 임계치는 1%(-3.44), 5%(-2.87), 10%(-2.57)임

끝으로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root test)을 수행하였다. 이때 귀무가설은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의 시차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한다고 설정하였다. 수준변수인 원/유로 및 원/달러환율에 대한 ADF 검정을 시도한 결과[8]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으나, <표 1>에서 보듯이, 차분변수인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은 안정적 시계열로 확인됨으로서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은 I(1) 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로그환율을 1차 차분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들어 추정에 사용하였다.

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건부이분산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음.

8) ADF 검정결과, 원/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의 수준변수(level variable)의 경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불안정한 시계열로 판명됨에 따라 이 시계열을 차분하여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여 추정함.

2.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

(1) 원/달러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더미-GARCH(1.1) 모형의 추정 결과

<표 2>의 더미-GARCH(1.1) 모형의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Ljung-Box 검정결과, Zt이 계열상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5%유의수준에서 QM(10)의 검정통계량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Q^2(10)$의 검정통계량에서도 각각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졌다. 이는 GARCH(1.1)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의 변화율에 더 이상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GARCH(1.1)모형의 ARCH과정이 안정적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원/유로환율의 경우에 $b_1 + b_2 = 0.9286 < 1$, 원/달러환율의 경우에 $b_1 + b_2 = 0.9704286 < 1$ 로 계산되어, ARCH과정이 안정적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시켜 시계열이 공분산 안정적이었다.

또한 앞의 식(4)에서 제시된 변동성 충격의 지속성이 반감되는 중앙시차(median lag)는 원/유로환율의 경우에 3.354로, 원/달러의 경우에 3.348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충격이 가해 진 후 원/유로환율의 경우에는 3.354일 후, 원/달러환율의 경우에는 3.348일후에 충격의 지속성이 반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제2기의 환율변동성 확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더미변수 (D_{1t})의 추정계수는 먼저, 원/유로의 경우에 0.0181로 추정되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고, 원/달러의 경우에 0.0132로 추정되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반면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제3기의 환율변동성 확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원/유로의 경우 더미변수의(D_{2t})의 추정계수는 -0.0119로 추정되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여 변동성이 축소되었음을 시사했으나, 원/달러의 경우는 0.0006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2> 더미-GARCH 모형의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 (1999.1~2015.3)

구 분	원/유로환율	원/달러환율
a_0	-0.0174 (-1.52)	-0.0172*** (-2.95)
a_1	-0.1337*** (-7.92)	0.1397*** (15.93)
b_0	0.0493*** (21.51)	0.0074*** (14.50)
b_1	0.1153*** (11.83)	0.1574*** (18.24)
b_2 b_3 (더미1)[1] b_4 (더미2)[2]	0.8133*** (78.77) 0.0181* (1.71) -0.0119*** (-3.17)	0.8130*** (105.28) 0.0132*** (3.18) 0.0006 (0.63)
QM(10)	6.95 [0.73]	16.22 [0.09]
$Q^2(10)$	11.81 [0.30]	10.61 [0.39]
log L	- 5269.89	-3734.39

주 : 1) 더미1은 기간더미(2008.10~2010.4)이며, 더미2는 기간더미(2010.5~2015.3)임
2) ( )속은 t-값이며 ;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3) log L은 대수우도 함수치임(대수우도함수는 BHH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함)
4) $Q_M(10)$은 Z_t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수정된 Ljung-Box 검정통계량
5) $Q^2(10)$은 Z_t^2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6) [ ] 안의 값은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확률값(P-value)

(2) 원/달러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더미-GJR(1,1) 모형의 추정 결과

다음 <표 3>에서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더미-GJR(1,1)모형의 Ljung-Box 검정결과, Zt이 계열상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QM(10) 및 $Q^2(10)$의 검정통계량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는 GJR(1.1)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는 원/달러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에 더 이상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 더미-GJR 모형의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
(1999.1~2015.3)

구 분	원/유로환율	원/달러환율
a_0	-0.0157 (-1.34)	-0.0089 (-1.47)
a_1	-0.1341*** (-7.94)	0.1405*** (15.78)
b_0	0.0495*** (21.49)	0.0079*** (15.54)
b_1	0.2104*** (9.97)	0.1997*** (15.13)
$b_1^{'}$	-0.0111 (-0.69)	-0.0954*** (-6.88)
b_2 b_3 (더미1)[1] b_4 (더미2)[2]	0.8130*** (78.33) 0.0187* (1.75) -0.0117*** (-3.09)	0.8132*** (103.60) 0.0150*** (3.64) 0.0007 (0.74)
QM(10)	6.92 [0.73]	17.09 [0.07]
$Q^2(10)$	12.04 [0.28]	11.24 [0.34]
log L	- 5269.89	-3734.39

주 : 1) 더미1은 기간더미(2008.10~2010.4)이며, 더미2는 기간더미(2010.5~2015.3)임
2) ( )속은 t-값이며 ;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3) log L은 대수우도 함수치임(대수우도함수는 BHH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함)
4) $Q_M(10)$은 Z_t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수정된 Ljung-Box 검정통계량
5) $Q^2(10)$은 Z_t^2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6) [ ] 안의 값은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확률값(P-value)

또한 더미-GJR(1,1)모형을 통한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제2기의 더미변수 (D_{1t})의 추정계수는 먼저,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 각각 0.0187 및 0.0150으로 추정되어 10% 및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반면에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된 제3기의 더미변수 (D_{2t})의 추정계수는 원/유로의 경우는 -0.0117로 추정되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즉, 원/유로의 경

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2기에 확대되었던 변동성이 제3기 이후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원/달러의 경우에는 0.0007로 추정된 제3기의 더미변수 (D_{2t})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표 3>의 b_1 은 양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며, $b_1 + b'_1$는 음의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즉, 환율을 하락시키는 충격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충격보다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우에 비대칭성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충격의 비대칭성효과 분석을 위한 GJR(1.1) 모형의 추정결과, <표 3>에서 전체표본기간의 원/달러환율의 경우에 b'_1가 -0.0954로 음(-)으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도 존재하여 환율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유로환율의 경우에도 -0.0111로 음(-)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9]

이는 원/달러환율의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충격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경제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과도한 반응(overreation)을 보이는 맹목적 공항(blind panic)에 의해 외환시장이 주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원/달러의 환율변동성은 외부적 충격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3. 원/유로와 원/달러 환율변화율간 조건부 공분산 분석

다변량-GARCH모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인 2변량-GARCH(1,1)모형을 이용한 원/유로 및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추정은 식(9)의 조건부 평균방정식, 식(10)의 조건부 분산식, 그리고 식(11)의 조건부 공분산식을 이용하였다. 즉, 2변량-GARCH(1,1) 모형의 추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따른 원/유로 및 원/달러환율간의 조건부 공분산을 분석하였는데,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GARCH의 모수 c_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과거의 조건부 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ARCH의 모수 c_2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면 조건부 공분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 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의 상관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환위험을 헤지할 경우 환위험을 왜곡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가변적 상관관계 분석은 환위험 헤지 및 무역금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9) Park(2002)은 유럽 주요국의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고, 조갑제(2003), 김종선(2013) 등도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음.

다고 하겠다.

먼저 <표 4>에서 원/유로와 원/달러 환율변화율은 ARCH과정이 안정적이기 위한 충분조건인 각 기별로 $a_3 + a_4$ 및 $b_3 + b_4$이 1보다 작게 계산되어 각각 ARCH과정이 안정적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시켰다.

<표 4> 원/유로와 원/달러 환율변화율간의 2변량-GARCH(1,1) 모형의 추정결과

방정식	모 수	제1기 (1999.1 ~2008.9)	제2기 (2008.10 ~2010.4)	제3기 (2010.5 ~2015.4)	전체기간 (1999.1 ~2015.3)
원/유로 환율	a_0	0.0074 (0.51)	- 0.0505 (-1.04)	- 0.0378** (-2.02)	- 0.0104 (-0.94)
	a_1	-0.0187 (-0.92)	0.0363 (0.79)	-0.0016 (-0.06)	-0.0013 (-0.09)
	a_2	0.0038*** (3.03)	0.0162* (1.81)	0.0042*** (3.42)	0.0049*** (5.53)
	a_3	0.0340*** (7.67)	0.0741*** (4.56)	0.04808** (6.70)	0.0497*** (12.94)
	a_4	0.9598*** (175.58)	0.9099*** (56.39)	0.9451*** (128.67)	0.9434*** (222.14)
원/달러 환율	b_0	-0.0139* (-1.89)	- 0.0566* (-1.67)	-0.0185 (-1.59)	-0.0154** (-2.56)
	b_1	0.0819*** (4.24)	0.0820* (1.70)	0.0609** (2.35)	0.0721*** (4.97)
	b_2	0.0048*** (7.74)	0.0081*** (3.21)	0.0026*** (3.49)	0.0028*** (9.92)
	b_3	0.0921*** (12.72)	0.0711*** (6.07)	0.0662*** (7.72)	0.0732*** (17.24)
	b_4	0.8788*** (95.38)	0.9094*** (85.29)	0.9218*** (94.79)	0.9140*** (204.61)
조건부 공분산	c_1	0.0040*** (4.96)	0.0092** (2.89)	0.0031*** (3.28)	0.0026*** (6.56)
	c_2	0.0513*** (9.84)	0.0760*** (7.79)	0.0555*** (8.02)	0.0565*** (16.31)
	c_3	0.9161*** (97.74)	0.9004*** (66.79)	0.9273*** (107.45)	0.9281*** (209.80)
Function Value		1070.46	- 260.32	418.06	1201.73

주: 1) ( )속은 t-값 :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2) 조건부 평균방정식: $\Delta X_{1t} = a_0 + a_1 \cdot \Delta X_{1,t-1} + \epsilon_{1t}$,
$\Delta X_{2t} = b_0 + b_1 \cdot \Delta X_{2,t-1} + \epsilon_{2t}$
3) 조건부 분산식: $h_{1t} = a_2 + a_3 \cdot \epsilon^2_{1,t-1} + a_4 \cdot h_{t-1}$,
$h_{2t} = b_2 + b_3 \cdot \epsilon^2_{2,t-1} + b_4 \cdot h_{t-1}$
4) 조건부 공분산식: $h_{12,t} = c_1 + c_2 \cdot \epsilon_{1,t-1} \cdot \epsilon_{2,t-1} + c_3 \cdot h_{12,t-1}$

<표 4>에서 보듯이 ARCH의 모수는 모든 기에 걸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이때 ARCH 모수 c_2 는 모든 기에 걸쳐서 양(+)으로 나타나 원/유로와 원/달러환율의 조건부 공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한다. 즉, 원/유로와 원/달러환율간 시간가변적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건부 공분산방정식의 GARCH 모수 c_3 는 모든 기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이때 전체표본기(1999.1~2015.3)의 모수 c_3 는 0.9281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원/유로와 원/달러 환율변화율간의 조건부 공분산은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긴밀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정방향 동조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위기간인 제1기, 제2기, 제3기의 GARCH 모수 c_3 도 각각 0.9161, 0.9004, 0.9273 각각 추정되어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제2기(0.9004)보다 제3기(0.9273)에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이 다소 더 커졌다.

이처럼 원/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의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총수출로 보면 대 유럽수출이 대 중국 및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므로 유로화 및 달러화의 환율변동성의 확대 및 축소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위험에 따른 환위험관리를 위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선물환, 통화선물・옵션, 통화스왑)의 거래뿐만 아니라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제도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환위험 헤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로존의 단일통화가 도입된 1999년부터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기간이 포함된 2015년 1/4분기까지의 원/유로와 원/달러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성과 조건부공분산 분석을 통해 환위험 헤지 및 무역금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를 제1기(1999.1~2008.9), 제2기(2008.10~2010.4), 제3기(2010.5~2015.3)로 설정하고,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따른 원/유로와 원/달러환율의 변동성 및 조건부공분산 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GARCH류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원/유로와 원/달러의 환율변동성 및 조건부공분산 등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더미-GARCH 및 더미-GJR모형의 추정 결과, 원/유로의 경우는 제1기(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이후 제2기(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확대되었던 변동성이 제3기(유럽 재정위기) 이후 환율변동성이 축소되었다. 또한 원/달러의 경우에도 제2기와 제3기에 환율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3기의 더미변수 (D_{2t})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환율변동성은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환위험 헤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로 환율변동성의 지속성 측면에서, 변동성 충격의 지속성이 반감되는 중앙시차(median lag)가 원/유로의 경우는 3.354로 계산되었고, 원/달러의 경우에 3.348로 계산되었다. 이는 변동성 충격이 가해진 후 원/유로의 경우는 3.354일, 원/달러의 경우는 3.348일까지 영향이 강하게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변동성 충격이 있을 때 외환시장이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의 경우에 원/유로환율이 원/달러환율보다 충격의 지속성이 다소 길었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정보의 비대칭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GJR(1.1)모형의 추정결과, 원/유로환율의 경우는 b'_1값이 음(-)으로 추정되어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원/달러환율의 경우에도 b'_1값이 음(-)으로 추정되어 환율변동성에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율변동성에 외부적 충격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조건부 공분산 분석 결과, GARCH 모수 c_3 는 모든 기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전체표본기 및 하위기간인 제1기, 제2기, 제3기의 GARCH 모수 c_3 는 각각 0.9281, 0.9161, 0.9004, 0.9273로 추정되어 과거의 조건부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제2기(0.9004)보다 제3기(0.9273)에 정방향 동조화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시간가변적 상관관계분석 결과, ARCH 모수 c_2 는 모든 기에 걸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 원/유로환율과 원/달러환율의 조건부 공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한다. 즉, 원/유로와 원/달러환율간 시간가변적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위험(systematic risk)에 따른 환율변동성의 확대와 축소에 대응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시장참여자에게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선물환, 통화선물・옵션, 통화스왑)의 거래뿐만 아니라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환위험 헤지 방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준 · 유한수,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충격전이효과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12, pp.255~283.

김종선, “외환위기 이후의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8, pp.1395~1417.

--------, “환율전쟁에 따른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및 상관관계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6, pp49~69.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원화의 환율변동성이 대일 수출에 미친 영향”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6, pp193~214.

김태헌, “환율변동성이 한-EU무역에 미치는 영향 :실물유로화 통용을 중심으로”, 『한독 경상 논총』, 제27권 제4호, 한독경상학회, 2009. 12, pp.113~140.

박범조,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이 거래량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금융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2014. 9, pp.33~56.

박해식 · 김영도, “원-엔 동조화가 수출에 미치는 가격효과”, 금융조사보고서(5), 한국금융연구원, 2008. 5.

성범용 · 김기석, “뉴스충격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0. 3, 국제경제학회, pp.161~180.

이재화,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환변동보험 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6, pp65~86.

윤옥자 외, “외환위기 전후 금리, 환율, 주가 변동성에 관한 분석”, 『경제분석』, 제10권 제1호, 한국은행, 2004. 3, pp.54~81.

조갑제, “아시아 외환위기 중 환율변동성의 뉴스에 대한 반응”, 『국제경제연구』, 제9권 제1호, 국제경제학회, 2003. 3, pp.55~67.

조하현 · 이승국,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서의 분수공적분 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국제경제학회, 2004. 9, pp.171~197.

홍정효, “원달러 및 엔달러 현물시장간의 가격발견기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6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12, pp.2437~2454.

Bollerslev, T., R. Y. Chou & K. F. Kroner, ″ARCH Modeling in Finance: A Review of th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Econometrics*, 52, 1992, pp.5~59.

Bollerslev, T., R. F. Engle & D. B. Nelson, "ARCH Models," in: R. F. Engle & D. McFadden, eds., *Handbook of Econometrics*, Vol. IV North-Holland: Amsterdam, 1994, pp.2959~3038.

Bollerslev, T., R. F. Engle & J. Wooldridge, "A Capital Asset Pricing Model with Time Varing Covari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1988, pp.116~131.

Bordo, M. D. and A. J. Schwartz, "What Ha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since the Plaza Agreement Accomplished?," *Open Economic Review*, 2, 1991, pp.39~64.

Dattels, P. and K. Miajima, "Will Emerging Markets Remain Resilent to Global Stress?," *Global Journa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1, 2009, pp.5~24.

Diebold, F. X. & M. Nerlove, " The Dynamic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 Multivariate Latent Factor ARCH Model."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4, 1989, pp.1~21.

Engel, C., N. Mark, and K. West, " Exchange Rate Models Are Not as Bad as You Think," *NBER Working Paper No.13318*, 2007.

Engle, R. F.,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with Estimates of the Variance of United Kingdom Inflation", *Econometrica*, 50(4), 1982, pp.987~1008.

Engle, R. F. and K. F. Kroner, "Multivariate Simultaneous Generalized ARCH," *Econometric Theory*, 11, 1995, pp.122~150.

Highfill, J.," The Economic Crisis as of December 2008," *Global Economy Journal*, 8, 2009, pp.1~5.

Kwan, C. H., "Yen Block: Toward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Nelson, D. B., "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in Asset Returns : A New Approach," *Econometrica*, 59, 1991, pp.347~370.

Lundblad, C., " The Risk Return Tradeoff in the Long Ru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85(1)*, 2007, pp.347~370.

Romer, C. D. and D. H. Romer, "The Missing Transmission Mechanism in the Monetary Explanation of the Great Depression," *NBER Working paper No. 18746*, 2013.

Park, B. J., "A Asymmetric Volatility of Exchange Rate Returns Under the EMS: Some Evidence from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for TGARCH Model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6(1), 2002, pp.105～126.

ABSTRACT

An Analysis on Price Volatility and Conditional Covariance Effect between Won-Euro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Kim, Chong-Sun*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the price volatility & conditional covariance between won-euro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After all, this study focuses on analysing the volatility effect of GARCH models which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asymmetry effect, and conditional covariance effect of won-euro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Some main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xpansion of the volatility of won-euro & won-dollar exchange rates was found irregularly elastic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Secondly, in terms of the median lag analysis, the persistence of won-euro exchange rates is slightly stronger than that of won-dollar exchange rates. Thirdly, a significant evidence was not found in detecting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dollar & won-euro exchange rates, however, the test of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of won-euro exchange rates did not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urthly, in terms of conditional covariance analysis, the positive time-varying correlation between won-euro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was detected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Keywords : global financial & fiscal crisis, won-euro & won-dollar, price volatility,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conditional covariance

* Prof. of Gwangju University, Korea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67~85.

논문접수일 : 2015.06.07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달러 선물을 이용한 무역대금 변동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 병 진**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Ⅲ. 연구자료 및 연구모형
Ⅳ. 실증연구 결과분석
Ⅴ.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1,256개의 일간자료로 달러 선물을 이용한 무역대금 변동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모형으로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모형인 최소분산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이변량 GARCH(1,1)모형과 헤지성과는 분산의 감소비율로 측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달러서물을 이용한 무역대금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헤지비율들을 추정하고, 각 모형들의 헤지성과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 및 이변량 GARCH(1,1)모형의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방식에 의한 헤지비율과 헤지성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기업들의 무역대금관리 담당자들이 달러 선물을 이용하여 무역대금의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변동 위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통계적인 자료의 문제점으로 인한 VECM 및 이분산 GARCH(1,1)모형을 사용하는 것과 전통적 분석모형인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입기업들의 무역대금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도 수출입기업들의 무역대금인 달러의 가치변화에 따른 무역대금의 변동위험을 96%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달러 현물, 달러 현물, 위험관리, 헤지 모형, 헤지 성과

*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2014.11.14.)의 발표문을 개고한 것임.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E-mail: sep1017@ynu.ac.kr

Ⅰ. 서 론

최근의 여러 가지 국제환경의 빠른 변화는 기업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 산업분야에서의 국제적 환경 변화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금융 산업분야에 있어서 수출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원/달러 환율은 수출입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은 급증하는 환율변화에 매우 민감한 수출수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 전반에 걸쳐 환율 변동이 주는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이 수출기업들의 기업 경영 성과 또는 매출액 등에 다양한 형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금융 산업이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으로 무역대금에 대한 위험관리는 필요하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변화도 <그림 1> 원달러 환율의 변화 그래프와 같이 변화폭이 크므로 무역대금에 대한 위험관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율 변화와 실제 수출 기업들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료는 일간자료로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1,256개의 자료이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입 기업들의 환율변동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원달러 현물 환율과 선물 가격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계열 특성에 맞는 모형으로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였고 추정된 헤지비율을 이용하여 헤지를 한 경우 분산의 감소비율로 헤지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헤지의 성과분석은 일간자료로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외표본에 의한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본기간의 자료 중 헤지성과 분석을 위한 마지막 56영업일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에 의해 구해진 헤지비율을 사용하여 마지막 56영업일간의 일간자료로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과 통화선물의 헤지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1,256개의 일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서론이고, 제Ⅱ장은 문헌 연구와 동기부여로 원달러 현물 환율과 선물간의 관계의 관련 문헌 연구와 연구의 동기부여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자료 및 모형 연구로 연구 사용할 자료와 시계열 분석 모형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실증연구 결과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원달러 환율의 변화 그래프

Ⅱ. 문헌연구

달러 선물을 이용한 무역대금 변동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문헌연구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한 헤지와 및 통화선물을 이용한 헤지 및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성 또는 환위험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Ghosh(1993)는 현, 선물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때 전통적인 OLS 모형으로 추정한 헤지비율은 과소추정이 되므로 이런 경우 ECM을 이용한 헤지비율의 추정이 OLS 회귀분석모형보다 예측력과 설명력에 있어 우월하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Wahab and Lashgari (1993), Chou, Denis and Lee (1996)등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Ghosh and Clayton (1996)의 연구결과는 ECM모형이 회귀분석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호, 최용재 연구(2011)는 환율변동성 또는 환위험을 가정한 수출가격 및 수출물가 방정식의 추정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이 수출가격 및 물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산업별, 기업규모별, 수출비중별로 환율변동성이 기업 채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위험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채산성에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환율변동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설윤(2013)은 기업자료를 이용한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이 그들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충격을 환헤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미시적 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환헤지 수준에 따라 수출탄력성 값이 달라지는 실증결과는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홍정효(20047)는 일본 엔화시장의 환위험관리에관한 연구에서 2002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29일까지 엔화 현물환율과 선도환율 자료를 사용하여 원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하락 위험관련하여 일본 엔화의 선도환 시장을 이용하여 엔화의 현물시장 가격하락 위험에 대한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엔화자산을 보유한 투자자 또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환위험관리전략수립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한규, 임병진(1998), 정한규(1999)는 1996. 5. 3.~1997. 5. 24.까지 KOSPI 200 현·선물지수자료를 토대로 ECM에 의하여 추정된 최적헤지비율과 전통적 회귀분석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최적헤지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ECM을 이용할 때 모형의 설명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력도 ECM이 약간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하, 장광렬 (2001)은 1996. 5. 3.~1998. 12. 5. 까지 KOSPI 200 현물과 선물지수자료를 이용, 최소분산모형, 벡터오차수정(VEC)모형, 이변량 GARCH(1,1)모형, 이변량 EGARCH(1,1)모형을 설정한후 헤지성과를 헤지모형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소분산모형이 KOSPI 200 선물과 현물가격간의 공적분관계를 고려한 VEC모형에 비해 헤지성과에서 차이가 없으며, 헤지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변량 GARCH모형 및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효과까지 고려한 이변량 EGARCH모형에 비해서도 헤지성과가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존연구들은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주식포트폴리오의 가치변동에 관한 위험관리와 상품선물을 이용한 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수출입기업들의 무역대금 결제에 따른 무역대금 변동위험을 원달러 선물을 이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모형

1. 연구자료

원달러 현물 환율과 선물의 헤지에 사용할 자료는 <표 1> 원달러 현물 기준가격과원달러 선물 자료와 <그림 2> 원달러 환율 현물과 서물의 수준변수 그래프 및 식(1)과 식(2)로 로그 차분한 <그림 3> 원달러 환율 현물과 서물의 차분변수 그래프와 같이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1,256개의 일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는 식(1)과 식(2)와 같이 로그차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달러 현물 환율 : $\ln(\frac{USDP_t}{USDP_{t-1}})$, USDP : 원달러 현물 환율.....(1)

원달러 선물 환율 : $\ln(\frac{USDF_t}{USDF_{t-1}})$, USDF : 원달러 선물 환율.....(2)

<표 1> 원 달러 현물 환율과 원 달러 선물 환율

일간 자료	연구 기간	자료의 수
원 달러 현물 환율 자료	2010. 1. 4 ~ 2015. 1. 19	1,256
원 달러 선물 환율 자료	2010. 1. 4 ~ 2015. 1. 19	1,256

<그림 2> 원달러 환율 현물과 서물의 수준변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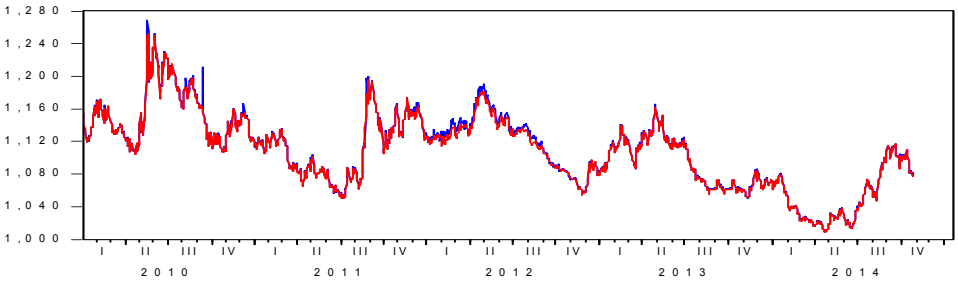

W: 원 달러 선물. X : 원 달러 현물

<그림 3> 원달러 환율 현물과 서물의 차분변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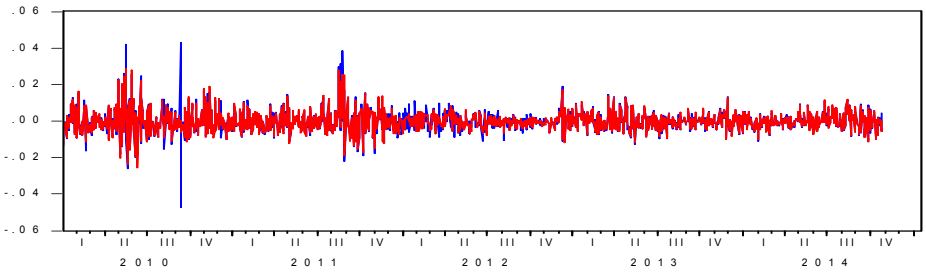

Y: 차분 원 달러 선물. Z : 차분 원 달러 현물,

2. 연구모형

(1) 최소분산모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에 사용할 헤지비율의 추정은 OLS 모형,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을 이용하였다. 우선 가장 전통적이고 편리하고 손쉬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전통적인 OLS(ordinary least squares)모형으로 최소분산 최적헤지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회귀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 모형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s_t = \alpha + \beta f_t + \varepsilon_i$$

여기서, $\beta = \frac{Cov(s_t, f_t)}{Var(f_t)}$

$$h^* = -\frac{Cov(s_0, f_0)}{Var(f_0)} = \frac{\sigma_{sf}}{\sigma^2_f} = \frac{\sigma_s \sigma_f \rho_{sf}}{\sigma^2_f} = -\frac{\sigma_s}{\sigma_f}\rho_{sf} = -\beta_{sf}$$

s_t: 차분 원 달러 선물, f_t: 차분 원 달러 현물

(2)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벡터오차수정모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는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고 이 검정이 유의할 경우 적절한 벡터(δ)를 도입하여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은 다음과 같다.

$S_{t-1} = c + \delta F_{t-1} + \varepsilon_{t-1}$, $S_{t-1} \sim$ I(1), $F_{t-1} \sim$ I(1)에서

$\varepsilon_{t-1} = S_{t-1} - c - \delta F_{t-1} \sim$ I(0)이 되는 δ를 추정, 이를 오차수정항으로 수식에 포함시키면,

$$\begin{bmatrix} \Delta S_t \\ \Delta F_t \end{bmatrix} = \begin{bmatrix} b_1 \\ b_2 \end{bmatrix} [S_{t-1} - \delta F_{t-1} - c] + \begin{bmatrix} c1 \\ c_2 \end{bmatrix} + \begin{bmatrix} e_{st} \\ e_{ft} \end{bmatrix}$$

단, $\begin{bmatrix} e_{st} \\ e_{ft} \end{bmatrix} \sim N(0, H_t)$, $H_t = \begin{bmatrix} c_{ss} & c_{sf} \\ c_{sf} & c_{ff} \end{bmatrix}$

S_t: 원 달러 선물, F_t: 원 달러 현물

$\triangle S_t$: 차분 원 달러 선물, $\triangle F_t$: 차분 원 달러 현물

(3) 공적분관계식 오차수정항을 고려한 이변량 AR(1)-GARCH(1,1)-M 모델

전통적인 OLS모형과 VECM모형은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변동성이 헤지기간 동안 일정하다는 기본 가정에서 모형을 설정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변동성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시간가변성을 모형에 첨가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의 변동성이 시간가변적이라는 가정을 포함한 GARCH모형이 유용하리라 예상된다. GARCH모형에서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공적분을 선물의 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헤지비율로 사용한다. 오차수정모형에서 나타난 오차수정항을 감안하여 모형화하면,

$$\begin{bmatrix} \Delta S_t \\ \Delta F_t \end{bmatrix} = \begin{bmatrix} \beta_1 \\ \beta_2 \end{bmatrix} [S_{t-1} - \delta F_{t-1} - c] + \begin{bmatrix} \zeta_1 \\ \zeta_2 \end{bmatrix} + \begin{bmatrix} e_{st} \\ e_{ft} \end{bmatrix}$$

단, $\begin{bmatrix} e_{st} \\ e_{ft} \end{bmatrix} | \Psi \sim N(0, H_t)$,

$$H_t = \begin{bmatrix} h_{ss} & h_{sf} \\ h_{sf} & h_{ff} \end{bmatrix}$$

$$vech(H_t) = \begin{bmatrix} a_1 \\ a_2 \\ a_3 \end{bmatrix} + \begin{bmatrix} b_1 & 0 & 0 \\ 0 & b_2 & 0 \\ 0 & 0 & b_3 \end{bmatrix} vech(\varepsilon_{t-1}\varepsilon'_{t-1}) + \begin{bmatrix} c_1 & 0 & 0 \\ 0 & c_2 & 0 \\ 0 & 0 & c_3 \end{bmatrix} vech(H_{t-1})$$

$\triangle S_t$: 차분 원 달러 선물, $\triangle F_t$: 차분 원 달러 현물

$vech(A)$연산자는 A의 하방삼각 행렬을 차례로 쌓음으로서 얻게되는 A의 모든 유일한 원소들로 구성된 벡터를 나타낸다.

(4) 헤지성과분석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의 성과분석은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 성과 분석을 위한 헤지비율 추정자료와 헤지성과를 위한 자료는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1,256개의 일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최소분산헤지모형(OLS), VECM모형. GARCF(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였고 추정된 헤지비율을 이용하여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를 한 경우 분산의 감소비율로 헤지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헤지의 성과분석은 일간자료로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외표본에 의한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본기간의 자료 중 헤지성과 분석을 위한 마지막 56영업일간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헤지비율을 사용하여 나머지 56일간의 자료로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성과로 사용된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헤지성과} = 1 - \frac{\text{헤지포지션분산}}{\text{무헤지포지션분산}} = \text{분산의 감소비율}$$

Ⅳ. 실증연구 결과분석

1. 가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을 이용한 적정 헤지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분산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 만기이전(roll over)이 자유롭다.

둘째,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은 없다.

셋째,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거래 수수료, 거래세 등도 없다.

2. 기초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사용할 각 지수들의 특성을 기초통계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 기초통계 분석과 같다. 위험을 나타내는 차분전 변동성인 표준편차의 경우 원달러 현물의 표준편차가 원달러 선물 표준편차보다 작게 나타나 원달러 현물의 변동성이 원달러 선물 변동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기초통계 분석

구 분	W	X	Y	Z
Mean	1109.408	1107.824	-5.19E-05	-5.48E-05
Median	1115.500	1114.100	-0.000358	-0.000283
Maximum	1269.000	1253.300	0.043076	0.028811
Minimum	1008.800	1008.500	-0.047133	-0.025774
Std. Dev.	46.35077	45.70359	0.006138	0.005594
Skewness	0.111612	0.110548	0.691300	0.566921
Kurtosis	2.851853	2.892429	12.43440	6.866745
Jarque-Bera	3.756304	3.163809	4754.329	849.0764
Probability	0.152872	0.205583	0.000000	0.000000
Sum	1393417	1391427	-0.065116	-0.068820
Sum Sq. Dev.	2696234	2621467	0.047247	0.039238
Observations	1256	1256	1255	1255

주) W: 원 달러 선물. X : 원 달러 현물, Y: 차분 원 달러 선물. Z : 차분 원 달러 현물

차분후에도 역시 변동성인 표준편차의 경우 원달러 현물의 표준편차가원달러 선물 표준편차보다 작게 나타나 원달러 현물의 변동성이원달러 선물의 변동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의 상관관계는 <표 3>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0.998072로 큰 정(+)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헤지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상관관계

	원달러 현물	원달러 선물
원달러 현물	1.000000	0.998072
원달러 선물	0.998072	1.000000

3.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결과 분석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를 위하여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시계열이 안정적 과정을 따르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해 ADF(Augmented Dickey Fuller)와 PP(Phillips and Perron)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 단위근 검정(수정전)

차분	원달러 선물	원달러 현물	ADF 임계치	PP 임계치
ADF	-2.752151	-2.534320	1% : -3.435348 5% : -2.863635 10% : -2.567935	
PP	-2.681650	-2.580348		
차분	원달러 선물	원달러 현물		
ADF	-37.90562	-35.69293	1% : -3.435352 5% : -2.863637 10% : -2.567936	
PP	-37.89212	-35.69125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는 아래 <표 4> 단위근 검정과 같다.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수준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반면,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1차 차분변수는 단위근 가설을 유의적으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두 시계열간에 공적분의 존재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Johansen의 공적분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석기간별로 유의수준 5%. 시차4를 이용한 공적분 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 5> 공적분 검정와 같다. 공적분 검정의 결과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에는 적어도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변수간 공적분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두 변수간에 장기적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상호 관련성이 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5> 공적분 검정

구 분	원달러 현물과 선물지수	
	차분 전	차분 후
Likelihood Ratio	104.9636	790.1928

주) 5% critical value : 15.49471

4. 헤지비율추정결과 분석

(1) 최소분산모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를 위해 최소분산 회귀분석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 최소분산 회귀분석모형에 의한 헤지비율 추정결과와 같다. 이 분석결과에서 계수값 $\hat{\beta}$이 헤지비율이 되는데, 일간 헤지비율은 내표본은 0.963130이고, 외표본은 0.962024로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표 6> 최소분산 회귀분석모형에 의한 헤지비율 추정결과

구 분	내표본	외표본(1200)
헤지비율	0.963130	0.962024

(2) VECM모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를 위한 백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의 추정결과는 <표 7> VECM모형에 의한 추정헤지비율과 같다. VECM모형에 의한 경우도 최소분산헤지에서와 같이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가격 지수로 헤지비율을 추정하였다. VECM에 의해 추정된 헤지비율은 일간 헤지비율은 내표본은 1.006392이고, 외표본은 1.006331로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표 7> VECM모형에 의한 추정헤지 비율

구 분	내표본	외표본
헤지비율	1.006392	1.006331

(3) 이변량 GARCH모형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를 위한 이변량 GARCH모형은 공적분관계식을 오차수정항으로 포함시킨 이변량 AR(1) - GARCH(1, 1)-M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들은 <표 8> GARCH(1,1)모형에 의한 추정헤지 비율과 같다. 이 헤지비율은 이변량 GARCH(1,1)-M 모형에 의한 헤지비율로 헤지기간동안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게 된다. 이변량 GARCH모형에 의해 추정된 헤지비율은 일간 헤지비율은 내표본은 0.963087이고, 외표본은 0.962007로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이변량 GARCH모형에 의한 추정헤지비율은 최종기준일의 헤지 비율과 매일 매일의 이변량 GARCH모형에 의한 추정헤지비율을 평균한 값 역시도 큰 차이를 보고 있지 않는다. 이변량 AR(1) - GARCH(1,1) - M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결과는 최소분산 헤지모형에 의해 추정된 헤지비율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표 8> GARCH(1,1) 모형에 의한 추정헤지 비율

구 분	내표본	외표본
헤지비율	0.963087	0.962007

5. 헤지비율과 헤지성과결과 비교 분석

(1) 헤지비율 추정결과

헤지모형별로 추정된 추정헤지비율에 대한 비교는 <표 9> 추정헤지비율 비교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VECM모형에 의한 추정헤지비율은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GARCH(1,1) - M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결과와 최소분산 헤지모형에 의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모형별로 추정된 추정헤지비율은 모두 1에 가까운 값으로 내포본와 외포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추정헤지비율 비교

구 분	OLS	VECM	GARCH
내표본	0.963130	1.006392	0.963087
외포본	0.962024	1.006331	0.962007

(2) 헤지성과분석

수출입 기업들의 원달러 현물에 원달러 선물을 이용한 헤지의 헤지성과결과분석은 $1 - \frac{\text{헤지포지션분산}}{\text{무헤지포지션분산}}$ 인 분산의 감소비율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표 10> 헤지성과 비교

구 분	OLS	VECM	GARCH
내표본	0.968471	0.968230	0.968469
외포본	0.968427	0.968242	0.968427

원달러 현물에 원달러 선물을 이용한 헤지 성과결과 분석 방법은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헤지성과 비교 결과는 <표 10> 헤지성과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간의 경우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OLS모형, VECM모형과 GARCH모형이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모형을 사용하여도 달러의 가치변화에 따른 무역대금의 위험을 96%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출입 기업들의 원달러 현물에 대한 변동 위험을 원달러 선물을 이용한 헤지를 할 경우 원달러 현물의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이변량 GARCH(1,1)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일간으로 추정하고, 이 헤지비율로 헤지한 경우의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원달러 현물에 대한 변동 위험을 원달러 선물을 사용하여 헤지를 할 경우 원달러 현물의 헤지비율을 구하는 방법 중 최소분산헤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헤지비율은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두 시계열자료의 불안정성과 헤지기간에 관계없이 헤지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인하여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시계열자료의 특성과 시계열자료의 불안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였으며, 헤지기간에 관계없이 헤지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변량 GARCH(1,1)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2015년 1월 19일 까지 1,256개의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일간자료를 사용하였다. 헤지성과는 분산의 감소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분석기간 중 원달러 현선물간의 상관관계는 0.998072로 큰 정(+)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헤지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분석기간 중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 모두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기간 중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분석기간 중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 자료의 현선물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분석기간 중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한 결과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여섯째, 분석기간 중 헤지성과의 경우에도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한 결과 큰 차이 없이 나타나 어느 모형을 사용하여도 달러의 가치변화에 따른 무역대금의 위험을 96%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관리 담당자들이 원달러 선물을 이용하여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통계적인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VECM과 이분산 GARCH(1,1)모형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분석모형전통적인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이 달러의 가치변화에 따른 무역대금의 위험을 96%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무역대금을 달러로 결제 할 경우 원달러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를 한다면 무역대금결제의 위험을 96%이상 거의 없앨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에 추가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일간 자료를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 및 헤지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원달러 현물로 무역하는

기업의 경우에 데이터의 문제상 일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향후 자료가 확보되면 격주별, 월별로도 헤지비율 추정 및 헤지성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 거래수수료, 세금 등이 없고 만기이전(roll over)가 자유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충격비용, 거래수수료, 세금 등이 있고, 만기이전(roll over)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가정들을 완화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수출기업들의 원달러 현물 환율과 원달러 선물 환율의 헤지비율과 헤지성과에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수종, “KOSPI200 선물의 최적헷지비율 및 헷지효과 분석”, 『선물연구』 제25권, 한국선물학회, 1997.

김동수, 설윤, “기업자료를 이용한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국제경제학회, 2013.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2판, 경문사, 2002.

김재두, 박영준, “환변동보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김정렬, “무역보험지원이 수출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김희국, “단기수출보험의 위험도분류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문규현, 홍정효,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상호의존성”, 『재무관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재무관리학회, 2003.

송정석, “환변동보험 가입목적의 실증분석을 통한 환리스크관리 행태의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옥기율, 최적헤지비율의 시간변동성에 관한 연구: 국내원달러 선물시장을 대상으로“, 『선물연구』 제5권, 한국선물학회, 1997.

이상호, 최용재, “환위험이 수출과 채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6권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이서영・서민교, “무역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유가와 금융위험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이재하・장광열, “KOSPI200 선물을 이용한 헤지전략”, 『증권학회지』 제28권. 한국증권학회, 2001.

이재화, “환율과환율변동성이환변동보험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무역보험연구』제15권 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이홍재 외, “EViews를 이용한 금융경제 시계열 분석”, 경문사, 2005.

정진호・임병진・원종현,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채선물을 이용한 적정헤지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30집, 한국증권학회, 2002.

정진호・임병진・원종현, “국채선물을 이용한 헤지모형의 효과비교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재무학회, 2002.

정한규, “KOSPI200 현·선물간 최적헤지비율의 추정”, 『재무관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1999.

정한규·임병진, “Error Correction Model에 의한 현·선물간 헤징”, 『산업경제연구』 제11권 제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1998.

홍정효·문규현, “선물환시장을 이용한 환위험관리-이변량 ECT-ARCH(1) 모형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금융학회, 2003.

홍정효, “일본 엔화시장의 환위험관리”, 『대한경영학회지』 제19권제3호, 대한경영학회, 2007.

홍정효·문규현, “개별주식선물시장의 헤지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태적 헤지모형 vs 동태적 헤지모형”, 『재무관리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무관리학회, 2010.

Andersen, T. G. and Bollerslev, T., "Answering the sceptics: yes standard volatility models do provide accurate forecas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9*, 1998.

Bollerslev, T., R. F. Engle and J. M. Wooldridge, "A Capital Asset Pricing Model with Time-Varying Covaria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1)*, 1988.

Cecchetti, S. G., R. E. Cumby and S. Figlewski., "Estimation of the Optimal Futures Hedg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 1988.

Chou, S. Y., C. C. Lin, P. H. Chou and D. Y. Hwang., "Hedging with the Nikkei index Futures: the Conventional Model versus the Error Correction Model",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36(4)*, 1996.

Crain, S., and J. Lee, *Hedging in Interest Rate Markets: Options on Futures versus Futures*, Proceeding of the 1997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1997.

Dickey, D., and Fuller, W., "The Likelihood Ratio Statistic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Econometrica 49*, 1981.

Engle, R., and Granger, C.,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 1987.

Figlewski, S., "Hedging Performance and Basis Risk in Stock Index Futures", *Journal of Finance 39*, 1984.

Figlewski, S., "Hedging With Stock Index Futures: Theory and Applications in a New Market", *Journal of Futures Markets 5*, 1985.

Ghosh, A., "Hedging with Stock Index futures: Estimation and Forecasting with Error

Correction Model", *Journal of Futures Markets 13*, 1993.

Ghosh, A., and R. Clayton., "Hedging with International Stock Index Futures: An Intermporal Error Correction Model",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19*, 1996.

Granger, C., "Some Properties of Time Series Data and Their Use in Econo-metric Model Specific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16*, 1981.

Johansen, S.,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1988.

Kroner, K. F., and J Sultan, "Time-Varying Distributions and Dynamic Hedging Currency Futur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8(4)*, 1993.

Lien, D., Y. K. Tse, "Fractional Cointegration and Futures Hedging", *Journal of Futures Markets 19(4)*, 1999.

Lindahl, M., "Minimum Variance Hedge Ratios for Stock Index Futures: Duration and Expiration Effects", *Journal of Futures Markets 12*, 1992.

Mah, J.,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The experience of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17*. 2006.

Maddala, G. S and In-Moo Kim., (1998),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Structural Chan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1998.

Myers, R., "Estimating Time-Varying Optimal Hedgd Ratio on Futures Markets", *Journal of Futures Markets 11(1)*, 1991.

Myers, R., "Estimating Time-Varying Optimal Hedgd Ratio on Futures Markets", *Journal of Futures Markets 20(1)*, 2000.

Peters, E., *Hedged Equity Portfolios: Components of Risk and Return*, Advances in Futures and Options Research, 1986.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Trading Price Fluctuation of Foreign Exchange to Risk Management by Dollar Currency Futures

Yim, Byungjin

This study investigates hedging performance of us dollar futures with respect to us dollar by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hedging models to risk management in the trading price fluctuation of foreign exchange. Daily hedging performance is evaluated.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January 4, 2010 to January 19, 2015.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unit roots are found in us dollar futures and us dollar. There exists at least one cointegrating relationship among them. Secondly, we can not find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hedge ratios estimated from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models. Thirdly,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dging performance among various models. Finally, overall hedging performance and hedge ratios estimated from VECM, Bivariate GARCH(1,1)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Keywords : us dollar, us dollar futures, risk management, hedging models, hedging performance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87~115.

논문접수일 : 2015.06.03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선 혜** · 박 세 운***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을 제외한 74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치적 위험 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EIU가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지수와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1인당 GDP와 GDP 대비 고정자산 형성 변수가 FDI 유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자와 인터넷 사용자 변수도 FDI 유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위험변수는 예상한대로 FDI 유입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영리기관인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가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보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았다.

이것은 정치적 위험 지수에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하여 다국적 기업은 단기간에 개선시킬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정치적 위험, 해외직접투자, EIU 정치적 위험 지수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2학기 이선혜의 창원대학교 경영학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E-mail: sueleesh@naver.com
*** 교신저자,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mail: assw@changwon.ac.kr

Ⅰ. 서 론

FDI의 증가와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글로벌화의 가장 가시적인 표시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 기회와 저임금을 찾아 이머징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회 · 정치적 위험과 인프라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정치적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한 FDI를 주저하므로 정치적 위험이 개선되면 FDI가 증가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정치적 위험이 개선됨에 따라 FDI 유입이 증가한 사례로는 카메룬과 미얀마가 있다. 카메룬에서는 1992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소요사태로 정치적 위험이 급등하였으나 1998년 2대 직선제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FDI 유입이 1997년 78백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740백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미얀마는 군부독재로 FDI 유입은 많지 않았는데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치적 위험의 개선에 따라 2006년에 307백만 달러인 FDI 유입이 2013년 2620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정치적 위험이란 제도적인 자질의 저하나 정치적 불안의 결과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위험을 말한다(Helpman, Melitz & Yeaple 2004). Bekaert, Harvey, Lindblas and Siegel(2014)의 연구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선행연구도 있다. 예컨대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는 교섭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이 오히려 유리하여 FDI 유입을 촉진한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Jimenez 2010, 2011). 이와 같이 연구자 간에 실증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분석대상국가와 분석대상기간 및 통제변수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정치적 위험 변수로서 흔히 사용되는 상업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 지수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정치적 위험지수로 PRS 그룹이 제공하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와 Euromoney가 제공하는 지수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akaert, Harvey, Lindblas and Siegel(2014)은 이 지수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국가의 미국달러 부채와 동일한 만기의 미국 재무성채권의 수익률 차이로서 산정한 정치적 위험 지수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그들이 제안한 정치적 위험 지수를 분석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상업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 지수 중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와 비영리기관인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FDI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전성희(2011)의 연구가 있을 뿐인데, 그의 연구에서는 부패지수를 정치적 위험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공헌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PRS 그룹 또는 Euromoney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는 블룸버거를 통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업계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1997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학계에서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비영리기관인 Center for Systemic Peace에서 제공하는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정치적 위험 변수로 사용하여 EIU 정치적 위험 지수와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FDI가 다소 위축되었을 동안의 투자성향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분석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또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정치적 위험의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OECD 국가 중에서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개발도상국과 함께 분석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라고 하더라도 FDI가 정치적 위험에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을 제외한 OECED 국가 및 개발도상국 총 74개국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시장규모, 시장 개방, 인프라 구축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FDI유입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같은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Gustanaga, Negent and Pashamova(1998), Tuman and Emmert (1999), Stevens(2000), Wei(2000), Kolstad and Tondel(2002), Carstension and Toubal(2004), Busse and Hefeker(2006), Busse and Hefeker(2007), Keillor, Hauser and Griffin (2009), Ali, Fiess and MacDonald(2010), Clare and Gang(2010), Baek and Qian(2011), Duanmu(2012), Bilgili, Tuluce & Dogan(2012), Hayakawa, Kimura and Lee(2013), Bekaert, Harvey, Lindblas and Siegel(2014) 등이 있다.

반면,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Wheeler and Mody(1992), Loree and Guisinger(1995), Jaspersen et al.(2000), Hausmann and Fernandez-Arisa(2000), Noorbakhsh, Palony and Youssef(2001), Asiedu(2002), Campos and Nugent(2003), Ra and Qian(2014) 등이 있다. 심지어 Brouthers, Gao and McNicil (2008), Jimenez(2010, 2011), Jimenez, Palmero and Jimenez (2014) 등은 부패를 정치적 위험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위험이 FDI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정치적 위험 이외에 많은 다른 요인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 규모는 FDI 유입의 중요한 전통적 경제적 요인이고, 국내와 해외에서 신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국적 기업의 욕구에 부합한다. 시장규모는 일반적으로 GDP, 1인당 GDP, 중산층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Loree & Guisinger(1995), ODI(1997), Wei(2000), Alam & Shah(2013) 및 Goswami & Haider(2014)는 시장규모가 FDI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특히 전기, 수도, 운송 및 통신수단의 발전은 FDI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여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 잘 갖추어진 국가에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heeler & Mody 1992; Loree & Guisinger 1995, Chen 1996, Asiedu 2002)

시장 개방도와 FDI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Wheeler & Mody(1992)는 브라질과 멕시코는 시장 개방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대규모의 FDI 유입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Goswami &

Haider(2014)는 146개국을 분석한 결과 시장 개방도는 FDI 유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Sekkart & Veganzones-Varoudakis(2007)은 시장개방도가 FDI 유입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FDI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권철우·전봉휴(2010) 등의 연구가 있으나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전성희(2011)의 연구가 있을 뿐인데, 그의 연구에서는 부패지수를 정치적 위험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표2-1>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분석대상국가	분석대상기간	정치적 위험지수	영향력 방향
Wheeler and Mody(1992)	미국 제조기업	1982년 -1988년	정치적 변동성 관료의 질, 부패 등	무
Gustanaga, Negent and Pashamova (1998)	49개 저개발국	1970년 -1995년	부패, 관료의 지연 국유화의 위험	음
Tuman and Emmert(1999)	남미15개 국가	1979년 -1996년	혁명운동 사망자, 반정부폭동 발생건수	음
Stevens(2000)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1980년대	페소화 평가절하 채무위기	음
Wei(2000)	12개 투자국의 45개 투자대상국	1993년	IC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지수	음
Noorbakhsh, Paloni and Youssef(2001)	아프리카, 아시아와 남미의 개도국 36개국	1984년 -1994년	Euromoney 지수	무
Habib and Zurawiki(2002)	개도국, 선진국, 체제전환국 89개국	1996년 -1998년	부패	음
Asiedu(2002)	개도국과 sub-Saharan Africa	1998년 -1997년	정권 교체의 확률	무
Campos and Nugent(2003)	94개 개도국	1960년 -1995년	정치적 불안정	양
Busse and Hefeker (2006)	83개 개도국	1984년- 2003년	ICRG	음
Buckley, Clegg, Cross, Liu, Voss and Zheng(2007)	중국의 FDI	1984년- 2001년	ICRG	양

연구자	분석대상국가	분석대상기간	정치적 위험지수	영향력 방향
Campos and Kinishita(2008)	동유럽 25개국과 남미 19개국	1989년 -2004년	관료의 질, 법 준수	음
Du, Lu and Tao (2008)	미국 다국적 기업의 FDI	1993년 -2001년	정부의 간섭 지방정부의 부패	음
Keillor, Hauser and Griffin(2009)	미국의 FDI		Euromoney	음
Angelo, Eunni and Fouto(2010)	브라질에 대한 FDI 유입	2000년 6월 - 2007년 6월	환율변동	무
Arbatli (2011)	46개 개도국	1999년 -2009년	ICRG	음
Baek and Qian (2011)	94개 개도국과 22개 선진국	1984년 -2008년	ICRG	음
Jimenez (2010)	스페인 다국적기업의 FDI	2005년	부패지수	양
Alemu and Khan(2011)	41개 아프리카 국가	1994년 -2008년	사회적 취약성 지수	무
Duanmu (2012)	중국의 FDI	1999년 -2008년	ICRG	음
Hayakawa, Kimura and Lee(2013)	개도국과 선진국 89개국	1985년 -2007년	ICRG	음
Kerner(2012)	미국 다국적기업의 FDI	1997년 -2008년	민주화 정도	무
Goswami and Haider(2014)	146개국	1984년 -2009년	ICRG	음
Bekaert, Harvey, Lindblas and Siegel(2014)	20개 개도국	1994년 -2009년	국채의 수익률 차이	음
Jimenez, Palmero and Jimenez (2014)	중앙유럽과 동유럽국가	1999년 -2006년	부패인지지수	양
Goswami and Haider(2014)	개도국과 OECD국가 146개국	1984년 -2009년	ICRG	양
전성희(2011)	168개 개도국	2000년 -2009년	부패인지지수	음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구성 및 변수

(1) 자료의 구성 및 변수의 정의

분석대상기간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다. FDI 유입량은 UNCTAD의 74개국(개발도상국 60개국 포함) 자료를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FDI 유입량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FDI뿐만 아니라 광업(광물채굴)분야도 포함된다. 분석대상국가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는 정치적 위험이 적어서 정치적 위험의 정도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표3-3)에 나타나 있다. FDI는 OECD/IMF의 정의를 따른다(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하는 투자형태). 여기서의 10%라는 임계치는 다소 자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재적인 편이(bias)가 국가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면 추정계수의 수준과 유의성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Busse and Hefker 2007). FDI 유입에 대한 일부 관측치에서 특정한 몇 년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이것은 특정 연도에 대규모의 FDI 철수금액이 유입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음수에는 자연로그를 취할 수 없으므로 연도별로 정치적 위험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도별 FDI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킨다(Busse & Hefeker 2007).

$$y = \ln(x + \sqrt{(x^2+1)})$$

정치적 위험은 EIU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최저 0에서 최대 100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위험지수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어서 연도별 지수는 이것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Center for Systemic Peace에서 제공하는 민주화 정도 지수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state fragility index)도 사용하였다. 민주화 정도 지수는 완전히 민주화된 국가는 지수가 10, 완전히 전제화된 국가는 -10으로 표시된다.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안전,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을 종합한 것으로 최대 지수는 25로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제변수로서는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GDP와 인구,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수출입금액 비율은 모두 UNCTAD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제자유도는 Fraser Institute의 Economic Freedom of Worl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한다. 경제자유도의 값 중 0은 경제 자유도가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내고, 100은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낸다.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가 제공하는 고정자산형성금액과 100인당 인터넷사용자와 100인당 핸드폰사용자를 사용하였다. 고정자산형성금액에 대한 변수로는 고정자산형성금액/FDI유입과 고정자산형성금액/GDP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OECD국가가 FDI 유입이 많으므로 개발도상국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OECD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OECD국가에는 1을, 아니면 0의 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국가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세계은행의 초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연구대상 국가 중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1인당 FDI유입액은 최소값이 -1,211달러, 최대값이 11,532달러로 나타났다. 1인당 GDP는 최대값이 67,869달러, 최소값이 125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수출입금액은 최대 444.16%, 최소 15.42%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자유도 지수는 최대 8.88, 최소 2.00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완성도를 나타내는 FDI 유입 대비 고정자산 축적금액은 최대 117.38%, 최저 -25.88%, GDP 대비 고정자산 축적금액은 최대 46.54%, 최저 5.46%, 100인당 인터넷 사용자은 최대 88명, 최저 0명,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는 최대 180.70명, 최저 0명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위험지수는 최대 95.00, 최저 5.00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정도는 최대 10.00, 최저 -10.00, 사회적 취약성은 최대 21.00, 최저 0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5 이상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 변수인 수출입금액/GDP와 경제자유도는 상관계수가 0.40833으로 두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 모형에서 두 개의 변수 중 한 개의 변수만 포함시켰다. 정치적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은 상관계수가 0.70879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 모형에서 두 개의 변수 중 한 개의 변수만 사용하였다. 나머지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상관분석표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음)

<표3-1> 변수의 정의와 자료원

변수	정의	자료원	선행연구
1인당 FDI FDI/GDP	1인당 FDI 유입금액 FDI 유입액/GDP	UNCTAD(2014) UNCTAD(2014)	Busse and Hefeker(2006) Keillor, Hauser and Griffin (2009)
1인당 GDP	1인당 국내총생산	UNCTAD(2014)	Kerner and Lawence(2012)
무역 개방도	수출입금액/ GDP(%)	UNCTAD(2014)	Kerner and Lawence(2012) Hayakawa, Kimura and Lee(2013) Goswami and Haider(2014)
경제 자유도	경제자유도	Fraser Institute(2014)	Julio et al.(2013)
고정자산/ FDI	고정자산 형성 금액	World Bank(2014)	Kock and Ersoy(2009) Jimenez, Palmero and Jimenez(2014)
고정자산/ GDP	고정자산 형성 금액	World Bank(2014)	Kock and Ersoy(2009)
인터넷사용자	100인당 인터넷 사용자	World Bank(2014)	배연호(2011)
휴대폰 사용자	100인당 휴대폰 사용자	World Bank(2014)	Kock and Ersoy(2009) Goswami and Haider(2014) 배연호(2011)
인구		UNCTAD(2014)	Hayakawa Kimura and Lee (2013)
정치적 위험		EIU	Hayakawa, Kimura and Lee(2013)
민주화 정도	민주주의의 정도 - 전제주의의 정도	Center for Systemic Peace	Kerner and Lawence(2012) Kerner(2014)
사회적 취약성	안전,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을 종합	Center for Systemic Peace	Alemu and Khan(2011)
OECD 더미	OECD국가는 1, 아니면 0	OECD	

<표3-2> 기초통계량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종속변수				
1인당 FDI유입($)	318.16	11,532.41	-1,211.44	837.72
FDI/GDP(%)	3.67	29.42	-5.53	3.59
독립변수				
1인당 GDP($)	7,032.45	67,869.26	125.23	8,949.50
인구(만명)	6,129.15	137,707.00	59.74	19,756.77
무역개방도(%)	84.20	444.16	15.42	49.60
경제자유도	6.49	8.88	2.00	1.06
고정자산/FDI유입(%)	17.36	117.38	-25.88	16.06
고정자산/GDP(%)	21.54	46.54	-5.46	5.79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명)	18.86	88.00	0.00	21.36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명)	51.49	180.70	0.00	46.04
정치적 위험 지수	51.03	95.00	5.00	18.02
민주화 정도	4.96	10.00	-10.00	5.69
사회적 취약성	8.06	21.00	0.00	5.49

<표3-3> 분석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 60개국			OECD 14개국
Algeria	Guatemala	Panama	Australia
Argentina	Honduras	Papua	Chile
Bahrain	India	Paraguay	Czech
Bangladesh	Iran	Peru	Estonia
Bolivia	Jamaica	Philippines	Hungary
Botswana	Jordan	Romania	Israel
Brazil	Kenya	Russia	Korea
Bulgaria	Kuwait	Senegal	Mexico
Cameroon	Latvia	Singapore	New Zealand
China	Lithuania	South Africa	Poland
Colombia	Malawi	Sri Lanka	Portugal
Costarica	Malaysia	Syria	Slovakia
Cotedivoire	Mauritius	Thailand	Spain
Croatia	Morocco	Trinidadand Tobago	Turkey
Cyprus	Myanmar	Tunisia	
Dominican	Namibia	Uganda	
Ecuador	Nicaragua	Ukraine	
ElSalvador	Nigeria	Uruguay	
Gabon	Oman	Venezuela	
Ghana	Pakistan	Zambia	

2. 연구모형

FDI의 설명변수에 대하여 표준적 절차는 FDI 결정에 대한 공통적인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고, 그것에 정치적 위험 지수를 추가하여,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불행히도 그와 같은 이론 모형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자는 임시변통적인(ad hoc)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그들은 국가별로 FDI 유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결정요인으로서 시도하여, 그들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결국 그들의 연구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아래 방정식(1)은 FDI 유입에 미치는 정치적 위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기본 방정식이다:

$$FDI_{it} = \boldsymbol{X_{it}}\boldsymbol{\beta} + u_i + u_t + \epsilon_{it} \qquad \text{---------- (1)}$$

FDI_{it}가 i 국가의 t 기의 FDI 유입의 로그값으로, X는 정치적 위험을 포함하는 설명변수의 벡터이고 β는 추정될 계수의 벡터이며, u_i는 국가 더미, u_t는 시간더미, 그리고 ε_{it}는 오차항이다. 분석방법으로는 E-views 7.0으로 패널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패널회귀분석 방법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하였고, 이것이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Krishnakumar and Ronchetti, 2000). 패널자료 사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의 사용은 개별적인 변수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 패널자료는 개인, 기업, 국가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 또는 횡단면 자료는 이와 같은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편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패널자료는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적고, 자유도가 더 크고, 더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De Kock 2007).

셋째, 패널자료는 횡단면을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단기간의 시계열자료로 변화의 동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의 결합은 두 차원의 단일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료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다.(Gujarati 1992)

넷째, 패널자료는 순수한 횡단면 또는 시계열 자료에서는 탐색할 수 없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측정하는데 더 적절하다.

설명변수 X를 선택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많은 실증연구에서 FDI의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많은 변수를 제시하고 있고, FDI이론마다 서로 다

른 일련의 결정요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회귀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른 연구자들과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설명변수로서 정치적 위험 변수를 사용하고, 통제변수로는 1인당 GDP, 전체 인구, 무역자유화, 경제자유화, 인프라 구축 등을 사용한다. 정치적 위험 변수로는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 및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민주화 정도 또는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한다. 1인당 GDP의 로그값은 투자대상국의 소득과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높은 소득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의미하며 따라서 시장추구형 FDI를 유인한다. 반면에 이것은 높은 노동비용(임금율)을 나타내어 노동력 추구형 FDI를 억제시킨다. 그러므로 1인당 GDP가 FDI를 유인하는지 혹은 억제하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전체인구의 로그값은 현지국가의 시장규모를 알기 위한 것으로 외국기업이 현지시장을 위해 생산할 때(수평적, 시장추구형 FDI), 입지선정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예를 들어 Resmini(2000)는 많은 인구를 가진 중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더 많은 FDI를 유인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역 개방도는 FDI에 대한 무역규제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수출지향적인 기업 또는 수직적 FDI를 하려는 기업은 무역장벽이 거래비용을 높이므로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수평적 FDI를 하려는 기업은 높은 무역장벽을 오히려 선호한다. 왜냐하면 현지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생산물이 경쟁자의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를 1인당 FDI 유입금액 또는 FDI/GDP 비율을 사용하고, 변수간의 다중공선성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통제변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5개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모형1: 1인당 GDP, 총인구, 무역개방도, 인터넷, 휴대폰, OECD더미
모형2: 1인당 GDP, 총인구, 무역개방도, 고정자산/FDI, 인터넷, 휴대폰, OECD더미
모형3: 1인당 GDP, 총인구, 경제자유도, 고정자산/FDI, 인터넷, 휴대폰, OECD 더미
모형4: 1인당 GDP, 총인구, 무역개방도, 인터넷, 휴대폰, OECD더미
모형5: 1인당 GDP, 총인구, 무역개방도, 고정자산/GDP, 인터넷, 휴대폰, OECD더미

시계열자료를 분석할 때 시계열이 비정상성을 가지는 경우 각각의 시계열간에 회귀분석을 하면 실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성회귀”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패널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패널자료의 정상성 검정이 필요하다.

패널자료의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패널단위근검정)으로는 국가간 공통의 단위근을 갖는 경우의 검정(common unit root 검정)과 국가 간에 다른 단위근을 갖는 경우에 대한 검정(individual unit 검정)의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변수에 단위근이 있으면 가성회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수를 차분하여 단위근을 제거한 후 분석한다. 단위근 검정은 다음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 Levin, Lin and Chu t-stat: Levin, Lin and Chu (2002)
· Im, Pesaran and Shin W-stat: Im, Pesaran and Shin(2003)
· ADF - Fisher χ^2 : Maddala and Wu (1999)
· PP - Fisher χ^2 : Choi(2001)

Ⅳ. 실증분석결과

1. 패널단위근검정 결과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1인당 GDP, 인구, 인터넷 이용자 및 휴대폰 이용자는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즉 p-값이 거의 1에 근접하였다. 변수값을 1차 차분하면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차분한 값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출입금액/GDP와 EIU 정치적 위험 지수 및 사회적 취약성은 모형에 따라 귀무가설이 채택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이들 변수는 시계열의 성격상 단위근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수준변수를 그대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4-1>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pooled unit root test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통계량	p-값	통계량	p-값
1인당 FDI	Levin, Lin and Chu	-3.674	0.0001		
	Im, Pes, Shin	-2.14935	0.0158		
	ADF Fisher	229.268	0		
	PP Fisher	237.319	0		

변수	pooled unit root test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통계량	p-값	통계량	p-값
FDI/GDP	Levin, Lin and Chu	-12.701	0		
	Im,Pes, Shin	-11.8695	0		
	ADF Fisher	411.423	0		
	PP Fisher	433.969	0		
1인당 GDP	Levin, Lin and Chu	14.0354	1	-12.023	0
	Im,Pes, Shin	18.2642	1	-8.62995	0
	ADF Fisher	22.7114	1	304.888	0
	PP Fisher	11.3958	1	376.97	0
인구	Levin, Lin and Chu	1.46204	0.9281	-19.3314	0
	Im,Pes, Shin	15.5218	1	-14.4092	0
	ADF Fisher	288.899	0	438.707	0
	PP Fisher	349.808	0	106.351	0.8088
무역개방도	Levin, Lin and Chu	-3.99207	0		
	Im,Pes, Shin	-1.28603	0.0992		
	ADF Fisher	174.522	0.0673		
	PP Fisher	146.837	0.5116		
경제자유도	Levin, Lin and Chu	-21.9403	0		
	Im,Pes, Shin	-19.7561	0		
	Im,Pes, Shin	-19.7561	0		
	PP Fisher	897.973	0		
고정자산/FDI	Levin, Lin and Chu	-11.5779	0		
	Im,Pes, Shin	-10.7925	0		
	ADF Fisher	393.055	0		
	PP Fisher	454.55	0		
고정자산/GDP	Levin, Lin and Chu	-221.961	0		
	Im,Pes, Shin	-46.0372	0		
	ADF Fisher	252.831	0		
	PP Fisher	204.679	0.0014		
인터넷 사용자	Levin, Lin and Chu	12.0068	1	-5.72563	0
	Im,Pes, Shin	22.3663	1	-3.61305	0.0002
	ADF Fisher	71.7127	1	207.886	0
	PP Fisher	75.2141	1	225.003	0
휴대폰 사용자	Levin, Lin and Chu	3.84686	0.9999	-3.46821	0.0003
	Im,Pes, Shin	10.876	1	-2.04595	0.0204
	ADF Fisher	110.556	0.9907	164.509	0.0044
	PP Fisher	74.7944	1	155.272	0.0167
민주화 정도	Levin, Lin and Chu	-11.913	0		
	Im,Pes, Shin	-3.55859	0.0002		
	ADF Fisher	126.469	0.0002		
	PP Fisher	105.129	0.0151		

변수	pooled unit root test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통계량	p-값	통계량	p-값
사회적 취약성	Levin, Lin and Chu	-5.45164	0		
	Im,Pes, Shin	-0.30183	0.3814		
	ADF Fisher	160.927	0.1089		
	PP Fisher	175.967	0.0213		
정치적 위험	Levin, Lin and Chu	-3.81563	0.0001		
	Im,Pes, Shin	-1.25214	0.1053		
	ADF Fisher	181.153	0.0331		
	PP Fisher	160.197	0.2331		

2. 실증분석 결과

1) 1인당 FDI 유입 등식

(표4-2)와 (표4-3)은 1인당 FDI 유입을 종속변수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2)은 정치적 위험변수로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를 사용한 것이고, (표4-3)은 정치적 위험변수로 민주화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한 것이다.

모형1은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를 사용하였고, 인프라 변수로 인터넷과 휴대폰 소지자 변수만 사용하였다. 모형 2는 인프라 변수로 고정자산/FDI 유입을 추가한 것이 모형1과 다르다. 모형 3은 무역개방도 대신에 경제자유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모형 2와 다르다. 모형 4는 인프라 변수로서 고정자산/FDI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형 3과 다르다. 모형 5는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변수를 사용하고, 인프라변수에 고정자산/GDP변수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모형 4와 다르다.

(표4-2)의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는 1인당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모형에서 총인구의 증가율은 1인당 GDP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총인구 변수가 단위근이 있어 이것을 차분한 인구증가율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변수는 시장규모 및 노동인력의 증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시장규모 또는 노동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출생율이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형에서는 총인구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단정을 지울 수는 없다.

무역 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인프라 구축정도인 고정자산/FDI, 고정자산/GDP, 정보통신 수준을 나타내는 인터넷 및 휴대폰 보유자 숫자도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위험 변수도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한 대로 다국적 기업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더미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비OECD 국가에 비하여 OECD 국가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4-3)은 정치적 위험변수로서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정치적 위험변수로서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를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차이점은 인구변수가 1모형, 2모형, 5모형 등에서 1인당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화 정도는 1모형, 5모형에서는 1인당 FDI 유입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모형과 3모형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이 10%이므로 그 유의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변수인 사회적 취약성의 회귀계수는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를 사용하였을 때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FDI를 결정할 때 상업적 위험평가기관의 정치적 위험지수보다는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는 정치적인 면만 반영한 것으로 이것은 단기적으로도 변동이 되나,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사회구조적 측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FDI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FDI/GDP 등식

(표4-4)와 (표4-5)는 FDI/GDP 금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표4-4)은 정치적 위험변수로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를 사용한 것이고, (표4-5)은 정치적 위험변수로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사용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1인당 FDI금액을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은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를 사용하였고, 인프라 변수로 인터넷과 휴대폰 소지자 변수만 사용하였다. 모형 2는 인프라 변수로 고정자산/FDI 유입을

추가한 것이 모형1과 다르다. 모형 3은 무역개방도로 경제자유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모형 2와 다르다. 모형 4는 인프라 변수로서 고정자산/FDI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형 3과 다르다. 모형 5는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변수를 사용하고, 인프라변수에 고정자산/GDP변수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모형 4와 다르다.

(표4-4)는 정치적 위험변수로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표시한 것이고, (표4-5)는 정치적 위험변수로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표4-4)의 모든 모형에서 1인당 GDP는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모형에서 총인구의 증가율은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총인구 변수가 단위근이 있어 이것을 차분한 인구증가율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변수는 시장 규모 및 노동인력의 증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시장규모 또는 노동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출생율이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형에서는 총인구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어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역 개방도는 모형 2를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형 2에서는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왔으나 유의수준이 10%에 그쳐서 통계적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구축정도인 고정자산/FDI, 고정자산/GDP, 정보통신 수준을 나타내는 인터넷 및 휴대폰 보유자 숫자도 모든 모형에서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위험 변수도 모든 모형에서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한 대로 다국적 기업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더미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비OECD 국가가 비하여 OECD 국가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1은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를 사용하였고, 인프라 변수로 인터넷과 휴대폰 소지자 변수만 사용하였다. 모형 2는 인프라 변수로 고정자산/FDI 유입을 추가한 것이 모형1과 다르다. 모형 3은 무역개방도 대신에 경제자유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모형 2와 다르다. 모형 4는 인프라 변수로서 고정자산/FDI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모형 3과 다르다. 모형 5는 무역개방도로 수출입금액/GDP변수를

사용하고, 인프라 변수에 고정자산/GDP변수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모형 4와 다르다.

(표4-5)는 정치적 위험변수로서 민주화 정도와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정치적 위험변수로서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를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차이점은 인터넷 사용자 변수를 사용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 GDP 대비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비중이 휴대폰 사용자에 비하여 낮아서 휴대폰 사용자의 비율 여부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도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정도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인 사회적 취약성의 회귀계수가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크고, 통계적인 유의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FDI를 결정할 때 상업적 위험평가기관의 정치적 위험지수보다는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IU의 정치적 위험 지수는 정치적인 면만 반영한 것으로 이것은 단기적으로도 변동이 되나,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사회구조적 측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FDI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4-2> 1인당 FDI유입 분석결과 (독립변수: 정치적 위험)

모형	1	2	3	4	5
1인당 GDP	0.955002*** (2.15222)	0.876119** (2.294045)	0.739736** (1.955876)	0.626368* (1.389908)	0.887622** (1.993137)
인구	-17.83364*** (-4.054971)	-14.37908** (-3.794826)	-18.32048*** (-4.798657)	-21.10796*** (-4.643674)	-17.1294*** (-3.878871)
무역개방도	1.017896*** (8.689534)	0.087662* (0.787203)			0.997141*** (8.468281)
경제자유도			0.309505*** (5.231109)	0.486475*** (6.999016)	
고정자산 /FDI유입		0.63977*** (19.66704)	0.062872*** (21.38572)		
고정자산 /GDP					0.997141*** (8.468281)
인터넷	0.083297*** (4.669701)	0.066011*** (4.292855)	0.055905*** (3.649696)	0.07374*** (4.062259)	0.082631*** (4.634586)
휴대폰	0.028915*** (3.963511)	0.019141*** (3.039094)	0.01521** (2.426125)	0.024451*** (3.291147)	0.028282*** (0.0001)
정치적 위험	-0.028346*** (-7.436259)	-0.030831*** (-9.391033)	-0.023034*** (-6.65548)	-0.024562*** (-5.879503)	-0.027256*** (-7.046851)
OECD더미	0.734757*** (4.437633)	0.77713*** (5.452962)	0.721504*** (5.180093)	0.42807* (2.6022610)	0.72702*** (4.392336)
상수항	5.230936*** 18.4171	5.091974*** 20.82222	2.876317*** 5.889922	2.358491*** 3.747414	4.84602*** 13.10264
Adjusted R^2	0.321629	0.497534	0.509444	0.309247	0.322633
F-stat.	76.11396	138.2643	144.9622	63.06192	67.02781
표본 숫자	1,110	1,110	1,110	1,110	1,110
SE of regression	1.778159	1.530348	1.512103	1.794312	1.776841
SUM square resid	3484.357	2578.503	2517.386	3544.731	3476.039
MEAN-dependent var	5.028283	5.028283	5.028283	5.028283	5.028283
SD-dependent var	2.158921	2.158921	2.158921	2.158921	2.158921
D-W stat.	1.208881	1.293239	1.311443	1.189011	1.208054

주) ***, **, *는 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3> 1인당 FDI유입 분석결과 (독립변수: 사회적 취약성)

모형	1	2	3	4	5
1인당 GDP	1.352229*** (3.156218)	1.263471*** (3.495585)	1.174544*** (3.226314)	1.11238** (2.529216)	1.273246*** (2.961174)
인구	1.630539* (0.344728)	1.790423* (0.448712)	-1.982635* (-0.459605)	-1.570905* (-0.300814)	2.541278* (0.535112)
무역개방도	0.846997*** (7.299137)	-0.203811** (-1.856489)			0.825755*** (7.090947)
경제자유도			0.111839** (1.861211)	0.268756*** (3.738411)	
고정자산 /FDI유입		0.06613*** (21.14502)	0.062848*** (22.36061)		
고정자산 /GDP				0.022323** (2.289411)	0.018144** (1.886194)
인터넷	0.046711*** (2.635666)	0.020777* (1.385038)	0.020821* (1.388098)	0.040574** (2.252008)	0.046721*** (2.63926)
휴대폰	0.02078*** (2.938011)	0.01028** (1.716944)	0.009493* (1.580331)	0.018858*** (2.613719)	0.020105*** (2.842169)
민주화 정도	0.032211*** (2.955323)	-0.004861* (-0.519342)	-0.004686* (-0.501854)	0.013238* (1.166797)	0.034819*** (3.172801)
사회적 취약성	-0.14871*** (-10.84224)	-0.175016*** (-15.03933)	-0.153937*** (-12.53034)	-0.156283*** (-10.45853)	-0.144678*** (-10.43426)
OECD더미	0.47447*** (3.03342)	0.584111*** (4.423353)	0.603557*** (4.595503)	0.279467** (1.773677)	0.450157*** (2.871566)
상수항	4.865124*** (20.89957)	5.12116*** (26.02884)	4.159277*** (9.718025)	3.61184*** (6.510557)	4.448967*** (13.87981)
Adjusted R^2	0.37194	0.553042	0.553049	0.352974	0.373396
F-stat.	83.09439	153.4687	153.473	68.22177	74.42857
표본 숫자	1,110	1,110	1,110	1,110	1,110
SE of regression	1.71095	1.443345	1.443333	1.736591	1.708966
SUM square resid	3223.012	2291.568	2291.532	3317.324	3212.621
MEAN-dependent var	5.028283	5.028283	5.028283	5.028283	5.028283
SD-dependent var	2.158921	2.158921	2.158921	2.158921	2.158921
D-W stat.	1.260495	1.377178	1.378044	1.2252	1.261367

주) ***, **, *는 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4-4> GDP 대비 FDI유입 분석결과(독립변수: 정치적 위험)

모형	1	2	3	4	5
1인당GDP	0.322911* (1.683397)	0.268262*** (2.424742)	0.248871** (2.249645)	0.182792* (0.908569)	0.286775* (1.490568)
총인구	-8.989741*** (-4.728417)	-6.596482*** (-6.009524)	-7.368442*** (-6.598335)	-9.416211*** (-4.640205)	-8.612057*** (-4.514101)
무역개방도	0.592991*** (11.71013)	-0.051458* (-1.59512)			0.581859*** (11.43821)
경제자유도			0.048115*** (2.780248)	0.170538*** (5.495957)	
고정자산 /FDI유입		0.044322*** (47.03294)	0.043343*** (50.40321)		
고정자산 /GDP				0.013552*** (3.025855)	0.008698** (2.014924)
인터넷	0.015837** (2.05381)	0.003862* (0.866948)	0.002006* (0.447615)	0.014442** (1.782158)	0.01548** (2.009761)
휴대폰	0.013499*** (4.280273)	0.006727*** (3.68722)	0.006051*** (3.299777)	0.012545*** (3.782264)	0.013159*** (4.172414)
정치적 위험	-0.000854* (-0.518171)	-0.002576** (-2.708168)	-0.000684** (-0.675541)	-0.00197* (-1.056525)	-0.000269* (-0.16111)
OECD더미	0.035968* (0.502507)	0.065323* (1.582247)	0.069666* (1.710005)	-0.132208** (-1.80027)	0.031818* (0.444966)
상수항	1.204787*** (9.812347)	1.108517*** (15.64768)	0.689293*** (4.825612)	0.404892* (1.441059)	0.998356*** (6.248277)
Adjusted R^2	0.193322	0.731683	0.732938	0.123996	0.195556
F-stat.	38.96776	379.0221	381.4498	20.622	34.69895
표본 숫자	1,110	1,110	1,110	1,110	1,110
SE of regression	0.768687	0.443326	0.442288	0.801037	0.767622
SUM-square resid	651.1497	216.3884	215.3764	706.468	648.7574
MEAN-dependent var	1.703697	1.703697	1.703697	1.703697	1.703697
SD-dependent var	0.855854	0.855854	0.855854	0.855854	0.855854
D-W stat.	0.827879	1.029151	1.020421	0.770381	0.827204

주) ***, **, *는 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의 숫자는 t-통계량임.

<표 4-5> GDP 대비 FDI 유입 분석결과 (독립변수: 사회적 취약성)

모형	1	2	3	4	5
1인당 GDP	0.381268** (2.007915)	0.321417*** (2.940545)	0.3122*** (2.823531)	0.272819* (1.353118)	0.334117** (1.755585)
인구	-4.278209** (-2.040825)	-4.170398*** (-3.456154)	-4.706825*** (-3.592465)	-4.472732** (-1.868315)	-3.734524** (-1.776639)
무역개방도	0.605062*** (11.7649)	-0.103507*** (-3.117747)			0.592381*** 11.49279
경제자유도			0.00735* (0.402715)	0.115649*** (3.509143)	
고정자산 /FDI유입		0.044592*** (47.14887)	0.043214*** (50.6221)		
고정자산 /GDP				0.014523*** (3.249135)	0.010832** (2.543962)
인터넷	0.01481** (1.885523)	-0.002677** (-0.590201)	-0.002028* (-0.445092)	0.011546* (1.397878)	0.014816** (1.890923)
휴대폰	0.012429*** (3.964907)	0.005348*** (2.953882)	0.005357*** (0.0034)	0.011825*** (3.575106)	0.012026*** (3.840873)
민주화 정도	0.025372*** (5.252238)	0.000373* (0.131888)	0.002135* (0.752846)	0.014312*** (2.751707)	0.026928*** (5.54381)
사회적 취약성	-0.00461* (-0.758303)	-0.022348*** (-6.350335)	-0.016871*** (-4.521452)	-0.018673*** (-2.725804)	-0.002203* (-0.358898)
OECD더미	-0.065545* (-0.945505)	0.008387* (0.210022)	0.021332* (0.534779)	-0.200602** (-2.777209)	-0.080059* (-1.153818)
상수항	1.021211*** (9.898232)	1.193859*** (20.0652)	1.033081*** (7.947242)	0.674146*** (2.650775)	0.772778*** (5.446912)
Adjusted R^2	0.214984	0.739904	0.737645	0.134757	0.218867
F-stat.	38.96386	351.5351	347.4546	20.19117	35.52576
표본 숫자	1,110	1,110	1,110	1,110	1,110
SE of regression	0.758296	0.436482	0.438374	0.796102	0.756419
SUM square resid	633.0888	209.5679	211.3887	697.156	629.3859
MEAN-dependent var	1.703697	1.703697	1.703697	1.703697	1.703697
SD-dependent var	0.855854	0.855854	0.855854	0.855854	0.855854
D-W stat.	0.850164	1.046833	1.029851	0.775517	0.851051

주) ***, **, *는 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의 숫자는 t-통계량임.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이 아닌 74개국(개발도상국 60개국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적 위험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FDI 유입금액과 GDP 대비 FDI 유입금액을 각각 사용하였다. 정치적 위험변수로는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와 민주화 정도 및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1인당 GDP, 인구를 사용하였고, 경제개방도로는 무역개방도 또는 경제자유도를, 인프라 구축정도는 FDI 유입금액과 GDP 대비 고정자산 형성 금액과 100인당 인터넷, 또는 휴대폰 사용자 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패널 단위근 분석을 한 후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인당 GDP, 인구,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자는 차분하여 단위근을 제거한 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GDP, 인프라 구축 정도를 나타내는 FDI 또는 GDP 대비 고정자산 형성금액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FDI 유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수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모형에서 FDI 유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다. 이것은 인구가 많으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나, 소득이 낮은 후진국에서 비교적 인구증가율이 높으므로 인구보다는 1인당 GDP가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프라 구축정도를 나타내는 FDI 또는 GDP 대비 고정자산 형성 및 인터넷 또는 휴대폰 사용자 숫자는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 및 휴대폰과 같은 IT 정보통신의 발전이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험변수인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와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FDI 유입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적 기관인 EIU의 정치적 위험지수보다 비영리기관인 Center for Systemic Peace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적이고 회귀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위험지수는 주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다루는 비중이 크고, 교섭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에 반하여, 사회적 구조 및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회적 취약성에 비하여 개선이 단기간에 될 수 있어서 다국적 기업이 정치적

위험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는 FDI를 유치하여 자국의 기술력 증진과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DI 유출에 비하여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다국적 기업의 국내 FDI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EIU 정치적 위험 지수는 조사대상국 74개국 중 22위,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6위로 정치적 위험 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FDI를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로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사회적 취약성이 낮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권철우·전봉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여건",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제24권 제4호, 2010, 141-167.

전성희, "개발도상국의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 6권 제 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63-87.

배연호, "정보통신기술과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7권 제3호: 국제경제학회, 2011, 25-63.

Alemu, A.M. and Khan, H.U., "State Fragility and FDI Inflow in Africa",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64, 2011, 147-160.

Ali, F. A., Fiess, N. and McDonald, R., "Do Institutions Matter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Open Economic Review*, 21(2), 2010, 201-219.

Angelo, C. F. de, E., Rangamohan V. and Fouto, N. M. M. D., "Determinants of FDI in Emerging Markets: Evidence from Brazil",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erce and Management,* 20(3), 2010, 203-216.

Arbatli, E., "Economic Polic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11/192, 2011.

Asiedu, E.,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30(1), 2002,107-119.

Baek, K. and Qian, X., "An Analysis on Political Risks and the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Economies", *Economics, Management, and Financial Markets,* 6 (4), 2011,60-91.

Bekaert, G., Harvey, C. R., Lundblad, C. and Siegel, S., "Political Risk Spread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5(4), 2014,471-493.

Bilgili, F., Tuluce, N.S.H. and Dogan, I., "The Determinants of FDI in Turkey: A Markov Regime-switching Approach", *Economic Modeling,* 29, 2012, 1161-1169.

Brouthers, L.E., Gao, Y. and McNicil, J.P., "Corruption and Market Attractiveness Influence on Different Types of FDI",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9, 2008, 673-680.

Buckley, P., Clegg, J., Cross, A., Liu, X., Voss, H. and Zheng, P.,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2007, 499-518.

Busse, M. and Hefeker, C., "Political Risk,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3, 2006, 397-415.

Campos, N. F. and Kinoshita, Y., "Why Does FDI Go Where It Goes? New Evidence from the Transition Economies", *IMF Working Paper* 03-228. 2003.

Carstensen, K. and Toubal, 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 Dynamic Panel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 2004, 3-22.

Chen, C.H., "Reg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inland China",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3(2), 1996, 18-30.

Clare, G. and Gang, I. N., "Exchange Rate and Political Risks, Again",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46(3), 2010, 46-58.

De Kock, S., "Panel Data Econometrics for the Practitioner",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Pretoria, Pretoria, 2007.

Du, J., Lu, Y. and Tao, Z., "Economic Institutions and FDI Location Choice: Evidence from US Multinational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6, 2008, 412-429.

Duanmu, J-L ,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Choice of Chin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World Business*, 47, 2012, 64-72.

Goswami, G.G. and Haider, S , "Does Political Risk Deter FDI Inflow?",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41(2), 2014, 233-252.

Gujarati, D.N. , "Essentials of Econometrics", McGraw-Hill, New York.1992

Gustanaga, V.M., Negent, J.B. and Pashamova, B., "Host Country Reforms and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7), 1998, 299-1,314.

Habib, M., and Zurawicki, L. ,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2), 2002, 291–307.

Hausmann, R. and Fernandez- Arisa, E., "Foreign Direct Investment: Good Cholesterol?", *IDB Working Paper* 348, 2000.

Hayakawa, K., Kimura, F., and Lee, HH. , "How Does Country Risk Matter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Developing Economies*, 51(1),2013, 60-78.

Helpman, E, M. and Yeaple, S. R. ,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94(1), 2004, 300-316.

Japersen, F.Z. Aylward, A.H. and Knox, A.D., "The Effects of Risk on Private Investment: Africa Compared with Other Developing Areas, in Investment in Risk in Africa", edited by Collier, P. and Pattillo, C.,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Jimenez, A. , "Does Political Risk Affect the Scope of the Expansion Abroad? Evidence from Spanish MN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6), 2010, 619-633.

Jimenez, A. , "Political Risk as a Determinant of Southern European FDI in Neighboring Developing Countries",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47(4), 2011, 59-74.

Jimenez, A, Palmero, C and Jimenez, J.A.,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from the South to the East of the EU: Dissecting the Different Effects of Psychic Distance Stimuli",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8(3), 2014, 331-353.

Keillor, B., Hauser, W., and Griffin, A. ,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isk, National Cultur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Market Entry Strategy: Perspectives from U.S. Firms", *Innovative Marketing*, 5(1), 2009, 48-54.

Kerner, A. and Lawrence, J., "What's the Risk?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olitical Risk and Fixed Capital Accumul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2012, 107-121.

Kolstad, I. and Tondel, L., "Social Develop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CMI Report R. 2002:11, Chr. Michelsen Institute, 2002.

Krishmakumar, J. and Ronchetti, E., "Panel Data Econometrics: Future directions", North-Holland, Amsterdam, 2000.

Levin, A., Lin. C.F. and Chu, C., "Unit Root Tests on Panel Data: Asymptotic and Finite-sample Properties", *Journal of Econometrics,* 108, 2002,1-24.

Loree, D. W., and Guisinger, S. E. ,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Equity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2), 1995, 281–299.

Maddlala, G.S. and Wu, S. , "A Comparative Study of Unit Root Tests with Panel Data and a New Simple Tes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 1999, 631-652.

ODI , "FDI Flows to Low-income Countries: A Review of the Evidenc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1997.

Ra, W. and Qian, C. , "Location Differences Privatized State-associated Enterprises and Privately Owned Enterprises from China i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5(1), 2014, 143-177.

Resmini, L.,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EECs: New Evidence from Sectoral Patterns", *Economics of transition,* 8(3), 2000, 665-689.

Sekkat, K and Veganzones-Varoudakis, M. , "Openness, Investment Climate, and FDI in Developing Countrie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1(4), 2007, 607-620.

Stevens, G. V. G. , "Politics, Economics and Investment: Explaining Plant and Equipment Spending by US Direct Investors in Argentina, Brazil and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9, 2000, 153-183.

Tuman, J.P and Emmert, C.F.,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 Reappraisal",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9(3), 2004, 9-28.

Wei, S.-J. ,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2000, 1–11.

Wheeler, D. and Mody, A. ,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1/2), 1992, 57-76.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Political Risk on the FDI Inflow

Lee, Sunhae · Park, Sae Woo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olitical risk on FDI inflow using panel data of 74 nations excluding most advanced countries from 1997 to 2012. As political risk variable, it employs political risk index provided b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and state fragility index by Center for Systemic Peace,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GDP per capita and fixed asset per GDP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FDI inflow as expected. Mobile phone users and internet users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FDI inflow too. Political risk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FDI inflow. In particular, state fragility index proves to have more significant and bigger coefficients than political risk index from EIU.

This may be because country risk puts more weight on economic variables in its combination while state fragility is more focused on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elements.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y think that economic conditions can be improved in a relatively shorter period than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Keywords : political risk, FDI, EIU political risk index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117~151.

논문접수일 : 2015.06.07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자연자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김 미 정* · 최 대 석**

Ⅰ. 서 론
Ⅱ. GATT/WTO 체제하 협력의 역사적 발전
Ⅲ. 자연자원 무역의 특성과 WTO 규칙
Ⅳ. 자연자원 무역의 국제적 협력
Ⅴ. 결 론

국문요약

자연자원은 대부분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 투입재이면서 잠재적 유한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상충욕구의 균형문제가 있으므로 자연자원 추출과 이용은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자원이 국제무역에 관련된 GATT 혹은 WTO 협정에 포함된 의무에 규제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자연자원에 무역과 관련된 서비스는 GATS의 규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자연자원은 관련된 독특한 특성으로 자원 무역에 있어서 국제적 갈등의 잠재적 원천이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WTO 체제내의 협력과 규제문제를 살펴보고 자연자원의 무역활성화 및 질서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이익과 정책적 신뢰성을 다루었다.

주제어 : WTO, 원자재, 자연자원 무역규제, 자연자원 무역협력.

* 주저자,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mail: mjpower9@dongguk.ac.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mail: cds@dongguk.ac.kr

Ⅰ. 서 론

자연자원은 일반 상품과 다른 많은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서 무역의 형태와 무역 규제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자연자원은 상당 부분이 생산과정의 필수적 투입재이면서 실제적으로 잠재적 유한성을 갖는 특성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상충욕구의 균형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자원 추출과 이용은 신중히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연자원이 국제교역의 대상이 되면 재화무역에 관련된 GATT 혹은 기타 WTO 협정에 포함된 의무에 의해 규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추출된 석탄, 석유, 채벌된 목재 혹은 포획된 해양생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GATT/WTO 규칙이 재화로써의 자연자원을 규제범위에 두고 있지만 추출 혹은 채취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규제범위에 두지 않는다는 독특한 면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WTO규칙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규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성이 있다. 예컨대 US-Softwood Lumber Ⅳ[1] 분쟁에서 적정보상(adequate remuneration)이하로 목재의 채벌권을 지방정부가 부여한 것이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SCM Agreement) 의미 내에서 보조금으로 고려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의 하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SCM 협정의 Article 1.1[2]에서 사용된 재화가 토지에 부착된 입목 상태이지만 가분 가능(severable)하고 자연 그대로 교역대상이 될 수 없는 채벌되기 전의 입목을 포함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었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Article 1.1의 재화의 범주에서 자연 그대로는 교역 불가능하고 관세 분류 대상이 아닌 입목상태의 유형품목일지라도 제외할 근거가 없음을 결정하였다.

한편 상품분류 측면에서 보면 HS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이 개발한 WTO회원국이 약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국제상품분류 체계인데, 이 체계의 6단위의 2201은 다음과 같은 상품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Waters, including natural or artificial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그리고 “snow”와“ice”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역규칙에 지표수 혹은 지하수가 포함된다

1) Canada로부터 수입되는 침엽수목재에 대해 미국의 최종적인 상계관세 결정으로 인한 사건.
2) SCM, 1.1, (a)(1), (iii)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으로 규정된 “goods″를 말한다.

는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HS 4단위 2201 은 2단위(chapter) 22의 “Beverage”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Water”는 소비목적의 경우에만 이 범주에 속하고, 지하수나 지표수의 산적 이전(bulk transfer)은 농업 혹은 산업 목적에 이용되기 때문에 “Beverage”에 포함될 수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NAFTA의 당사국들은 1993년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NAFTA는 협정당사국의 천연수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공표의 준거상의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천연수가 자연 상태에서 이탈되어 판매상품 즉, 용기 저장수(bottled water)와 같은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는 NAFTA의 목적상으로 상품이 아니라는 견해이다.[3)]

자연자원과 관련된 석유수출국 기구인 OPEC은 종종 생산제한을 적용해오면서 그러한 행위가 양적제한 금지의 GATT규정에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Oil”은 추출될 때까지는 WTO규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이 채광, 천공, 생산될 때까지는 처리에 주권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르지만 이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생산영향조치와 무역영향조치의 구별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4)]

나아가서 자연자원에 관련된 서비스가 무역과 관련이 있을 때는 GATS의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당국의 실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외될 뿐이다. 자연자원에는 여러 방면에서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자연자원의 관리, 보호, 탐사, 추출, 기술적 검사, 수송, 중개, 상업화 등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외 여러 서비스들이 천연자원과 직접관계가 있다.[5)]

GATS규정은 천연자원에 명시적 지적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의무의 준수는 상당부문이 해당부문의 GATS 국별 약속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WTO체제는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자연자원에 관련된 무역문제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국제적 갈등의 잠재적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자연자원의 무역활성화 및 질서에 있어서 WTO 체제내의 협력과 규제문제를 살펴보고, 자연자원무역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적 협력의 이익과 정책적 신뢰성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

3) WTO(2010), World Trade Report, p.162.

4) Crosby, Import, export and production restrictions on energy goods and services, Geneva. 2009.

5) 예컨대 채광부수서비스, 연료관 수송, 수렵 및 어업 부수 서비스, 어획부수서비스, 기타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이 관련 된다.

Ⅱ. GATT/WTO 체제하 협력의 역사적 발전

1. 제1차 자연자원 협력

GATT/WTO체제 내에서 자연자원 역사는 점진적 시장개방의 역사적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광물 및 금속에서 연료와 목재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원자재는 대부분의 주요시장에서 보호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자원 관련 문제는 WTO 회원국 간에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며, 오랜 문제 중의 하나가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들 상품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공급불안전성, 시장불안정성, 가격가변성, 가공자원의 지속적 장벽 등은 이들 국가의 성장과 발전 전망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간 여러 국제상품 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 ICAs)의 규정, 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한 것에 관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협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계속되는 무역협상라운드에서 관세경사(tariff escalation)를 해결하려는 반복적인 노력 등을 꾸준히 해 왔다.[6]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일차산품수출국이 직면한 특별한 어려움과 무역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차 산품 수출의존에 관한 관심, 시장불안정성의 네거티브 효과 및 가격하락의 우려는 다자체제 창설 이전부터 있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기간 동안의 극적하락은 정책결정자에게 상품무역의 협력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였다. 그 결과 생산 및 판매량을 관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을 둔 일련의 ICAs가 협상되었다.[7]

이런 상품협정들은 Havana[8]헌장의 초안에 포함되었고 GATT로 이어졌다. 헌장 6조에 ICAs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가격안정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ICA나 소비확대, 부담스런 잉여의 구제를 위한 ICAs를 수용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9] 그

---

6) 관세경사는 원자재에 가까울수록 관세율을 낮추어 최종재의 명목관세 보호효과 보다 실효보호 효과를 높이는 관세구조를 말한다.

7) 제2차 대전 이전의 일차산품은 주로 농산물이었으며 상품가격 하락과 가변성에 따른 문제가 관심 사항이었다. 또한 당시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및 당시 식민 상태인 개발도상국 양자가 동시에 겪는 문제였다. 일련의 상품협력은 주로 완충재고의 창설, 장기구매보증, 양적 및 수출상의 제한제도 등이었다.

8) Havana Chapter는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창설을 위한 헌장으로 1948년 3월 24일 57개국이 조인하였으나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유산되었다.

러나 Havana헌장의 실패로[10] 이를 대신한 GATT가 국제가격의 추세와 전개에 관한 연간 검토업무와 국제상품 협정의 보증을 떠맡게 되었다.

그 후 1956년에는 GATT자체에서 Part Ⅳ, Trade and Development를 추가하여 체약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일차수출품시장에서의 조건 등을 안정화 및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처리하는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인 국제협력을 통해서 안정되고 공평한 그리고 이익 가능한 가격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확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커피, 주석(일정기간동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상품의 하락경향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이어서 Tokyo라운드에서 쇠고기 및 낙농품 협정이 예외로써 선진국 생산자의 관심 대상이 됨으로서 GATT의 ICAs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관심은 많이 퇴색되었다.

2. 제2차 자연자원협력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원자재 수출의존적인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노력이 일어났다. GATT에 의해 위임된 전문패널에서 준비된 1958의 Haberler Report는[11] 일차산품 생산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의 요구는 제조품 생산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고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현존하는 통상정책상의 규칙과 관습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다고 하였다. 동기간 동안 Singer-Prebisch가설[12] 또한 큰 영향을 주었는데 저개발국의 저개발 상태는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이고 특히 일차산품 의존적인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된 것이라는 결론이 영향을 주었다. 이 분석은 당시의 지식 및 정책 논의에 상당한 동요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을 하나의 근간으로 한 종속이론[13]은 UNCTAD의 지적토대가 되었

---

9) 수용가능협정의 조건은 명시. 협정은 해당상품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개방된 공식회의에서 협상되어야 하며 최고 5년 동안 지속. 운영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 관계자에 의해 함께 관리될 것을 조건으로 했다.

10) Havana헌장은 적극지지자였던 미국이 비준을 포기한 것이 큰 원인이 되어 실패하고, 이에 따라 잠정 행정협정인 GATT가 상품무역 분야만 규율하는 기구 역할을 대신한다.

11) Haberler Report는 1957년 GATT가 1차 산품의 교역조건에 관한 보고를 위임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의장으로 지명된 Austria 태생 Harvard대학의 Harberler의 이름으로 Harberler Report라 한다.

12) 1948년 만들어진 UNECLA(UN중남미 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에 앞서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였던 Raul Prebisch에게 의뢰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Prebisch Report인데 일차산품 교역조건의 장기적 악화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당시 비슷한 견해를 가진 독일경제학자 Han Wolfgang Singer의 이론과 함께 흔히 Singer-Prebisch Thesis라고 부른다.

13) Singer-Prebisch가설은 종속이론의 근간을 외부 즉, 세계무역구조의 모순에서 접근하여 중심

고, 제2차 뉴델리회의의 주요안건으로써 가난한 국가에서 다양하고 강한 제조부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원재료가 되는 제품 및 반제품의 수입에 특혜관세대우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근거가 되어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탄생되었다. 1년 후 GATT PartⅣ는 저개발 체약국이 그들의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제무역의 성장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적극적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선진국의 약속이었다. PartⅣ는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호규약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유리하고 수락 가능한 세계시장 접근의 조건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1971년에 GATT는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부여되는 특혜관세 허용의 MFN 의무면제를 제정했고 1979년에는 권능조항에 의한 MFN의무의 영구면제를 결정했다. 이러한 예외는 GATT체약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무역특혜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이들 특혜제도는 일반화된 무차별 및 비상호성이라는 사실의 통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 Doha라운드에서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및 무쿼터를 공식화 하려는 노력은 한층 특혜개념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혜를 WTO회원국에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여 광범위하게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품목에서는 일반화시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특혜제도가 최근까지도 농산물과 섬유부문은 예외로 두어 개발도상국 전 품목을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가공품과 반가공자원의 수출보다는 원재료수출품에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어 GSP제도가 해결하려던 상품의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관세경사도 만연해 있었다. 관세경사 현상, 즉 가공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관세가 높은 구조 현상은 개발도상국에 고부가가치 생산과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1차 산품수출을 강화시키고 빈국의 교역조건 곤란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Doha라운드에서 비선형방식(non-linear formula)은 관세율이 높으면 더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균등화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생산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수입국의 관세경사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서 하류(downstream) 국내산업에 전략자원의 국내공급보증, 시장공급 제한과 가격인상을 통한 교역조건개선, 환경보호, 희소 금속 및 광물 접근에 의존적인 국내하이테크 산업의 비교우위 창조 등과 같은 이유가 추가된다.

국과 주변국의 이론적 틀을 정비한 본격적 종속이론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Ⅲ. 자연자원 무역의 특성과 WTO규칙

1. 자연자원 불균형 분포와 무역

대부분의 자연자원은 주로 소수국에 집중 분포되어 있거나 국내공급에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표 1>에서처럼 확인된 세계 석유매장량의 거의 90%가 상위 15개국 내에 존재하고 있다. 상위 40개국으로 확대하면 99%의 매장량을 차지한다.

<표 1> 지역별 국별 세계 석유 매장량 (2010)

	Proved reserves (Billion barrels)	Share in world (Percentage)
World	1,258.0	100.0
Regions		
Middle East	754.1	59.9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128.4	10.2
Africa	125.6	10.0
South and Central America	123.2	9.8
North America	70.9	5.6
Asia Pacific	42.0	3.3
Europe	13.8	1.1
Countries		
Saudi Arabia	264.1	21.0
Iran	137.6	10.9
Iraq	115.0	9.1
Kuwait	101.5	8.1
Bolivarian Rep. of Venezuela	99.4	7.9
United Arab Emirates	97.8	7.8
Russian Federation	79.0	6.3
Libya	43.7	3.5
Kazakhstan	39.8	3.2
Nigeria	36.2	2.9
United States	30.5	2.4
Canada	28.6	2.3
Qatar	27.3	2.2
China	15.5	1.2
Angola	13.5	1.1
Above 15	1,129.4	89.8
Memo items:		
OPEC	955.8	76.0
European Union	6.3	0.5

출처 : WTO (2012)

다른 연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90%를 20개국이 차지하고, 세계석탄의 경우 9개국만이 90%를 점하고 있다.[14] 자연자원 부존의 이러한 불일치는 수급불일치를 야기하고 국제무역이 이런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인간의 생활수준 향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생산 활동에 불가결한 투입재로 국가 간 마찰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자연자원 무역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성격이 다른 형태의 재화에서 일어나는 마찰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제조품은 수입제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의 경우는 반대로 수입국이 외국 공급자로부터 자연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수출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적 요구, 원자재를 가공하여 경제적 다양화를 하려는 의도, 적정한 국내 공급, 환경보호, 인플레이션 압력의 통제, 재정수입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15]

무역 제한수단의 하나인 수입관세에 관하여는 GATT 1994 Article Ⅱ[16]에 의해 관세 구속(tariff bindings)으로 일컬어진 최고관세율 이상으로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수준도 그간 GATT/WTO협상으로 많이 낮아졌다. 특히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자원부문의 관세보호는 수산물 이외는 전체 제조업 무역보다는 낮은 편이다. 세계전체의 상품수입관세는 10.3%인 반면, 수산물 14.2%를 제외하면 자연자원부문이 낮은 편이다(<표 2> 참조).

<표 2> 단순 평균 적용 관세율 (2010)

Sector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All countries
Fishery	2.2	15.1	14.2
Forestry	0.6	6.5	6.1
Fuels	0.5	6.2	5.8
Mining	0.8	6.0	5.7
All merchandize imports	5.4	10.7	10.3

출처 : WTO(2010)

14) British Petroleum (200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London, Beacon Press.
15) WTO, World Trade Report, 2009. p. 111.
16) GATT, Article Ⅱ: Schedule of Concessions, 1.(a)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the commerc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n the appropriate Part of the appropriate schedule annexed to this Agreement, 1994.

GATT 1994 ArticleXI[17]은 관세, 조세, 혹은 기타부과금 이외의 금지 혹은 제한을 수입 혹은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출입품에 양적제한을 하는 쿼터와 유사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금지와 제한 양자 모두를 포함하며 이때 제한은 전반적 금지나 명백한 수적 제한(precise numerical limit)일 필요는 없다.[18] 예컨대 상품이 수입되는 항구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도 결과적으로는 제한효과를 갖는 조치이므로 ArticleXI에 불일치라는 것이다.[19] 이러한 ArticleXI 규정이 수출제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연자원부문과 특히 관련이 있다. 성격상 자연자원의 수출세의 수준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되어있으며, 관세, 조세, 기타부과금 이외의 금지사항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세 적용은 금지대상은 아니다. 다음으로 수출금지와 제한이 아닌 생산제한(production limitation)은 ArticleXI의 금지조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생산제한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출세가 수입관세의 GATT Article Ⅱ:1(b) 규정 즉 수입의 경우 양허 표에 정해두고 규정된 관세를 초과한 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된다는 구속 관세의 적용을 받느냐에 관해서는 수입관세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세는 구속관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 ArticleⅠ은 MFN(most-favoured-nation)원칙을 담고 있는데 원산국과 목적국에 상관없이 동종 상품에 대하여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21] 이 내용은 관세와 기타부과금이 포함되며 수출입 모두에 관련된 것으로 자연자원의 수출세의 경우도 MFN원칙은 적용되며, 수출입에 따른 국제적 지급의 이전까지 포함된다. 또한 조치의 방법, 수출입 관련 모든 규칙과 절차, 내국세와 국내규정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격상 이 규정은 자연자원무역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 자연자원 수입의 동종 재에 대해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야 하며 수출세와 기타 수출규제도 이 의무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비록 그 조치가 앞서의 ArticleXI에 의해 허용된 조치라도 무차별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예컨대 수

17) GATT, ArticleXI : General Elimination of Quantative Restrictions. 1. No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ther than duties, taxes or other changes, ····,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by any contracting party····, 1994.

18) WTO, Panel Report, India-Autos, Para. 7, 270.

19) WTO, Panel Report, Columbia-Ports of Entry, Para. 7, 240.

20) GATT Article Ⅱ, Schedule of concessions, 1.(b)는 다음과 같이 수입의 경우만 명시적으로 관세를 구속시키고 있다. ····· The products of territorie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shall, on thei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to which the Schedule relates, ····· be exempt from ordinary customs duties in excess of those set forth and provided for there in.

21) WTO비회원국에 대하여 동종 상품에 부여한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하는 것 까지도 포함된다. 다만 GATT ArticleⅩⅩⅣ, 권능조항 Enabling Clause에 따른 PTAs(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의 경우는 제외된다.

출입품의 관세쿼터(TRQ)에도 적용되며 WTO부속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허용된 금지 및 제한에도 무차별원칙은 적용된다.

한편 GATT Article XVII:1은 WTO회원국이 국영기업, 혹은 민간기업에 독점 및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연자원과 관련된 국영기업이 WTO에 통보되어 있다[22]. 그러나 상기의 ArticleXI의 금지조항과 Article XIII의 무차별 의무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실시되는 수출입제한에도 적용되게 된다. 동 조항(a)는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과 관련된 구입과 판매 시에 민간무역업자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가 GATT에 명시된 일반 무차별대우원칙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국영무역기업 설립 혹은 유지와 어떤 기업에 독점 혹은 특권의 공여를 통하여 GATT 1994하에서 차별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조항 (b)는 국영무역기업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입 혹은 판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업적 이유로 부과되는 가격은 허용되고 있다.[23] 이 조항이 비록 차별적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영무역기업에 포괄적인 독과점 방지법과 같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4]

2. 자연자원의 유한성과 무역

자연자원에 관련된 정책은 자연자원의 유한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컨대, 보조금의 경우 희소자연자원의 과잉채굴을 악화시킬 수 있다. WTO는 보조금에 관련된 중요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비 농산재에 있어서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SCM agreement)이 있고 농업보조금 특정규율은 농업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정의된 혜택에 대하여[25] 기업 및 기업단체나 산업 및 산업단

22) 한국의 경우 농수산임업에 있어서 농수산부(MAP), 농수산물판매공사(AFMC), 축산물유통사업(LPMO), 축협중앙회(NLCF), 산림조합중앙회(NFCF) 등이 통보되어 있다.

23) Ad Article XVII, Para. 1. The Charging by a state enterprise of different prices for its sales of a product in different markets is not preclud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such different prices are charged for commercial reasons, to meet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in export markets.

24) Appellate Body Report, Canada-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Para. 145.

25) SCM협정에서는 보조금을 혜택공여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혹은 공적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정의하고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i) 자금의 직접이전을 수반하는 정부관행, (ii) 아니면 받아야하는 정부수입의 포기, (iii) 일반 하부구조 외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정부제공, (iiv) 상기(i)~(iii) 어느 하나 그 이상을 민간기관에 위임 혹은 지시한 경우이고 이러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서 시장의 일반 수령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령될 때 혜택이 공여된 것으로 본다.

체에 특정된 보조금만 SCM협정에 의해 규제된다. 이 협정에서 수출보조금과 국내재의 사용에 부수되는 보조금은 금지되고, 나머지 보조금은 만약 보조금이 유해효과를 가지면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공여된 보조금에 의해 영향을 받은 WTO가맹국은 WTO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하거나 보조금이 국내산업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손해의 원인이 될 만큼 위협적임을 입증하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목재나 원자재와 같은 자연자원의 경우는 농업협정에 따르고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은 비 농업보조금에 적용하는 규칙과 다르다. 농업수출보조금의 경우는 약속계획서에서 동의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게 되었다. 수출보조금을 포함한 경우는 약속서에 정한 수출보조금을 초과하여 공여할 수 없고 수출보조금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금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제공되는 국내보조금의 경우는 점진적 감소의 약속을 부담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세계물소비의 85% 정도가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따라서 농업협정은 물 공급의 보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자연자원 무역과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GATT XVI은 일차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덜 엄격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SCM협정과 농업협정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7] 일차산품 중 일부인 광물, 수산물, 수산제품은 농업협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 분야 보조금은 SCM협정의 수출보조금 금지대상이 된다. 그런데 Annex 1A의 일반해석 주석에 따라 SCM의 규정은 GATT규정에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GATT와 이행계획서 및 SCM은 농업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GATT Article XX 의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는 WTO 가맹국이 GATT 의무 불일치행위를 허용한 조항이다. 상소기구에 의하면 Article XX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동조의 각항의 하나에 의해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해당 조치가 동조의 모두(chapeau)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모두 조건은 동일조건 시행 국간의 임의적 혹은 부당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거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8]. 10개

---

26) Hoekstra,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reshwater Scarcity, WTO. 2010.

27) Article XVI의 Ad Article XVI.Section B.2는 일차산품(primary products)을 “any product of farm, forest or fishery, or any mineral, in its natural form or which has undergone such processing as is customarily required to prepare it for marketing in substantial volume in international trade”로 정의하고 본 조항 5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 1차 산품 이외의 산품 수출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을 규정하고 있다.

항 중에서 (g)와 (j)가 직접 자원유한성과 관련이 있다. (b)항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의 보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것이다. (g)항은 유한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의 채택을 허용하는데 다만 그 조치가 국내생산 혹은 소비의 제한과 협력하여 실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29] 이 규정은 US-Gasoline분쟁에서 호소되었다. 여기서 청정대기의 고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Article XX(g)의 의미 내에서 유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임을 결정했다.[30]

US-Shrimp에서는 유한 자연자원이 광물 혹은 무생물자원만을 의미하는지 생물 및 재생가능자원을 포함하는지의 문제, 여기서는 바다거북을 포함하는지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현대 생물과학에 의하면 생물종(living species)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고갈, 소진, 멸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도 무생물자원처럼 유한하다고 하였다.[31] 나아가서 유한성에 더하여 보존에 관련된 조치여야 예외가 인정된다. US-Gasoline의 경우는 자연자원의 보존에 우선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요건충족으로 보았다. 그러나 US-Shrimp에서는[32] 조치와 유한자원을 보존하는 합법적 정책간의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가 분명히 밀접하고 실질적인 것인가에 주목했다. 국내생산 혹은 소비제한의 부과가 협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공평성 요건으로 해석한다.[33]

한편(j)항에 의해 일반적 혹은 국지적 공급부족이 있을 때 자연자원의 취득과 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모든 가맹국이 국제공급의 동등한 분배를 보장받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 규정은 1970년 영구규정으로 수락되기 전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임시사정의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택된 것이었다.[34] 일반적 혹은 국지적 공급부족이라는 것은 국제공급 부족일지라도 전 세계시장에서 반드시 공급부족이 아닌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도였다.

이는 상품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가 공급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

---

28)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s, 118-121.

29) (g)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t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30)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ara, 14.

31)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28.
One lesson that modern biological sciences teaches us on that living species, though in principle, capable of production and, in that sences, renewable are in certain circumstances indeed susceptible of depletion, exhaustion and extinction, frequently because of human activities. Living resources are just as finite as petroleum, iron ore and other non-living resources.

32)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Para. 128.

33)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aras. 20-21.

34) GATT, 3d Supp. BISD230, 1955. Decision of 20 February 1970, L/3361, 17s/18.

며,[35] 이 조항에 의해 특별한 자원의 일시적 제한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가맹국간 동등분배의 원칙과 Article XX의 모든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동등분배의 원칙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무차별원칙과는 다르며, 동등성의 결정은 상황에 따르게 된다. 비관세 수입제한금지는 GATT ArticleXI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 조세, 기타보조금 이외의 수출제한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국에 필수적인 식품 혹은 기타재의 긴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금지 혹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방지라는 말은 긴급부족이 실제 발생하기 전 구체적 행위를 취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양적제한에 관한 검토실무단의 보고서는 가격인상이 심각한 해당재의 부족과 관련되는 경우 일시적 수출제한이 가능한 것은 2(a)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물의 수출제한은 수출국에 긴요한 재화 혹은 상품으로써 예외대상이 된다. 농업협정 Article12는 GATT ArticleXI; 2(a)에 의지하여 식품의 새로운 수출금지 혹은 제한을 시작하려할 경우 두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치도입 가맹국은 수입국 식량안전에 있어서 금지 혹은 제한의 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할 것 둘째, 서면으로 미리 농업위원회에 통지하고 요청에 따라 수입자로써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Article12의 의무는 선진국에만 적용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순 식품 수출국가에만 적용된다.

3. 자연자원 외부성과 무역규제

자연자원의 경우 외부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경제행위자의 행위가 긍정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행위자들에게 간접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외부성이 일어난다. 즉 어떤 경제행위의 결과가 관련 생산 혹은 소비 결정에 수반되지 않고 소비자 혹은 기업에 외부비용을 부과하거나 외부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인근거주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공해를 발생시키거나 간접적으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연환경에 손상을 가져올 때 일어난다.[37] 자연자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정적

35) EPCT/A/PV/30 p.22; Report at EPCT/W/245.

36) GATT Article XI 2. The provisions of Para.1 of this Article shall not extend to the following : (a)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temporarily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stuffs or other products essential to the exporting contracting party.

37)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은 양봉업자가 인근의 과수업자의 결실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택소유자가 재산을 개선시켜 인근 주택의 시장가격을 간접적으로 인상시킬 때 일어난다. 사회 후생면에서 보면 외부성은 재화의 과대생산(over-produced) 혹은 과소생산

외부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자원의 추출이나 소비로 인해서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하지 않지만 한 종의 어류포획이 다른 어종에 이익이 되어 다른 어종기업의 후생에 간접적으로 정의 효과를 주거나 광산업자의 도로개설이 인근 농민의 농작물 출하의 교통에 편리함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는 결과는 실제에 있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GATT Article Ⅰ 및 Ⅲ의 조항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무차별원칙은 Article Ⅰ의 MFN 대우와 ArticleⅢ의 내국민대우로 표현되어 있고 수출입금지 및 제한은 ArticleⅩⅢ의 수량제한 무차별 적용의 무차별 의무를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성 관리를 위해 가공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차별을 할 때 이와 관련된 비제품(non-product)에 근거한 차별대우가 일어나는 경우 무차별원칙과의 충돌문제이다. 예컨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공급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무공해청정전기를 사용하여 제조된 플라스틱제품에 반대의 전기를 사용한 동종재보다 낮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동종재가 자연자원의 외부성을 최소화 시킨 과정을 거친 PPMs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을 때 무차별원칙에 일치하느냐의 문제가 있게 된다. 불일치로 보는 견해는 물리적 동일재를 상이한 PPMs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무차별위반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국이 그들 수준의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여타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38] 이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종재(like products)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동종성의 평가는 다음 4가지 기준에 따른다.[39] 첫째, 제품의 성격, 특성 및 품질, 둘째, 제품의 최종사용, 셋째, 소비자의 기호와 습성, 넷째, 제품의 관세분류가 그것이다.

PPMs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한 추구는 EC-Asbestos에서 상소기구

(under-produced)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해당재의 시장가격이 사회의 진정한 비용(true cost) 혹은 진정한 이익(true benefit)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사용이 다른 경제행위자에게 외부비용 즉 부정적 외부성을 일으킬 때는 구매자의 계산에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비용에 비해 너무 높게 되어 과대생산 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 외부성의 경우는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다.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비용과 이익을 내부화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같은 외부행위자의 개입이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38) Briefing Notes, Hong Kong, China WTO Ministerial, 2005.

39) 이러한 기준은 1970년 국경세 조정에 관한 실무단(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s)에 의해 처음 표현된 후 상소기구나 패널보고서가 이러한 방법을 따랐다.(Appellate Body Report, Japan-Alcoholic Beverage, 113 and footnote 46.

가 제품성격분석에서 온석면(crysotile asbestos)에 관련된 건강위험을 고려할 때 강조된 내용이다.[40]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의 기호와 습성 하에서 소비자가 부정적 외부성을 최소화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다르게 인식한다면 동종성 분석에서 PPMs관련 차별이 감안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PPMs 기준차별이 GATT에 의해서 허용된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일부는 PPMs에서의 차이가 필연적 제품 비동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은 PPMs가 차이나도 성질, 최종사용 및 관세분류는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수입국과 원산국의 정책 혹은 관행의 비교가 아니라 국내 재와 수입 동종재에 부여되는 대우간의 비교에 따라 ArticleⅢ에 일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1]

다른 한편 생태표지(eco-labels) 부착의무로 부정적 외부성의 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외부성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책수단이다. 이의 합리성은 소비자가 부정적 외부성이 가장 잘 관리된 제품을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 비친화적 생산자가 이들 외부성을 가장 잘 해결하도록 제품 및 PPMs을 조정토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무역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Agreement)에 포함된다. TBT는 기술규제와 자발적 제품표준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다.[42] 그러나 제품, 가공, 생산방법에 적용하는 경우 표지부착요건을 말할 때 “relating to″에 관한 적절 용어의 부재로 인해 가공 혹은 생산방법에 관련된 비 제품의 표지에 대한 여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최종재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즉 비합체 PPMs(unincorporated PPMs)가 TBT협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43]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생태표지는 TBT협정에서 규제될 수 있고 수입 동종재는 무차별조건에 따라 대우해야 된다. 나아가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방해를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방해의 효과를 갖거나 불필요한 효과를 야기하는 관점에서 준비하거나 혹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술규제는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에 일치해야 하지만 목적 이행을 위해 비효과(ineffective) 혹은 부적절한 수단이면 국제표준의 사용을 회피할 수 있다. 자연자원무역은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Agreement)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협정에서 WTO 의무위반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 자연자원 수입을 금지 혹은 제한하

40)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Paras, 135-136.
41) GATT Panel Report, Tuna/DolphinⅡ.
42) 기술규제는 제품특성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에 관한 정보제공을 담고 있는데 표준에 대해서도 유사하지만 전자는 강제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3) WTO and UNEP, Trade and Climate Change : A Report by the WTO and UNEP. 2009.

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밤나무줄기 마름병(Chestnut Blight), 네덜란드 느릅나무병(Dutch Elm Disease), 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s)”와 같은 침입종(invasive species)을 함유한 임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44]

탄소세에 관련된 GATT ArticleⅡ는 WTO가맹국이 내국세와 동등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외부성 관리를 위한 부과금 정책이 가능한가의 ArticleⅡ 및 기타관련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45]

Ⅳ. 자연자원 무역의 국제적 협력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연자원의 무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개입에 의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자연자원의 특성상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정부개입이 필요할 때 WTO는 이에 대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았다. 동시에 자연자원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표 2>처럼 수산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연자원 수입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분쟁도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규칙의 성격과 내용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쟁점과 다양한 견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여기에 국제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 무역정책협력의 이익

무역정책협력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46]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자 혹은 지역협력을 통한 무역장벽의 감소에 기인한 공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유무역의 경제적 논리

---

44) Chalifour, Global trade Rules and the world’s forests, GIELR a(3). 2000.
Hughes, Forests, Forestry Practices and the living Environment, GFIEL, London, Kluwer : 79-135. 2010.

45) WTO and ENEP, 상게서, 2009.

46) WTO, World Trade Report, 2007. p, 50.

는 무역협력내지는 무역협정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이익으로 인한 일방적 자유화 논리이다. 둘째, 다자자유화나 지역자유화 어느 것도 소비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다. 다자협력의 결과 정부에 의해 인하된 사실상 모든 관세는 수출자의 시장접근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해당 정부는 상대국에 시장접근 허용의 대가로 그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해준 결과이다. 이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다른 요소가 설명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 따라서 무역협력에 대한 가장 정교한 이론인 전통이론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교역조건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접근은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논리와 정부가 정책개입의 분배적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접근은 정부가 국내 이해자에 대한 정부의 신뢰문제를 강조한다.

세 접근의 각각은 국제무역협력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데 교역조건론은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는 교역조건접근과 유사한 목적에 공헌하기도 하고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정부의 신뢰를 강조하는 세 번째 약속접근(commitment approach)에서는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들 접근방법은 왜 정부가 타정부와 무역협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 세 접근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교환과 교역조건

전통적인 교역조건 접근의 핵심논리는 일국이 비협력적 형태로 관세를 정하면 각 국 정부는 국내경제에 손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알지만, 관세 비용의 일부가 외국에서 부담할 때 관세 부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상대국에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지만 모든 나라가 동시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무역으로 인한 이익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협력적 관세 부과 보다는 협력적 관세감소가 파이를 키울 수 있고 모든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무역협력의 참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다. 이것은 모든 참여자가 무역이익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혜무역협정과 같은 것은 이익의 일부가 비참여자로부터 이전될 수 있지만 다자간 협력의 경우는 참여자의 이익이 비참여자의 희생을 수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협력을 통하여 상호이익의 전체적인 파이 크기를 확대시켜야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은 정부 간 교역조건 외부성이라는 비효율성의 제거와 관련이 있다. 즉, 무역장벽을 설치하면 자유무역에 비해서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국이 똑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교역조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A와 B 두 교역국이 있다고 하자. 2개의 정책선택이 있을 때 각 국은 자유무역정책 혹은 관세부과의 보호무역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교역당사자가 상대국의 선택을 전제로 했을 때 협력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른 이익행렬을 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숫자는 A의 이익이고 두 번째는 B의 이익이다. <표 3>에서 교역당사국이 자유무역에 보다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무역전쟁과 무역협력의 결과

B전략 / A전략	Free Trade	Protection Trade
Free Trade	10/10	-10/20
Protection Trade	20/-10	-5/-5

이 간단한 결과가 관세의 교역조건론 결과이다. A국은 수입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의해 교역조건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의 전제조건은 해당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대국의 경우라면 관세부과로 세계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면 이익이 있을 수 있다.[47]

그러나 교역조건 이익은 관세왜곡의 비용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각 국은 상대국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 보호를 선택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협력 행위를 하면 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비협력적 결과는 내쉬균형으로 일단 보호가 되면 어느 일국이 관세감소를 해야 할 동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된다. 즉, 상호부담하지 않고 일방이 관세 제거로 자유무역을 한다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이 함께 자유무역을 선택한다면 양국 모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국의 순교역조건 이익이 상대국의 비용보다 적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결론적으로 비협력적 통상

47) 이는 마치 국내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 없고 생산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은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내쉬균형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협력으로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협정체결만으로 조인국의 근린궁핍화 유혹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행이 주요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협력적 관세는 이행강제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GATT/WTO 분쟁해결 절차는 독특한 방법으로 협력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 절차는 보복의 남용을 제한하는 한편 보복의 위협을 통해서 위반을 원상복귀 시킴으로서 비협력적 균형으로부터 협력적 균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48] 비효율적 비협력 균형은 상대국에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비효율적 일방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때 비용의 전가가 교역조건 외부성이다.[49]

일방적인 과잉보호와 시장접근 억제에 따른 비효율성은 해외 수출자의 이익을 국내 무역정책결정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A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낮은 가격조건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 수출자에게 비용을 부과시킨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A국 정부가 관세결정시에 상대수출자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협력은 외국수출자의 이익이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비용전가를 통한 교역조건 외부성을 제거한다.

이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무역협력은 시장접근과 시장접근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수출자에게 새로운 시장접근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국이 후생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고, 만약 제 3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세계전체 입장에서 파레토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WTO가맹국이 협상에서 각국의 불합리한 중상주의적 행위를 전제함이 없이 수출자의 이익에 의해 조종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협력적 자유화는 수출자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설명은 WTO의 지지론이

48) 협력적 결과를 유도하는 데는 힘의 기준접근(power-based approach)과 규정기준접근(rules-based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고 WTO에 구체화 된 협상 방식은 후자의 기준이다.

49) 무역협정에서 교역조건론의 실제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주된 이유는(a) the consistency of the main predictions of the terms-of-trade model with observed tariff patterns (b) the consistency of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with the observed instruments of protection (c) the consistency of the models predi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agreements (d) the unequal balance of the terms-of-trade theory, and, (e) the failure to explain both why small countries with no influence on world prices seek to form a trade agreement with one another, and why large countries may want to have a trade agreement with small countries, (WTO (2011), World Trade Report).

자유무역 선호론 보다 훨씬 일반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즉, 시장교환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된다.

2) 수출자의 지지를 유발시키는 정치·경제적 접근

교역조건 조정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무역협력의 강력한 설명력을 갖지만 때로는 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공공이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벗어날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유권자의 생활수준 즉, 공공이익과 특별이해단체로부터 선거 기부모금도 동시에 고려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정치·경제적 접근에서 보면 개인과 기업은 무역정책의 수요자이고 정부는 정책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정책의 효율성 및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다. 여기서 정부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제약하에서 국가후생의 극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선을 위한 표(vote)와 선거자금(funds)을 주는 개인기업의 수요에 순응해야 한다. 즉, 정부는 정책선택의 초점을 재선의 가능성과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가중 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정치기부금은 정책과정에서 특별 이해집단이 취득하는 사적 이익에 따를 것이고 지지표는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하느냐에 있다. 이는 마치 재화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가격처럼 정치시장의 보호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선택하여 관세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면, 정부가 국제무역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 의해 균형이 발생한다. 정치적 지지와 교역조건 동기라는 두 가지 이유, 다시 말해서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관세 선택의 분배효과인 정치적 결과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50] 하나는 선거에서 야당과의 경쟁을 강조한 것이고, 이때 후보자는 서로 다른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전제된다. 로비 그룹은 유리한 정책 약속 후보자에게 헌금을 기탁하고 후보자는 이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지지표를 모으게 될 것이다. 헌금의 가치는 지지후보의 선출로 얻게 되는 이익에 따른다. 두 번째 접근은 현 재임정부가 재선가능성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선택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두 가지 형태는 중위투표자모델과 로비모델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고[51] 후자는 정책이 소비자 후생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로비그룹의 헌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52]

---

50) Hillman and Urspung, Domestic Politics, Foreign Interests and Trade Policy, AER 78, 4 : 729-45. 1988.

51) Mayer, Endogenous Tariff Formation, AER, 74 : 970-85. 1984.

52) Grossman and Helpman, Protection for Sale, AER, 84(4), 833-50. 1994.

관세결정의 로비모델에 의하면 정치시장의 보호수요와 보호공급이 균형이 되도록 관세를 정한다는 것이다. 보호의 공급은 일정수준, 예컨대 y만큼의 정치헌금을 받을 때 정부보호의 공급크기로 정의된다. 여기서 보호의 크기는 관세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세수준으로 측정된다. 공급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 대규모국의 최적관세는 헌금이 제로일 때의 관세가 된다. 보호의 수요도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한계관세 증가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헌금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최적관세 T'보다 높은 수준에 균형관세가 결정될 것이다. 최적관세 수준은 교역조건 동기에 따를 것이고 나머지는 정치적 동기의 관세이다.

[그림 1] 정치적 동기와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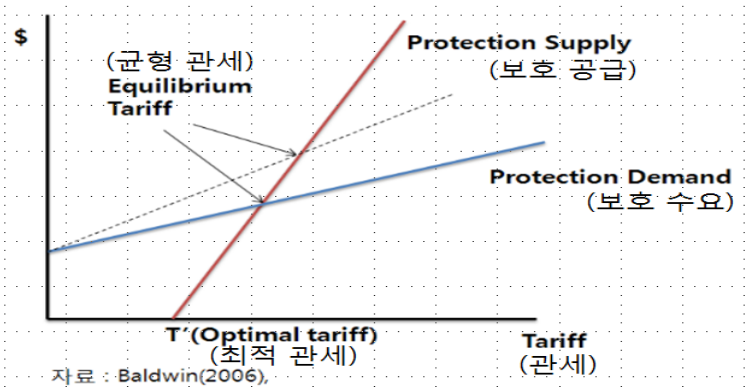

정치적 최적관세는 수입경쟁 부문의 규모에 따른다. 만약 이 부문이 크면 균형관세는 높아질 것이다. 수입경쟁 부문의 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수입경쟁 이익에 있어서 보호 인상의 영향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보호수요 증가로 점선의 수요곡선이 된다. 따라서 균형관세는 높아진다. 실제 입법자들은 그들의 지역구에서 수입 민감 부문에 고용된 유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경제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호수준은 한 산업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정도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도 한 예가 된다.[53] 만약 정부가 오직 국가의 후생만 생각하고 정치적 로비 압력을 받지 않으면, 교역조건 조작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비효율성, 즉 상대국의 희생을 야기하지만 이는 무역협력 혹은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경제모델의 공헌은 민간이익단체와 정치적 지지추구 정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53) Baldwin,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Cambridge, The MIT Press. 1996.

교역조건 조작을 하려는 동기를 없애려는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순전히 교역조건 동기에 의한 관세 부과는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위투표자 후생 면에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감소가 국가를 위해서는 좋다는 것을 알지만 일방적 관세감소는 수입경쟁부문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관세감소가 교역조건 동기관세 부분에 한정된다면 자유무역이 최적이지만 정치적 지지 동기관세 때문에 국내의 최적선택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처럼 일방적 관세감소는 정치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제약이 있다. 그 이유는 비록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고 소수의 생산자를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후자는 전자보다 잘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감소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 정치적 비용을 모면할 수 있음을 잘 안다. 즉, 무역협정을 통한 상호감소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정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촉진시키는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경제적 접근에서도 전통적 접근처럼 상호성 원칙은 교역조건 조작의 동기를 제거하는 한 방법이다. 이처럼 상호성이 상대국의 수출자를 자국의 자유무역 지지자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유화가 상호적일 때 수출자는 자국의 관세가 낮아질 때 외국시장 접근이 용이하고 그 결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상호주의 하에서 외국관세는 국내관세의 함수이므로 로비기부금은 국내외 관세에 달려있고 결국 모든 나라는 관세감소가 최적임을 안다. 특히 교역조건 및 정치·경제적 동기를 반영한 관세는 교역조건 동기에 관련된 관세액 만큼 감소되고, 정치적 최적관세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실제 정치·경제적 해석은 여러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다.[54] 정치·경제적 접근에서 로비 압력은 수입부문과 수출부문의 관련이 있게 되는데 규모가 크면 압력도 강할 것이다. 정부가 상호자유화를 시작하면 국내관세도 낮아질 것이고 수입경쟁 부문의 축소와 수출 부문의 확대 원인이 될 것이다. 최초 자유화는 수출부문에 의한 추가 자유화 압력을 유발시키게 되고 점진적 자유화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불가항력 효과로 알려진 것이다.

---

54) (i)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has been gradual(By gradual we do not mean there is a phase-in implementation period, but rather than multilateral liberaliza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a series of successive rounds of liberalization),
(ii) much liberalization has taken place in products where two-way trade is prevalent,
(iii) trade agreements generally do not prohibit terms-of-trade manipulation through export-taxes, WTO, World Trade Report, 2007. p, 57.

3) 정책 신뢰성 문제

다음은 정부 간 정치적 외부성이 무역협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이익집단은 제한적 합리성 즉, 정치적 지지는 정부행위의 장기 간접효과 보다 단기 직접효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55] 따라서 자유화 정책에 소극적이 되고 장기결과는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고 자유무역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협력적 약속을 하게 되면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간 비효율문제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자유화 약속은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같은 준비를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때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를 예측하면 구조조정 준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자유화 협정은 정책약속의 신뢰를 높이는 정부행위의 구속효과를 갖는다. 만약 한 산업이 해당 부문의 국제경쟁에 대응할 구조조정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는 정부가 자유화를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협력이론은 다자무역협력, 쌍무협력, 지역협력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이외에도 시장규모 확대, 특혜침해 대응, 비협력국에 대한 보호강화, 교섭력 확보 등이 국제협력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 자연자원의 국제협력

위에서 살펴본 보편적 협력의 원리가 자연자원무역에도 적용되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다른 한편 자연자원은 사회적 후생증가를 위해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많은 특성을 함께 갖는다. 따라서 자연자원에 관련된 국제규율에는 내용과 견해에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출제한, 보조금, 국내 및 국제규제, 투자 관련 문제, 경쟁 및 수송, 자연자원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분, 지적재산권 및 자연자원 보존 등에 관련된 협력이 요청되지만 특히 여기서는 수출제한과 보조금 협력을 중심으로 관찰한다.

1) 수출제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WTO체제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양적 수출제

55) 예컨대 섬유 수입관세 감소는 수입경쟁 섬유산업이 관세 감소를 반대하지만 상대국 섬유수출은 직기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직기수출업자의 효과는 2차적이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세 혹은 수출관세는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US-Export Restraints[56]의 패널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상계조치를 허용하는 보조금으로 인정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가맹국이 수입관세처럼 수출관세를 인하시키는 구속약속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WTO 최근 가입국들은 가입 협상내용에서 기존 가입국들에 의해 수출관세 약속서의 협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57] 많은 경우 약속에 포함된 수출관세는 주로 자연자원에 관한 것이고 수출세의 감소 혹은 제거의 정도도 국별로 다양하다. 수출세 관련 다양한 이해가 비농산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Doha Round 협상에서 표면화 되었다. 최초 제안서에서 시장접근 협상그룹의 2개 국가가 수출제한과 수출세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58]

제안서에서 장기적 모든 조치의 제거에 목적을 둔 수출세에 관한 WTO협정(WTO Agreement on Export Taxes)의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제안은 수출세가 주요 원자재와 투입재 접근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각국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였지만 수출세는 경제발전의 합법적 도구라고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안은 그 후 수정을 거쳐 비농업시장접근 초안의 4차 수정안에 포함되었다. 수정된 접근은 수출세의 일반적 금지로부터 투명성과 예측성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수출관세의 감소에 대한 국제협력의 경제적 이유는 수입관세와 같은 논리이다. 국제시장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수출품에 상호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죄수의 딜레마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역협정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수출세에 적용될 수 있다. 수출세 감소는 수입세 감소 또는 수출세 감소의 약속과 교환으로 약속할 수 있다. 수입국이 자연자원부문에서 생산사슬을 따라 관세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자원수출국은 수입관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관세 약속과 수출관세 약속을 수반하는 협력은 상호이익이 될 수 있다.

---

56) WTO, Dispute, DS194.

57) 이들 국가에는 China, Mongolia, Saudi Arabia, Ukraine, Vietnam 등이 포함되고 가입협상에서 수출관세 사용이 종종 구속계획서(schedules of bindings)가 아니라 실무단보고서(Working Party Reports)에서 부담한 약속을 통해 규제되었다.

58) WTO document TN/MA/W/1 and TN/MA/W/5.

2) 보조금

보조금 관련 많은 문제들이 WTO 가입 협상에서 논의되었고 Doha Round협상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WTO 보조금규칙과 같은 것의 의미는 비효율적 정책을 없애거나 제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 메카니즘을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한다는데 있다.[59]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미묘한 문제는 보조금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제한은 효율성과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 규칙이 협의된 관세약속을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새로운 보조금 사용을 억제하면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시장접근협상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에 의해 효율성 증대가 되도록 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국내 보조금의 경우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효율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무역협정은 왜곡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유연성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보조금의 대안으로 관세와 같은 효율성이 적은 조치를 과잉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에 있어 보조금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수산업 보조금이다. 수산업 보조금의 문제는 보조금의 과잉 이용을 촉진시켜 자원 소진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첫째, 이를 규율하는데 현존 SCM협정이 적절하냐는 것이 제기된다. 수산물(자연자원)의 재산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이용과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일정 가격 이상이 되면 공급곡선이 후방굴절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일정 경계가격 수준 이상이 되면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보조금 수혜 어류 수입자, 보조금 지급 행정부 및 수출자 누구도 WTO규율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수산업 보조금은 SCM협정 내의 수출보조금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SCM협정이 국내소비용 어류의 순 수입자에게는 수산업 보조금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협정 하에서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가맹국 이익에 유해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60]

수산업 보조금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 사항을 협상하기 위한 합의된 노력이 Doha Round에서도 있었다. 각료선언에서[61] 수산부문 보조금 규율강화의 필

59) Ruta, Lobbing and Decentralization, Public Choice, 144(1) : 275-291. 2010.

60)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The disparate nature of fish species make market displacement harder to prove (ii) Distortions will be in resource availability rather than in the prices for exporters(which does not give grounds for a challenge under the SCM Agreement) (iii)It is difficult to identify a price reference point against which the loss can be measured because the entire industry is distorted through subsidization.

요성에 관한 WTO 가맹국의 광범위한 합의 속에는 생산과잉 및 남획, 투명성과 강제성을 포함한 규율의 성격과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남획의 원인이 되는 자유접근 문제로 인해서 수산부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생산 및 수출보조금과 같은 생산유발 보조금은 남획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마도 자유접근 문제의 존재하에서 정부는 수입경쟁 혹은 수출경쟁 압력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동기가 보조금 정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입경쟁 부문에서는 세계가격을 변화시켜서 교역조건 이익을 얻으려는 교역조건 조작의 동기가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WTO와 같은 국제협정은 비효율적 정책을 분명히 없앤다는 약속 메커니즘을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한다. 교역조건 조작에 목적을 둔 수산업 보조금은 관세 약속으로 인해 제약이 있을 때 매력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입경쟁 국내수산업에 보조금 공여는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영향력을 가질 때 교역상대국에 교역조건효과를 주어 근린궁핍화정책으로 귀결된다. 일방적 교역조건 조작은 관세전쟁처럼 죄수의 딜레마가 된다. 이때 보조금 감소 혹은 제거 협력은 세계사회후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 즉 정치·경제적으로 약속의미 내포의 WTO와 같은 국제협력과 교역조건 외부성 제거 목적의 국제협력은 남획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끝으로 지구적 공유재산의 존재 상태에서[62] 보조금은 교역조건 조작 외부성에 이어 지구자원의 과잉 이용에 관련된 외부성이 추가된다. 전자의 경우는 무역협력으로 해결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또 따른 협정이 요구된다. 만약 타국이 동시에 자원이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과도한 채취를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역조건 조작을 통한 무역 왜곡, 자유접근 문제를 악화시키는 불량보조금과 양호보조금이 구분되어져 협력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양호보조금은 시장실패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보조금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협약은 유연성과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

61) WTO Ministerial Conference, Hong Kong, China. 2005.

62) 특히 해양어류는 이주성과 탈주성이 높다.

Ⅴ. 결 론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자연자원은 그 특성상 무역관리를 위한 국제규율과 협력에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불균등 지리적 분포, 유한성, 사용과 관련된 환경 외부성, 자연자원 집중, 시장가변성 등이 포함된다. 그간 WTO 규율의 제도적 틀은 자연자원 무역의 특성에 따른 국제협력을 통하여 무역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WTO는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이 추출되거나 채취되기 전에는 규제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는 추출 혹은 채취 전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적절한 보상보다 낮은 조건으로 정부가 공급한 목재는 SCM협정 하에서 보조금으로 인정되었다. 나아가서 탐구, 추출 및 자연자원의 분배는 서비스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 속하는 서비스 활동을 수반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협정은 혁신촉진과 기술이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기술은 자연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탐구의 한계를 없애기 때문에 특히 천연자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WTO 규정은 자연자원 무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의 결함이나 자연자원 무역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하는데 따른 명확성의 결여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계와 결함을 갖고 있지만 다자무역체제의 일반 원칙은 자원 부문 범위 내에서 근린궁핍화 및 자국궁핍화 무역정책을 제한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무차별 규칙, 통과의 자유, 관세구속과 수출제한 관련 규정들은 국가 간 자원의 불균등 분포 문제를 완화시키고 각 국이 희소자원의 공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 것이다. GATT Article XX과 같은 WTO 협정 내에 포함된 정책유연성(예외)제도는 자원 유한성, 환경 외부성, 자원 집중성과 가격 변동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WTO 규칙들이 자연자원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문의 특성에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 자연자원무역의 활성화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수출세와 같은 무역정책의 협력은 비협력적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물론 협력의 범위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이 국가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의 대우와 같은 보존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조금이 자연자원의 자유접근 문제를 악화시키고 교역조건 조작에 의한 무역왜곡이 일어난다면 불량보조금으로 제한되어야 하겠지만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한다

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보조금에 대한 국제협력에는 유연성과 균형이 요구된다.

셋째, 자연자원의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통과운송 자유범위의 명확성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연자원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에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규칙적용에 관한 문제의 국제협력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와 자연자원의 희소성과 유한성과의 긴장 관계는 오늘날의 국제 무역환경이 해결해야할 주요과제이다. 자원희소국의 불평등 접근과 자원 부족 국가에서의 부적절한 이용은 무역 갈등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익 공유라는 인식에서 확립된 국제 협력을 위한 적절한 다자규칙은 자연자원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은 자연자원 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한 WTO 다자간 규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자연자원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각 국 정부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상호조정(trade-offs)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한 국제협력은 건전한 자원관리, 동등하고 상호적인 이익을 보증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전제가 될 때 효율적인 다자무역규칙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설계된 규칙은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보호와 희소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내정책 목적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자연자원 의존성, 자원의 유한성, 자원이용과 소비에 관련된 부정적 외부성의 완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보다 나은 범지구적 관리는 다자무역협력의 지속적 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Acemoglu, D., Aghion, P., Bursztyn, L. and Hemous, D.,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 15451. 2009.

Asche, F. and Smith, M. D., "Trade and fisheries:Key issu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WTO Background report for the World Trade Report 2010.

Bagwell, K. and Staiger, R., "What do trade negotiators negotiate abou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meri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2011.

Bagwell, K. and Staiger, R., "Will international rules on subsidies disrupt the World Trading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96(3):877-895. 2009.

Bagwell, K. and Staiger, R. W., "Multilateral tariff cooper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8(2) : 291-319. 1997.

Bairock, P., "European trade policy 1815-1914", in Mathias, P. and Pollard, S. (eds),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VIII : The Industrial Economies :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Cambridge UK:Cambridge University Press:1-160. 1989.

Baldwin, R.,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NBER Working Papers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No.4465. 1993.

Baldwin, R.,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in Baldwin, R., Haarapanta, P., and Kiander, J. (eds), Expanding Membership of the EU,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Books:25-48. 1995.

Baldwin, R.,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The World Economy 29(11):1451-1518. 2006.

Baldwin, R., "Big-think regionalism : a critical survey", in Estevadeordal, A., Suominen, K., and The, R. (eds),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2]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17-95. 2009.

Baldwin, R., "21st Century Regionalism : filling the gap between 21st century trade and 20th century trade rules", Geneva, Geneva Graduate Institute, Working Paper No.

2010-31. 2010.

Baldwin, R. and Thornton, P., Mulilateralising Regionalism. Ideas for a WTO Action Plan on Regionalism, London : CEPR. 2008.

Baldwin, R. E., "The case against infant industry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3) : 295-305. 1969.

Baldwin, R., Evenett, S. and Low, P., "Beyond tariffs : multilateralizing non-tariff RTA commitments", in Baldwin, R. and Low, P. (eds),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79-141. 2009.

Bhagwati, J.,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Cambridge, MA : MIT Press. 1991.

Bilsky, E. A., "Conserving marine wildlife though world trade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 : 599-642, 2009.

British Petroleum,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London : Beacon Press. 2009.

Carbaugh, R. J., International Economics (11th edition), Mason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Inc. 2007.

Carrere, C., "Revisiting the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flows with proper specification of the gravity model", European Economic Review 50(2) : 223-247. 2006.

Chalifour, N. J., "Global trade rules and the world's forests : Takong stoc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implications for forests", Georget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view 12(3). 2000.

Chase, K., "Multilateralism compromised:the mysterious origins of GATT Article XXIV", World Trade Review 5(1):1-30. 2006.

Cossy, M., "Energy Transport and Transition the WTO", in Pauwelyn. 2010.

Cossy, M., "Energy Transport and Transit in the WTO", in Pauwelyn, J. (ed), Global Challenges at the Intersection of Trade, Energy and the Environment, Geneva:Centre for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CTEI). 2010.

Davey, W. J., "A model article XXIV : are there realistic possibilities to improve it?", in Bagwell, K. and Mavroidis, P.C.(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Davis, G., "Trade in mineral resources", Geneva:WTO, Background paper for World Trade Report 2010.

Dawar, K. and Holmes, P., "Competition policy", in Chauffour, J. P. and Maur, J.C.(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A Handbook, Washington DC:World Bank. 2010.

Ehring, L., "Freedom of transit under Article 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A sleeping beau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va : WTO, Appellate Body Secretariat Speaker Series Draft Paper presented on 26/6/2007.

Fingk, C. and Molinuevo, M.,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in services : key architectural el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1(2) : 263-311. 2008a

Fink, C. and Molinuevo, M. (2008b), "East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 services : liberalization content and WTO rules", World Trade Review 7(4) : 641-673. 2008.

Fouquin, M., Langhammer, R. and Schweickert, R., "Natural resources abundance and its impact on regional integration. Curse or blessing?", Annual Latin American Conference of the Euro-Latin Study, Issues Paper. 2006.

Grimaud, A. and Rougé, L. (2008), "Environment, directed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polic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41(4) : 439-463. 2008.

Gruber, L., Ruling the World:Power Politics and the Rise of Supranatural Institutions, 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Hillman, A. and Ursprung, H. W., "Domestic, Foreign Interests and International Trad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78, 4 : 729-45. 1998.

Hoekstra, A. Y., "The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reshwater scarcity",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Staff Working Paper ERSD2010-05. 2010.

Hoekstra, A. Y. and Chapagain, A. K., "The global component of freshwater demand and supply:An assessment of virtual water flows between nations as a result of trade i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Water International33(1) : 19-32. 2010.

Howse, R., "The use and abuse of international law in WTO trade/environment litigation", in janow, M. E., Donaldson, V., and Yanovich, A. (eds), The WTO : Governance, Dispute Settlement & Developing Countries, Huntington : Juris Publishing : 635-670. 2008.

Hughes, L., "Forests, Forestry Practices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Canadian Council on International Law (ed), Global Forest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 Kluwer : 79-135. 2010.

Josling, T., "New trade issues in food,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Geneva : Conference Draft presented at the WTO TAIT conference on 10 September 2009.

Kemp, M. C. and Wan, H. Jr., "An elementary proposition concerning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1): 95-97. 1976.

Krishna, P.,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 227-250. 1998.

Krugman, P., "The move to free trade zones",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sponsor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Currency Zones. Available at http://www.kansascityfed.org/publicat/sympos/1991/S91krugm.pdf.Accessed on 31 march 2011.

Lamy, P., "The place of the WTO and its law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5). 2007.

Lawrence, R. Z., Regionalism, Multilateralism and Deeper integratio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96.

Lesser, C., "Do bilateral and regional approaches for reduc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nverge towards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ari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 58. 2007.

Leutwiler, F. e. al., "Trade policies for a better future : the Leutwiler Report", in Dunkel. A. (ed), Trade Policies for a Better Furture : The "Leutwiler Report", the GATT and the Uruguay Round,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Levy, P.I., "A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free-trade agre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87(4) : 506-519. 1997.

Limão, 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s stumbling blocks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3) : 896-914. 2006.

Livernois, J., "On the empirical significance of the Hotelling rul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3(1) : 22-41. 2009.

Low, P., "Regionalism:challenges for the WTO",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Graduate Institute of Geneva conference on Multilateralizing Asian Regionalism, Tokyo, 18-19, 2008.

Magee, C., "New measures of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5(2) : 340-362. 2008.

Mathis, J. G.,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GATT/WTO : Article XXIV and the International Trade Requirement, The Hague:TMC Aser Institute. 2002.

Mattli, W.,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Europe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cLaren, J., "A theory of insidious regional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2):571-608. 2002.

Oates, W., Fiscal Federalism, New York : Harcourt Brace. 1972.

Oates, W.,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ure 31(3) : 1120-1149. 1999.

Organiz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2009a),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 Developments in 2008, Paris : OECD.

OECD, Factbook 2009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 OECD. 2009.

OECD, Recent Trends of Export Restriction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AD/TC/WP(2009)3.

OECD, Reducing Fishing Capacity:Best Practices for Decommissioning Schemes, Paris : OECD.

OECD, Enviro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 Developments in Paris : OECD.

OECD, ransition to Responsible Fisheries: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Paris : OECD. 2007.

Ossa, R., "A 'New Trade Theory' of GATT/WTO negotiations", Geneva : WTO, Staff Working Paper N° ERSD-2009-08.

Roessler, F., "The innstitutional balance between the judicial and political organs of the WTO', in Bronckers, M. and Quick, R. (eds),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Essays in Honour of John H. Jackson, The Hague : Kluwer International Law : 200-338. 2000.

Ruta, M., "Economic Theories of Political (Dis) integration",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1) : 1-21. 2005.

Ruta, M., "Lobbying and (de)centralization", Public Choice 144(1) : 275-291. 2010.

Shafaeddin, M., 'How did developed countries industrialize? The history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the cases of Great Britain and the USA', UNCTAD Discussion Paper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Geneva, Discussion Paper No. 139. 1998.

Sutherland Report, The Future of the WTO: Addressing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New Millenium, Geneva : WTO. 2004.

Valdez, S., An Introduction to Gloval Financial Markets,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07.

William, G. (2000),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vailable at http://wgordon.web.wesleyan.edu/papers/poprospr.htm April 2011.

WTO and UNEP, Trade and Climate Change : A Report by the WTO and UNEP, Geneva: WTO, UNEP. 2009,

WTO, "World Trade Report". 2010.

WTO, "World Trade Report". 2009.

WTO "Appellate Body Report". 1994.

ABSTRACT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ulation of Trade in Natural Resources

Kim, Mie-Jung · Chae, Dae-Seok

This paper has focused on various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ulation to manage trade in natural resources. Much but not all of the emphasis has been on the WTO's role in this area. Although the WTO does not have an agreement specifically regulating trade in natural resources but a number of WTO rules covering goods and services are relevant. These have been analysed in terms of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natural resources markets.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to virtually every aspect of human activity, and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se products, make it vital that governments work together to find common ground and appropriate trade-offs. Such cooperation should aim to ensure sound resource management, equity and mutual gain. Several WTO rules have relevance in relation to the main features of natural resources.

The WTO is part of a much broader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equately defined rul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ilt on shared perception of gain, will contribute to the avoidance of such an outcome. In sum, while the analysis in this paper argues strongly for cooperation, such cooperation should aim to ensure sound resources management, equity and mutual gain.

Keywords : Natural Resources. Regulating Natural Resources Trade, Cooperating Natural Resources Trade.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153~170.

논문접수일 : 2015.06.07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한-우즈베키스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유 승 균**

Ⅰ. 서 론
Ⅱ.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Ⅲ.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현황 및 분석
Ⅳ. 한-우즈베키스탄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국문요약

국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식 관리와 활용방안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최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꾀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에 우즈베키스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입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한-우즈베키스탄 서비스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유입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개인적 역량이 탁월하며, 그들의 빠른 두뇌회전은 세밀한 작업에 적합하고, 이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무역 즉, 서비스무역의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이문화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정책적 지원은 국내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서비스무역, 이문화적응, 외국인근로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 본 논문은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무역보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동국대학교_서울 국제통상학과 초빙교수, E-Mail: trade@dgu.edu

Ⅰ. 서 론

지난 2005년 이후 줄곧 3% 대 이상의 인력 부족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 졌으며, 이로 인해 국내 유입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1]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기업은 높은 임금을 보장하였으며, 이는 재취업으로 이어졌다.[2] 글로벌화를 꾀하며 세계기업을 향해 정진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에는 외국인근로자가 한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진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음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교역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인적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 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개별 특성과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는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의 주요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해체된 이후 CIP 에 소소된 국가들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이 인접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경제발전의 정도는 낮지만 풍부한 자연자원과 시장경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입자원 중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향후 교역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갖추어진 지역이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자원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하여 국내 유입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적응과 그에 따른 기업성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차원에서 국내 취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시하고, 기업 차원에서 인적관리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제도와 법적 지위", 미래인력센터, 1998, pp. 1~7.
2)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적 자본", 미래인력센터, 1998, p. 2.

Ⅱ.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1. 일반사항[3)]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 일부는 아랄 해(海)에 면한다.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지대로서 특히 북서부와 중앙부에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진다.

국토의 대부분이 대륙성기후지대로, 한서의 차가 심하고 연간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기후지대이다. 여름은 길고 무더우며 겨울은 짧고 대체로 온화한 편인데, 남부의 경우 2개월 정도이며 북부는 5개월이나 된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같이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다. 사마르칸트 주(州), 페르가나 주(州), 타슈켄트 주(州) 등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여러 민족 언어가 통용되어 왔으나 19세기 이래 러시아의 강력한 언어동화정책으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구소련 해체에 따른 독립 후 소수민족의 문화, 언어 및 교육을 장려하고, 공식적으로 민족화합정책을 표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즈베크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하여 터키계 언어인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러시아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종교적으로는 인구의 약 88%가 이슬람교도로 수니파가 약 70%이다. 고대에는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8~9세기 이전부터 이어온 샤머니즘의 전통도 문화와 관습에 남아 있다. 이슬람교는 19세기 중반 이후 기독교 제국인 제정러시아와 구소련 체제 하에서 수난을 당하였으나, 최근 이슬람 전통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소비에트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독립 후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 로마 문자체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2001년 현재 학생수는 전체 인구의 50.1%이며, 평균 취학기간은 11.4년으로 문맹률은 0.7%이다.

---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09, pp. 1~2.에서 요약정리하였음.

2. 국민성[4)]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약 88%가 이슬람교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 영향으로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음주의 금지나 여성에 대한 금기 사항도 중동지역처럼 엄하지는 않은 편이다.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근로자와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러시아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왔지만,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살아왔던 덕분에 상업 또한 자연스러운 이들 생활의 주요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은 상관습 특성상 흥정을 매우 좋아한다. 이들은 흥정 없는 거래에는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정 자체를 즐기는 편인데, 흥정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거래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일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괜찮은 기존 거래처가 있어도 새로운 거래처를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거래처를 변경할 때에도 이익이 더 큰 것을 찾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태도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래 계약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한 서류보다는 서로가 주고받는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문서로 남겨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5)]

3. 경제현황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다.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6)]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섬유 및 식품가공업이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

4) 유승균, “외국인근로자의 이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부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5) 김성기, 「우즈베키스탄」, 명성서림, 2008에서 요약정리.

6) 지역경제포커스, "중앙아시아 외국인 농업투자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 2~14.

맺고 있다. 1988년 이후 구소련 공화국간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교역량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자유화, 민영화 법안 채택 등 계속된 경제조치로 1996년에는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이 플러스로 변했다.[7]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약 8%대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형태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중앙아시아 5개국의 GDP 성장률

(단위: %)

년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2010	7.30	-0.47	6.50	9.16	8.50
2011	7.50	5.96	7.40	14.74	8.30
2012	5.00	-0.90	7.50	11.05	8.20
2013	6.00	10.53	7.40	10.24	8.00
2014	4.61	4.10	6.00	10.12	7.00
2015	4.71	4.93	6.00	11.46	6.50

자료 : IMF WEO

우즈베키스탄의 지난 2010년~2014년 간 수출입현황과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입현황을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필요한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운송구간과 운송비용 등 물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표 2>, <표 3> 참조)

<표 2>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입현황

(단위 : 100만 달러)

수출	우즈베키스탄	수입	우즈베키스탄
2010	5557.291	2010	9242.816
2011	5648.244	2011	10179.034
2012	5302.090	2012	11943.570
2013	6261.036	2013	14186.885
2014	5403.936	2014	15033.932

자료: IMF WEO

7) EIU, "Country Risk Service," Uzbekistan, 2015에서 요약정리.

<표 3>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입현황

(단위 : 100만 달러)

수출	우즈베키스탄	수입	우즈베키스탄
2010	1.438	2010	0.021
2011	1.718	2011	0.039
2012	1.766	2012	0.042
2013	1.968	2013	0.053
2014	2.031	2014	0.027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Ⅲ.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현황 및 분석

1. 국내 유입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내 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면서 생산인력 부족은 일부 해소가 되었다. 특히, 저임금 직종 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내국인근로자의 취업비중은 줄어들고 있다(<표 4> 참조).

<표 4> 내·외국인근로자 비중변화

기 간	내국인근로자(일용직) 비중변화	외국인근로자 비중변화
2004년~2008년	40.12% → 36.93% (-3.19%p)	5.21% → 9.33% (4.12%p)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저임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09년 현재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단위 : 명)

전문직종	비전문직종	불법체류자	단기취업	합계
35,291	446,981	223,229	14,709	720,210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자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2008, 노동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p. 3.

2014년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근로자가 약 50만 명, 필리핀근로자가 약 4만 4천 명, 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참조).

<표 6>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495,976	44,526	43,810	30,405	21,512	15,477	15,474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2014에서 재정리.

2. 국내 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력송출・입 MOU를 체결한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일대인 대인면접 및 집단면접 등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근로자 특성, 국내 이문화적응, 국내기업의 직무성과로 구성하였다. 연구조사 방식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변수를 재인용하고, 사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조사 및 집단 면접조사 등의 방식을 이용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5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15일 동안 진행하여 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일반특성

응답자 91명 중 모국어로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76명, 한국어가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려인의 후손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 있어 양국간 문화적 유사성 및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참조)

<표 7>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모국어 특성

(단위 : 명)

	모국어						전 체
	영 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벡어	한국어	기타언어	
우즈베키스탄	-	-	-	76	15	-	91

종교로는 이슬람교가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응답자는 없었는데,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성장했던 지역의 종교적 색채는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어가 유사하다는 특성으로 인한 문화적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8> 참조)

<표 8>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종교적 특성

(단위 : 명)

	종 교					전 체
	기독교	불 교	이슬람교	가톨릭	기타	
우즈베키스탄	6	0	76	9	-	91

국내 취업기간을 살펴보면 2~3년 취업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을 응답한 근로자도 2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한국기업체가 현지인들에게 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9> 참조)

<표 9>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취업기간

(단위 : 명)

	취업기간						전 체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년 이상	
우즈베키스탄	21	40	1	-	6	23	91

업무상 의사소통 언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이 우즈베키스탄어를 익혀서 사용하기보다는 국내어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언어로 한국어에 대한 습득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0> 참조)

<표 10> 국내유입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의사소통 언어

(단위 : 명)

	업무상 의사소통 언어			전 체
	한국어	영어	모국어	
우즈베키스탄	83	8	-	91

3) 분석결과

우즈베키스탄근로자의 이문화적응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문화적응은 직무만족(경로계수 값 = 0.548, p<0.05), 생활문화적응은 직무만족(경로계수 값 = 0.438, p<0.05), 직무적응은 직무만족(경로계수 값 = 0.358, p<0.05)과 직무몰입(경로계수 값 = 0.691,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근로자 특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언어능력은 직무만족(경로계수 값 = 0.318, p<0.05)과 직무몰입(경로계수 값 = 0.161, p<0.05), 종교인식은 직무만족(경로계수 값 = 0.439,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문화인식과 사전교육은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우즈베키스탄근로자 분석결과

연구모형관계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값	p 값	예상 결과	검증 결과
기업문화적응 -〉 직무만족	0.548	0.248	1.716	.039**	채택	채택
기업문화적응 -〉 직무몰입	0.311	0.277	1.122	.262	채택	기각
생활문화적응 -〉 직무만족	0.438	0.216	2.489	.047**	채택	채택
생활문화적응 -〉 직무몰입	-0.117	0.157	-0.746	.456	채택	기각
직무적응 -〉 직무만족	0.358	0.207	1.730	.048**	채택	채택
직무적응 -〉 직무몰입	0.691	0.129	5.355	.000***	채택	채택
언어능력 -〉 직무만족	0.318	0.153	2.077	.038**	채택	채택
언어능력 -〉 직무몰입	0.161	0.078	2.074	.029**	채택	채택
종교인식 -〉 직무만족	0.439	0.122	3.594	.000***	채택	채택
종교인식 -〉 직무몰입	0.024	0.021	1.177	.239	채택	기각
문화인식 -〉 직무만족	0.091	0.177	0.513	.608	채택	기각
문화인식 -〉 직무몰입	0.095	0.085	1.114	.265	채택	기각
사전교육 -〉 직무만족	-0.045	0.099	-0.458	.647	채택	기각
사전교육 -〉 직무몰입	0.046	0.051	0.904	.366	채택	기각

주)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Ⅳ. 한-우즈베키스탄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1. 국내기업 관리자의 인식 제고

국내 유입 외국인근로자의 성과제고를 위한 실증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관리자에게 자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범위는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8)]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능력' 29

8) 표본상의 수집 어려움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다양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명(41.4%)과 '한국어 능력' 28명(40%)이 각각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업무능력과 업무진행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46명(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9명(55.7%)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과 더불어 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됨을 보여 준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7명(81.5%), '외국인근로자들은 대체로 성실하다'라는 응답은 61명(87.2%)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관리자들이 바라보는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적응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21명(30%),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이 44명(62.9%)로 응답하였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관리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인터뷰에서 관리자들은 그들의 장점으로는, 체격조건, 두뇌회전, 높은 학력과 근면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보다 월등한 개인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성장과 성과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내 유입된 다수의 중국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인 개별 역량의 우수성이 국내기업의 성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2. 국내 문화와의 적응 제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귀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59명(84.3%)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싶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용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몽골이 31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조선족) 13명(18.6%), 중국(한족) 9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국가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생활관습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나 국내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인근로자와 동료의 관계 및 상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두 질문 모두 '보통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이 63명(90%)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내 적응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적응이 잘 될 때 기업의 성과제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관습상의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관리자가 59명(84.3%)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이 중요한 관리상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앞서 분석한 내용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기업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적응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국내문화와 그들 문화와의 괴리감이 생길 때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과 하고있는 직무에 대한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근로자의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으로, 이슬람의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관계 형성에 부담을 갖지 않는 성향을 보여 준다. 즉, 국내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의 대인관계와 집단교류에 대한 성향을 잘 이해함으로써 문화를 활용한 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정책 제고

국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과 함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활동하고 귀국한 후 한국 제품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첨병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책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먼저, 국내에 유입된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근로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개별적인 특성과 적응을 유도하고 있을 뿐 집단적인 성격의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특정 국가의 인력들이 국내로 유입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이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둘째,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력송출입에 대한 MOU 국가가 늘어날 필요성과 더불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현재의 체류기간으로는 기업의 생산기술과 노하우, 인적 교류를 통한 관계 등 기술인력으로서의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본국으로 귀환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좀더 유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무역보험공사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현지국과의 제도적 교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입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과 체류연장에 따른 소득의 일정부분을 담보로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의 양산과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국내인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내취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국내 인력 중 인턴쉽 또는 전문가로 양성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로 거듭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국내기업의 시장개척의 첨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한국인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우즈베키스탄근로자의 장점으로는, 체격조건이 좋으며, 두뇌회전이 빨라 세밀한 작업에 적합하고, 높은 학력과 근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보다 월등한 개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들의 특성이 직무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근로자의 경우 사전교육, 언어능력 및 문화인식이 이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익숙한 사용이 국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근로자를 선호하는 기업 관리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근로자의 종교인식은 직무적응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이슬람교를 따르는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관리자의 인식의 적극적인 활용과 성과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가 요구되며, 국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습득 및 지속적인 동화작용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필요한 인적 구성과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담 전문가 육성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며, 국내 체류기간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현지 정부와

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인적 교류 즉, 국내유입된 우즈베키스탄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수의 표본으로 인한 일반화된 오류의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더욱이 국내 관리자들을 통한 설문은 심층적인 이해와 관계설정을 하기에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국내 유입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별국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참 고 문 헌

곽수영 · 강성주, "무역지원 확대를 위한 국내 무역보험 교육의 탐색적 연구",「무역보험연구」제15권 제4호, 2014.

구본희, "주한 외국인노동자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김규남 · 신만수,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종업원 특성에서 개인적 가치 성향에 대한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제30권 제3호, 2001.

김종일 · 이상철 · 이종구 · 설동훈, "국제 노동력의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취업 :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경제와 사회」제 26권, 1995.

노동부 ·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자료, 2008.

박광서 · 손상락, "전문무역상사의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제15권 제1호, 2014.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제도와 법적 지위", 미래인력센터, 1998.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신만수 · 김주희,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조직성과와의 관계",「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1호, 2008.

이경국,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경영교육저널」제15권, 2009.

이혜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한국사회학」제31집, 1997.

정훈, "조직내 갈등관리에 대한 한 · 가 비교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종효명 · 이정환, "중국인 노동자의 조직몰입 : 국내와 중국내 한국기업 취업자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제10권 제2호, 2005.

해외경제연구소,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09.

Allen, N. J. and Meyer, J. P.,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3, 1990.

Al-Meer, "Organizational Commitment: A Comparison of Westerners, Asians and Saudi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Vol. 19(2), 1989.

Andolsek, D. M. and Stebe, J., "Multinational Perspectives on Work Values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Vol. 4(2), 2004.

Baligh, H. H., "Components of culture: Nature, interconnections, and relevance to the decisions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Management Science*, Vol. 40(1), 1994.

Banai, Moshe and Reisel, William D., "Expatriate Managers' Loyalty to the MNC: Myth or Realit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4(2), 1993.

Boyd, M.,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3(3), 1989.

Catherine, K.,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Withdrawal Behaviors in USA and India: Does Commitment Make a Dif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Gross Cultural Management,* Vol. 3(1), 2003.

Chen, Chung-Jen, "The Effects of Knowledge Attribute, Alliance Characteristics, and Absorptive Capacity on Knowledge Transfer Performance," *R&D Management*, Vol. 34(3), 2004.

Durham, M., "Culture and scotosis: Intercultural concerns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ustral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5, 1988.

EIU, "Country Risk Service," Uzbekistan, 2008.

Erez, 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ystems in organizations, and their relationships to cultural value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The case of Japanese corporation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Vol. 41(1), 1992.

Hofstede, G., "Motiv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 Do American Theories Apply Abroad?," Organizational Dynamics, 1980.

Hyun, K. J., "Sociocultural change and traditional values: Confucian values among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5, 2001.

Mathieu, John E. and Hamel, Karin, A., "Causal Model of the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4(3), 1989.

Minbaeva, D. et. al., "MNC knowledge transfer, subsidiary absorptive capacity, and H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4(6), 2003.

O'Reilly, C. and Chatman, J.,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the effects of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1(3), 1986.

Parker, B. and McEvoy, G. M., "Initial examination of a model of intercultur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7(3), 1993.

Pothukuchi, V., Damanpour, F., Choi, J., Chen, C. C. and Park, S. H., "National and Organizational Culture Differenc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3(2), 2002.

Sathe, V., "Implication of Corporate Culture: A Managers Guide to Action," *Organizational Dynamics*, Autumn, 1983.

osik, J. J. and Jung, D. I., "Work-group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n collectivistic and individualistic cultur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2(1), 2002.

Suzuki, S., "Cultural transmiss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pa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atterns in intergroup contex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4(1), 1997.

Vroom, V. H., "The Effect of Attitude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Goals," *Human Relations*, Vol. 13, 1960.

Ward, C. and Kennedy, A., "Locus of control, mood disturbance, and social difficulty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6(2),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ervice Trade between Korea-Uzbekistan

YOO, Seung-Gyun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diverse culture society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in labor resources for service trade.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connection of cross-cultural adaptation and the work outcome of Uzbekistan employees character within Seoul and capital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Uzbekistan employe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firm. Additionally, in a government level, each Uzbekistan workers' characteristics differently influence which can help develop manage Uzbekistan workers by awareness. And Korean employees and managers are working with Uzbekistan workers this study will help overcom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a government level.

Keywords : Uzbekistan employees, cross-cultural, service trade, culture society, labor resources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171~194.

논문접수일 : 2015.05.19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실증 연구*

오 문 갑**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중국은 WTO 가입 후 물류산업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제4자 물류기업은 한정된 경영자원을 핵심역량에 투입하고 비 핵심활동인 물류활동은 전문물류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었으며 물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물류의 수요 또한 증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 제4자 물류에 대해 정부와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에서 제4자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화주기업 및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에서 제4자 물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제4자 물류기업의 중국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 형성요인과 성과측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물류기업 규모별로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해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검증함에 있다.

주제어 : 제4자 물류, 중국물류산업, 파트너쉽 성공요인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6310

**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E-Mail: kiaomk@hanmail.net

Ⅰ. 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를 촉진시켰으며 소비자들 역시 기업에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양질의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화주기업의 상물분리 운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화주기업은 한정된 경영자원을 핵심역량에 투입하고 비 핵심활동인 물류활동은 전문물류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었으며 물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물류의 수요 또한 증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3자 물류(the Third Party Logistics: 3PL)는 제4자 물류(the Forth Party Logistics: 4PL)보다 고객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제3자 물류는 전문화된 물류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객들은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3자 물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의 물류에 대해서만 효과적일뿐 경제발전 과정과 전자상거래 과정의 물류 장애를 해결하는 방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21세기의 산업 경쟁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일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간의 경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제4자 물류는 기업의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의 통합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물류기업들은 공급사슬(Supply Chain Management: SCM) 통합수단으로서 제4자 물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비용절감과 서비스수준 제고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제4자 물류는 탐색 및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중국 제4자 물류에 대한 연구도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자 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인식도 차이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정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인 중국시장의 진출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을 근거로 작성한 설문항목을 토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4자 물류의 전반적인 개념과 중국 제4자 물류의 현황과 운영모델 등을 이해하고 중국에서 제4자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국 제4자 물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자 물류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내 화주기업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물류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본 연구가 차별성을 가지도록 화주기업들과 제4자 물류기업간의 파트너쉽 성공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제4자 물류의 정의[1)]

제4자 물류의 개념은 미국 Accenture 아웃소싱 컨설팅회사(구 앤더슨컨설팅)가 1996년 제창하고 표기한 것으로 제4자 물류를 “전체적인 공급사슬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과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사슬 통합자”라고 정의하였다. 제4자 물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요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자 물류는 전체적인 공급사슬의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사슬이다.[2)]

둘째, 제4자 물류는 통합운영자가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고객 회사의 거점 대 거점 형식의 연결방식으로 공급 사슬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3)]

셋째, 제4자 물류는 자신의 자원, 능력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상호보완 서비스를 위한 공급사슬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자이다.[4)] 각각의 정의에는 공급사슬의 제공 방식과 제공자의 권한 범위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제4자 물류 제공자가 종합적인 공급사슬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물류활동이 복잡해지고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물류산업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공급사슬관리의 성과와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형성하여 제4자 물류기업을 통해 공급 사슬을 통제

1) Lisa M. Ellrarn and Martha C. Cooper, ″Supply Chain Management, Partnerships and the Shipper-Third Party Relationshi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Vol.1. No.2, 1990, p.1.
2) John Gattorna, Strategic Supply Chain Alignment, Gower Publishing Limited, 1998, p.12.
3) 周丹, “縫隙中生存的我國第四方物流市場的破局分析”, 「産業觀察」, 2002, p.22.
4) 張新・田澎, “第四方物流及對物流規划功能的外包”, 「工業工程管理」, 2002, pp.38-40.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사슬의 통제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제4자 물류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화주기업이나 제3자 물류기업은 스스로 공급 사슬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자원,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류기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제4자 물류기업은 기본적으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서 공급사슬의 관리 및 솔루션 제공, 변화관리능력(Change Management Capabilities),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류기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고객화주들은 제3자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물류프로세스의 개선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물류서비스 제공자는 물류혁신 프로세스의 개선을 자신 있게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어진 과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고객화주들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개선을 하여 줄 수 있는 제3자 물류서비스 제공자를 갈망하게 되었는데, 이에 제4자 물류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물류전략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제3자 물류서비스의 한계성이 바로 제4자 물류서비스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다. 즉 제3자 물류서비스가 e-Business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또한 물류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물류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에 대한 정의를 종합할 때, 양자 간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3자 물류기업이 창고나 수송 분야를 기본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인 데 반하여 제4자 물류기업은 공급사슬관리, 컨설팅, 전체적인 물류네트워크 개선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아웃소싱과 인 소싱(in-sourcing)의 이점을 통합한 형태의 전문물류업체로서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3자 물류는 20세기를 훌쩍 넘어버린 지금까지도 여전히 실무상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부분 국내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 해당기업의 물류관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시스템의 연속이고도 전체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4자 물류가 필요해졌다.

많은 물류전문업체들이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고 창고·수송·배송관리업무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류정보기술의 개발과 관리, 고객서비스, 수주관리 등을 포함한 공급 연쇄상 모든 영역의 물류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 곧 그 한계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의 제3자 물류 수준은 '단순물류'와 '외주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화주기업들이 경비절감에만 치중하고 단기 수익증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고객서비스 향상

이 요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제3자 물류의 발전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공급체인망(SCM) 개념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화주(제3자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를 관리해주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 기업과 공급자의 기능을 동기화하여 자재, 정보, 서비스 등의 흐름을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공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요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달은 제4자 물류 등장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공급사슬영역이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신속한 배송을 요구하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휴, 곧, 제4자 물류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제4자 물류는 전자상거래 성공의 관건인 시간단축의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자 물류(4PL)는 3자 물류(3PL)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에 SCM(공급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등 물류컨설팅과 같은 IT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제4자 물류는 기존 전문물류업체(제3자물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연쇄에 대하여 탁월하고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기존의 전문물류업체보다 역할이나 기능이 한 단계 더 진일보 한 것이다. 제4자 물류는 따라서 '제3자 물류의 완성', '완벽한 제3자 물류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물류업계의 패러다임을 갈아치우고 있다. 아직 제4자 물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변화는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직까지 국내 제3자 물류 업체가 큰 수익이나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터에 제4자 물류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물류업체가 곧 4자 물류이고 기존의 제3자 물류 서비스에 IT, 기술, 전략적 컨설팅을 가미한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면 제4자 물류도 가시화된 형태로 굳어질 것이다.

2. 선행연구

파트너쉽의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학자들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화주 기업들이 파트너쉽 형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 서비스의 수준 향상, 핵심 업무의 집중화, 창고 이용률의 향상, 물류관련 투자비용의 절감, 물류인력의 절감 등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용록(2001)[5]은 아웃소싱을 통해 시장조사와 연구 개발에서 소비에 이르는 가

상기업의 모든 공급망관리를 총괄하는 기업이 물류중심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제4자 물류라고 정의하면서 핵심경쟁 산업에의 집중, 인적자원 감소, 조직의 유연성 확보, 막대한 자본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제4자 물류의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송용종(2004)[6]은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있어서 국제사이버무역과 국제물류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아웃소싱의 강화, 기업 핵심역량 중심의 네트워크화 추진, 기업체의 기대효과 등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석민(2006)[7]은 3자물류가 한 기업의 물류업무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제4자 물류는 공급체인상의 여라기업의 물류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4자업체는 스스로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비용절감보다는 가치증대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트너쉽의 형성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학자들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화주 기업들이 파트너쉽 형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 서비스의 수준 향상, 핵심 업무의 집중화, 창고 이용률의 향상, 물류관련 투자비용의 절감, 물류인력의 절감 등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제4자 물류에 관한 국내연구는 오문갑(2006)[8], 허봉(2008)[9] 그리고 최석범 외 1인(2009)[10] 등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중국의 제4자 물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제4자 물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毅(2004)[11]는 국제 물류시장에서 제4자 물류가 발전단계에 있지만 중국 물류시장에서는 제3자 물류의 단계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제4자 물류와 제3자 물류의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제4자 물류의 발전모델과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楊宝軍외 1인(2003)[12]은 중국의 가치사슬과 전략관리에 따라 제4자 물류의 필요

---

5) 최용록, "국제물류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기능과 역할",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1. 9 .pp.22-33.

6) 송용종,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5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04. 6. pp.30-43.

7) 임석민, "3자물류와 4자물류에 대한 조망", 「유통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유통학회, 2006.3, pp.89-112.

8) 오문갑,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3자 물류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실증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12. pp.22-67.

9) 허봉, "한국 물류기업의 중국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제3자 물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0) 최석범 · 박경희,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1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3, pp.191-222.

11) 李毅, "第四方物流在我國發展的研究", 「商業研究」, 2004.3.

12) 楊宝軍 · 李華增, "第四方物路剖析", 工業工程与管理, 2003.

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급사슬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제4자 물류의 역할과 지위 및 제4자 물류 공급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분석하였다.

陳銘(2004)[13]은 가상공급사슬의 제4자 물류 모델에 근거하여 제4자 물류는 공급사슬을 재통합시킨 정보 및 동시에 발전시킨 업무를 통해서 더 나아가 가상공급사슬 조직을 실현한 논리 구성을 제시하였다.

중국내에서는 중국의 4자 물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국의 제4자 물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뢰에 의한 관계는 매우 높은 가치를 말하며, 참여자는 그와 같은 관계에 몰입하게 된다.[14] 신뢰는 파트너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 불평등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교환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신뢰는 몰입의 주요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15]

Kumar(1996)는 신뢰를 파트너기업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신뢰의 도약을 통하여 각 파트너기업들은 상호번영(Madhok)에 관심을 가진다. 파트너기업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보완적 능력, 시장지위, 파트너기업의 재무적 상황, 경영철학, 규모 등이고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기업 간의 조화, 상호보완성, 문화, 신뢰, 그리고 몰입도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파트너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조직 간의 조화, 신뢰, 몰입도, 그리고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협력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중에서 신뢰와 몰입도가 결여될 때 파트너 기업 간 정보교환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된다. 전통적으로 제휴는 2개 기업 연합(bilateral alliance) 형태가 전형적이다. 이러한 제휴는 전략의 연합, 목표 설정, 그리고 성과통제 등에 용이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의 위험이 높아지고 파트너기업들 간에 많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네트워크 연계 또한 더욱 민감해 지고 있다.[16]

Murphy와 Kok(2000)은 성공적인 조직은 기업 간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파트너 기업 간에 차이는 조직 간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신뢰성과 유연성의 가치가 강조

---

13) 陳銘, "虛擬, 柔性, 協同 : 4PL的虛擬供應鏈創新体系", 商業經濟与管理, 2004.

14) 최진석,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성공을 위한 외주업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00, pp.11-15.

15) Ganesan, S. and Hess, R., "Dimensions and level of trust: Implications for commitment to a relationship," Marketing Letters, 1997, pp.439-448.

16) Kumar, R. "The Power of Trust in Manufacturer-Retailer Relationship," Harvard Business Review, 1996, pp.92-106.

되며, 명령과 통제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 방향과 계획 범위의 연계, 목적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대처, 공동 운영절차 및 임무수행에 대한 확립, 규칙・지침・규제 등의 작용, 조직 분위기와 업무상 용어에 대한 창출, 산업・부문・국가문화의 교두보, 전문성과 노하우의 공유, 규모와 시장지배력의 대처, 정책 및 통제에 관한 응집력 창출 등의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17]

따라서,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몰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의 성과가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파트너쉽 결정시 제4자 물류기업은 계약초기에 화주기업들에게 파트너쉽의 결정을 유도하는 운영적 요인, 의사소통 요인, 전략적 요인, 파트너요인, 정보기술 활용요인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화주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협력 사업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파트너 기업 간에 국제협력 사업을 체결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파트너 기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협력관계는 단기간 내에 종결되거나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기도 전에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사업에서 파트너 기업의 진실성 및 신뢰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8]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써 상대방이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의지를 대변한다.[19]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기업조직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행위보다는 공동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결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20]

---

17) Murphy, A. and G. Kok, Leap into the Future "Managing Differences", EFQM Conference 7th, KPMG Alliances, 2000, pp.1-11.

18) Wildeman, L. "Alliance and Networks : The Next Generation," Int JTechnology Management, Vol.15, 1998, pp.96-108.

19) Hosmer, L. T. "Trust :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0, No.2, 1995, pp.379-403.

20) J. C. Anderson and J. A. Narus, op.cit., pp.42-46.

Ⅲ. 연구모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파트너쉽 관련이론에 대한 연구들[21]과 파트너쉽 성과 및 제4자 물류 서비스를 통한 성과에 관한 연구[22] 등을 토대로 연구의 모형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화주기업이 제4자 물류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요인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운영적 요인으로서 제4자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계약사항에 조정사항과 위약금 사항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한다. 파트너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상대기업에 대한 업무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것도 필수적 사항이며, 사전 계약조건에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대한 조항을 둠으로써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23] 둘째, 의사소통 요인으로서 파트너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의사소통 구조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신뢰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방적 구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 시 업무수행 절차나 방침이 공정하게 집행되어 의사결정시 공평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24] 셋째, 파트너 요인으로서 아무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4자 물류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사의 문화나 구조와 적합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파트너쉽이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조직구조나 문화가 유사함과 함께 최고 경영자가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다. 넷째, 전략적 요인으로서 중국의 화주기업은 제4자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유연성을 갖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제4자 물류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경쟁력과 상황에 따른 원활한 대응능력 등이 파트너쉽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1) Oliver, C. "Determination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Integration and future dire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15, 1990, pp.241-250.

22) Chung, Y. S. An Empirical study of Sucess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ystem Outsourcing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96, pp.34-40.

23) Fitzgerald, G. and Wilcocks, L, "Contracts and partnership in the outsourcing of I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 1994, pp.43-60.

24) Tate, Karen "The elements of a succesful logistics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Management, Vol.25, 1996, pp.7-13.

<그림 1> 제시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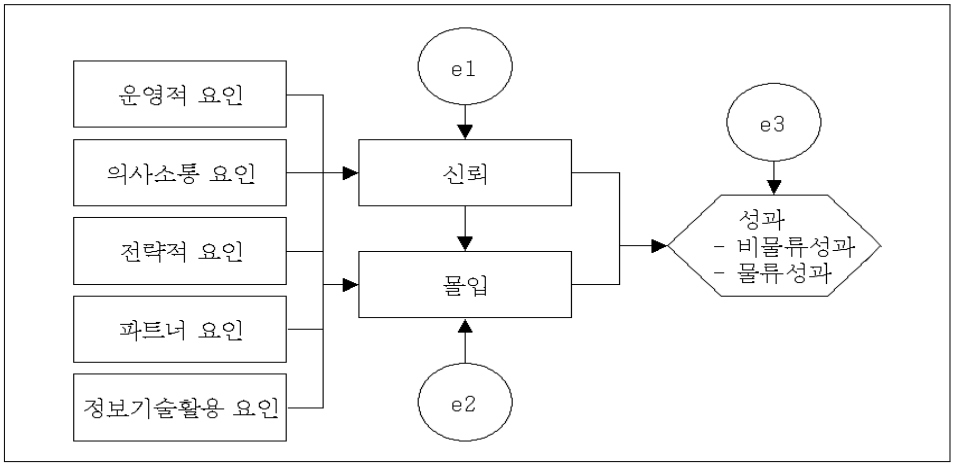

Ⅳ. 실증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4자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데 있어 화주기업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 내에서 제4자 물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4자 물류기업들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국 화주기업들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화주기업들이 제4자 물류기업의 활용전략을 전통적인 아웃소싱 전략에서 더 나아가 물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제4자 물류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화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송서비스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중국 화주기업들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화주기업명단을 입수하여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화주기업들의 응답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물류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화주업종들은 섬유, 화학, 전자, 제조, 유통업종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중국 제4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파트너쉽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적, 논문, 신문, 인터넷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분석의 준거로 삼았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제4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파트너쉽 형성요인 및 결정요인에 대한 관련변수를 설정하였다. 둘째, 실증연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중국의 제4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파트너쉽 형성요인 및 결정요인을 토대로 작성한 설문지를 중국 화주기업들이 많이 있는 중국 산동성 지역의 화주기업들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척도는 명목척도와 리커트식 5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으로는 자료입력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파트너쉽 형성요인이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2. 조사 분석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파트너쉽 형성요인 및 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은 n개의 관측 가능한 양적 변수들 사이의 공분산관계 내지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factor)이라고 불리는 관측되지 않는 가설적인 변수를 찾는 다변량 분석법이다.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변수들끼리 모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변수 n개보다 요인의 수는 p개로 작아지는 변수 축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개의 변수로 측정된 자료를 변수들 간에 공분산관계 및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축소 및 요약을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타당성(Validity) 검증의 일부로서 많은 항목들이 어떠한 개념이나 현상을 측정하였을 때 과연 각 변수들이 모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측정한 개념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아이겐 값(eigen value)은 요인 부하량과 관련하여 개별 요인에 대한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자승하여 더한 값이다. 따라서 아이겐 값은 개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아이겐 값을 설명변인의 수로 나누어주면 설명변량이 산출된다. 요인회전은 최초의 요인행렬이 산출된 후 다시 요인을 단순구조로 만들고 순수한 요인들을 얻기 위해 요인축을 회전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 파트너쉽 형성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은 운영적요인, 의사소통 요인, 전략적 요인, 파트너 요인, 정보기술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쉽 결정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은 결정요인과 성과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상의 원인 및 결과로 여겨지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파트너쉽 형성요인, 결정요인, 성과모형과 같은 직, 간접적인 연결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모형의 경우 잠재변수(Latent variable)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측정모형의 경우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해주는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서 41개의 측정항목(관측변수)이 사용되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가 함께 쓰인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Anderson과 Gerbing에 의해 제안된 Two-step approach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관계를 알아본 후, 다시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표 1> 파트너쉽 형성요인 기술적 통계 분포

세부내용			평균	표준편차
운영적요인	업무 이해도	1.제4자 물류기업이 귀사의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3.89	0.66
		2.제4자 물류기업이 귀사의 사업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3.88	0.67
		3.제4자 물류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3.76	0.896

세부내용			평균	표준편차
	평 균		3.84	0.73
	계약 사항	4.제4자 물류기업과의 물류계약 체결 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 금 조항이 있습니까?	3.72	0.74
		5.상황변화에 따른 계약조정사항 규정이 있습니까?	3.58	0.82
	평 균		3.65	0.78
전체평균			3.77	0.75
의사소통요인	커뮤니케이션	6.제4자 물류기업과 핵심지식에 대한 정보까지도 공유하고 있습니까?	3.61	0.72
		7.제4자 물류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3.64	0.79
		8.제4자 물류기업과의 대화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3.59	0.78
		9.문제 발생시 대화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3.49	0.78
	평 균		3.58	0.77
	공정성	10.제4자 물류서비스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있습니까?	3.72	0.74
		11.귀사에서 체계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제4자 물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3.58	0.82
		12.제4자 물류기업과의 이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3.76	0.82
		13.제4자 물류기업의 업무절차와 방침이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39	0.77
		14.주요의사 결정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3.72	0.64
	평 균		3.63	0.76
전체평균			3.61	0.76
세부내용			평균	표준편차
전략적요인	경쟁력	15.제4자 물류기업의 자산(인력, 부동산) 경쟁력이 있습니까?	3.59	0.78
		16.제4자 물류기업과 보완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3.76	0.65
		17.제4자 물류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까?	3.25	0.79

세부내용			평균	표준편차
	평 균		3.53	0.74
	유연성	18. 제4자 물류서비스 이용으로 귀사의 다른 사업부분에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3.58	0.82
		19. 제4자 물류기업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3.61	0.72
		20. 제4자 물류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64	0.79
	평 균		3.61	0.78
전체평균			3.57	0.76
파트너요인	유사성	21. 제4자 물류기업에서 귀사가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3.25	0.79
		22. 서로의 조직문화가 유사합니까?	3.35	0.82
		23. 제4자 물류기업에서 귀사의 기업 문화 환경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3.49	0.78
	평 균		3.36	0.80
	최고 경영자 의지	24. 최고경영자가 물류서비스 계약체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3.58	0.82
		25. 최고경영자는 제4자 물류전문서비스업 활동이 최적의 물류 관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3.39	0.77
		26. 최고경영자가 전문물류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3.64	0.79
	평 균		3.54	0.79
전체평균			3.45	0.79
정보기술요인	EDI 활용	27. 제4자 물류기업과 EDI를 통해 서류를 교환하고 있습니까?	3.15	0.87
	물류정보 기술활용	28. 제4자 물류기업의 물류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3.45	0.86
전체평균			3.30	0.86

<그림 2> 최종 경로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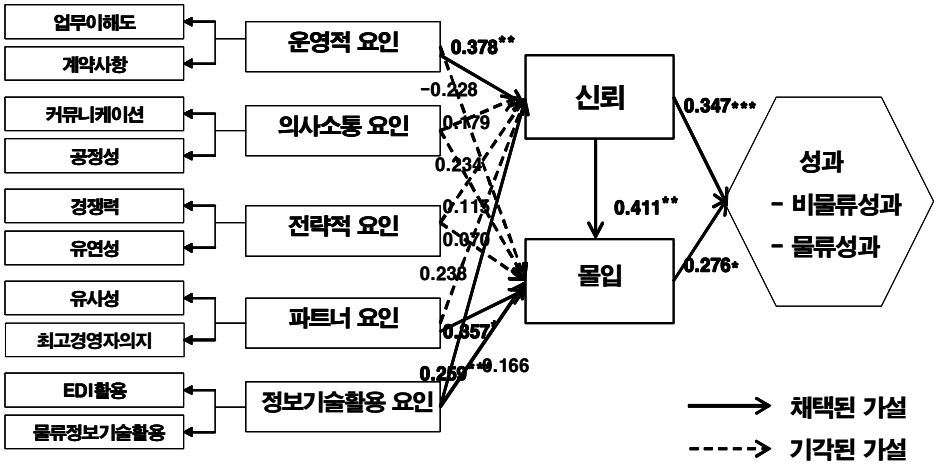

3. 가설검증결과의 종합

1) 가설검증결과의 채택 및 기각이유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의 논의 정리는 < 표 2 > 에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이 운영적 요인, 의사소통 요인, 전략적 요인, 파트너 요인, 정보기술 요인, 신뢰와 몰입의 관계, 성과 등 일곱 가지의 구성개념과 가설의 채택과 기각 사유에 대해 가설검증결론을 정리하였다.

<표 2> 가설검증결과의 논의 정리

구성개념	검증결과	논 의
운영적 요인	H1:채택	제4자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업무절차를 이해하여, 계약 체결 시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조항들이 단기적인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H2:기각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이 성공적인 관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트너쉽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시간, 에너지, 경영자원을 충분히 집중시키려고 하는 몰입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요인	H3:기각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 간에 커뮤니케이션과 공정성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요인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신뢰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지 못 한 것이다.
	H4:기각	양 당사자 간에 장기적인 몰입의 파트너쉽을 높이기 위해서 몰입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파트너쉽 경험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요인	H5:기각	중국의 화주기업들이 제4자 물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략적 요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요인	H6:기각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의 경쟁적 우위는 원가우위와 차별화 우위로 확보되는데 이러한 전략적 요인들이 결여된 것으로 보며 중국 화주기업들의 경영전략 역사가 일천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파트너 요인	H7:기각	양 당사자 간에 파트너 요인은 문화적 유사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결여되어서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	검증결과	논 의
	H8:채택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 간에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유사성과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당사자 간에 시간, 에너지, 경영자원을 충분히 집중시켜 몰입의 파트너쉽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기술 요인	H9:채택	양 당사자 간에 정보기술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정보기술 요인은 무엇보다 양 당사자 간에 신뢰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H10:기각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 간에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몰입의 파트너쉽을 강화시키고,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기업의 정보기술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사업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기술의 노출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몰입의 파트너쉽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신뢰와 몰입의 관계	H11:채택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 기업 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뢰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몰입의 파트너쉽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과	H12:채택	중국의 화주기업은 성과 측면에서 제4자 물류기업과의 관계를 신뢰의 파트너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파트너쉽의 형성이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H13:채택	중국의 화주기업들은 장기적인 파트너쉽의 형성 측면에서 몰입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양 당사자 간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증결과의 종합

<표 3 >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

구성개념	가 설	결과
운영적요인	H_1 : 제4자 물류기업의 운영적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2 : 제4자 물류기업의 운영적 요인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의사소통요인	H_3 : 제4자 물류기업의 의사소통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4 : 제4자 물류기업의 의사소통 요인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전략적요인	H_5 : 제4자 물류기업의 전략적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6 : 제4자 물류기업의 전략적 요인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파트너요인	H_7 :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8 :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 요인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정보기술요인	H_9 : 제4자 물류기업의 정보기술 요인은 신뢰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0} : 제4자 물류기업의 정보기술 요인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신뢰와 몰입의 관계	H_{11} : 제4자 물류기업의 신뢰의 형성은 몰입의 파트너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성과	H_{12} : 제4자 물류기업의 신뢰의 형성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_{13} : 제4자 물류기업의 몰입의 형성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물류시장에서 제4자물류 파트너쉽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로서, 본 연구의 기여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제4자 물류기업의 전략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가 곧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가정 하에서 중국 화주기업들의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인식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실무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산동성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제4자 물류기업들의 진출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파트너쉽 형성요인이 파트너쉽 결정요인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중국 내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 간에 파트너쉽이 단기적 비용절감 위주의 아웃소싱 전략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으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밝힌 점이 본 연구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물류시장에서 물류 파트너쉽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로서, 본 연구의 기여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제4자 물류기업의 전략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가 곧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가정 하에서 중국 화주기업들의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인식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실무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산동성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제4자 물류기업들의 진출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파트너쉽 형성요인이 파트너쉽 결정요인 및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중국 내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 간에 파트너쉽이 단기적 비용절감 위주의 아웃소싱 전략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으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밝힌 점이 본 연구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형성요인들을 파악한 후, 그 파트너쉽 형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물류 파트너쉽 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최적의 물류 파트너쉽 형성요인과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물류 파트너쉽 형성요인이 파트너쉽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물류 파트너쉽 결정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의 산동지역에서 제4자 물류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화주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트너쉽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 형성요인을 운영적 요인, 의사소통요인, 전략적 요인, 파트너 요인, 정보기술 요인으로 한정하였다. 파트너쉽 결정요인은 신뢰와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국 물류시장의 경우 파트너쉽 형성요인에 있어서는 운영적 요인(업무 이해도, 계약사항), 의사소통 요인(공정성,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요인(유연성, 경쟁력)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파트너요인(최고경영자 의지, 유사성), 정보기술 요인(물류정보기술 활용, EDI활용)은 보통 정도로 나타나 파트너쉽 형성에 있어서 운영적 요인과 의사소통요인, 전략적 요인이 파트너요인 및 정보기술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트너쉽 형성요인 세부항목 중에서도 업무 이해도와 계약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정성, 유연성, 커뮤니케이션, 최고경영자 의지, 경쟁력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는 제4자 물류기업이 화주기업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어느 한 파트너 측의 입장만 반영되기보다는 성과에 대한 공평한 분배와 절차상의 공정성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상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계정립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쉽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신뢰와 몰입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신뢰가 몰입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보여 중국에서는 신뢰가 몰입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쉽 결정요인임이 밝혀졌다. 성과측면은 비 물류성과인 파트너쉽 성과보다 물류관리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국의 화주기업들은 제4자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파트너쉽 본연의 성과인 관계만족도보다는 물류관리 부분의 성과에 더 큰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4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신뢰의 형성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서, 상대편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동과 상대방이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기대,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의지를 대변한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기업조직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행위보다는 공동노력으로 획득되는 결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뢰에 의한 관계는 제4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관계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양측이 관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뢰는 제3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단기적으로 불평등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신뢰는 몰입의 주요 결정 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내 화주기업과 제4자 물류기업의 파트너쉽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교역규모의 확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역이 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러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늘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중국의 생산품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물류 시스템화의 표준화를 통해 물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4자 물류기업들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국내 기업에서 화주기업과 제4자물류기업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4자 물류기업의 한국적 파트너쉽 형성요인의 모델 및 전문물류인력 육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현지, “정보화시대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의 비교연구”, 「물류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01.3.**

권영철, “국제합작제휴의 파트너쉽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경영저널」, 제2권, 4호, **2001.6.**

김종칠 · 박재용, “제3자 물류서비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9.**

송용종,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5권, 대한경영교육학회, **2004. 6.**

오문갑, “중국의 화주기업과 제3자 물류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실증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12.**

이충열, “제4자 물류의 유용성과 도입”, 「물류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물류학회, **2001.3.**

임석민, “3자물류와 4자물류에 대한 조망”, 「유통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유통학회, **2006.3.**

최석범 · 박경희, “중국 제3자 물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1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3.**

최용록, “국제물류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기능과 역할”,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1. 9.**

박명섭, “국제물류의 이해”, 법문사, **2003.**

박명찬, “중국기업의 제3자 물류선택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5.9.**

Fitzgerald, G. and Wilcocks, L., “Contracts and partnership in the outsourcing of I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 1994.

Ganesan, S. and Hess, R., “Dimensions and level of trust: Implications for commitment to a relationship,” Marketing Letters, 1997.

Hosmer, L. T. “Trust :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0, No.2, 1995.

Johnson, J. L. Cullen, J. B., Sakano, T. and Takenouchi, H. Setting the Stage for Trust and Strategic Integration in Japanese-U.S. Cooperative Allia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7, No. 5, 1996.

Tate, Karen “The elements of a succesful logistics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Management, Vol.25, 1996.

Wildeman, L. “Alliance and Networks: The Next Generation,” Int. JTechnology Management, Vol.15, 1998, pp.96-108.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Partnetship between Shippers and Forth-Party Logistics Providers in China

Oh, Moon-Kap

There have been many advances in China's logistics industry after WTO accession, the situation is sti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proportion of GDP, logistics cost increases, which acts as a burden on the Chinese economy. Fourth party logistics company limited financial resources were to be put on their core competencies and non-core activities of logistics activities were out sourced to specialized logistics companies to outsource logistics a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logistics needs of logistics also make soy increase accordingly It w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fourth party logistics in China by providing a solution for companies and governments for China to present the fourth party logistics problems of government and logistics industries, and introducing a fourth party logistics in China. China will contribute to and promote the advancement of Korea the fourth-party logistics companies. In addition, as a fourth-party logistics companies and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logistics companies significant differences verified whether the company's growth strategy by size.

Keywords : 4PL logistics , China industry , Partnetship Success factor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pp. 195~212.

논문접수일 : 2015.06.05
심사완료일 : 2015.06.17
게재확정일 : 2015.06.20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관한 연구*

손 용 정**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원산지 결정기준
Ⅲ.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Ⅳ.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FTA 원산지규정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미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체결될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9개의 FTA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4-5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인도 CEPA가 4.07로 원산지기준이 가장 엄격한 FTA로 그리고 한・터키 FTA가 5.04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느슨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터키 FTA는 WO, RM, TECH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제어 : 엄격성,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2511]

** 주저자,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연구교수, E-Mail: 01046330773@hanmail.net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확산 추세, 높은 대외의존도, FTA자체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

2015년 4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 발효건수는 399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이 2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9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5%에 해당하는 349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중 중 4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관세철폐만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원산지 규정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FTA는 전 세계의 전반적인 무역자유화가 확립될 때까지 회원국에 대한 상호특혜를 부여하면서, 역외국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원산지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양허와 더불어 FTA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쟁점의 하나이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크게 원산지 판정에 대한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원산지규정은 회원국의 산업구조와 분업구조 그리고 비회원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중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업계의 로비, 정보의 부족,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엄격한 요건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관련 여러 연구 분야 중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원산지 규정을 제시하거나,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체결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연구 향후 체결될 FTA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활용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4년 2월 현재 총 9개의 자유무역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을 체결하여 총 46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콜롬비아와의 FTA는 2012년 6월, 호주와는 2013년 12월 협상이 타결되어 국내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6개의 FTA(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캐나다)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협상재개 여건조성중인 4개의 FTA(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4개의 FTA 11개국에 대해 협상준비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칠레	1999년 12월 협상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EFTA(4개국)	2005년 1월 협상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인도	2006년 3월 협상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EU (27개국)	2007년 5월 협상출범, 2009년 7월 협상실질타결 ,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사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페루	2009년 3월 협상개시, 2010년 8월 협상타결,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	2006년 6월 협상개시, 2007년 6월 협정서명, 2010년 12월 추가협상타결, 2011년 2월 추가협상 합의문 서명, 2012년 3월 15일 발효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터키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년 4월~2012년 3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호주	2009년 5월 협상개시 선언, 총7차례 협상 개최(2009년 5월, 8월, 11월, 2010년 3월, 5월, 2013년 11월, 12월)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선언,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2014년 4월 8일 공식서명, 2014년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2008년 3월 제13차 협상개최, 2013년 11월 제14차 협상 재개, 2014년 2월 11일 협상타결선언, 2014년 6월 12일 가서명, 2014년 9월 23일 정식서명, 2014년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월 1일 발효
타결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12월, 2010년 3월, 6월, 10월, 2011년 10월, 2012년 4월), 2012년 6월 25일 협상타결 선언, 2012년 8월 31일 가서명,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
	터키(서비스·투자협정)	2013년 8월-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2014년 9월 가서명
	중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4년 11월 10일 협상타결선언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개최, 총 4차례 협상, 2010년 7월 정상회담, 2010년 8월, 2011년 2월 통상장관회담,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월, 10월), 2014년 11월 15일 협상 타결선언, 2014년 12월 22일 가서명
	베트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 개시 선언, 2012년 9월 제1차 협상 개최, 2013년 5월 제2차 협상 개최(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년 12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협상진행	인도네시아	20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3월 28일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73차례 협상 개최(2012년 7월, 12월 / 2013년 5월, 7월, 9월, 11월 / 2014년 2월)
	한·중·일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년 5월- 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 선언, 2013년 3월 제1차 협상 개최, 총 6차례 협상 개최(2013년 3월, 7-8월, 11월 / 201년 3월, 9월, 11월)
	RCEP	2011년 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6차례 협상 개최(2013년 5월, 9월 / 2014년 1월, 3-4월, 6월, 12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협상재개 여건조성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총 9차례개최, 동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협의 진행 중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F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재개, 2008년 6월 제2차 협상개최
	GCC (6개국)	2007년 11월 사전협의개최, 총 3차례협상개최(GCC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우만, 바레인)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MERCOSUR (4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2009년 7월 무역협정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체결(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가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2009년 8월 공동연구 개시, 2010년 8월 연구 종료
	중미 (6개국)	2010년 10월 공동연구개시,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FTA 타당성 연구 개시, 2012년 12월 타당성 연구 완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참고

2.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목적상 어떤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보충적 원산지기준 및 역

외가공규정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원산지절차 및 통관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FTA의 원산지규정은 실체적 기준인 원산지기준과 절차적 규정인 원산지절차 및 통관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체적 규정은 특정물품이 무관세 내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하고, 절차적 규정은 원산지절차, 특혜관세신청절차, 원산지검증, 원산지 사전심사, 그리고 관세협력 등에 관한 규율로 구성된다.[1)]

<표 2> 원산지 결정기준

<table>
<tr><td rowspan="20">일반적 기준</td><td colspan="4">완전생산기준</td></tr>
<tr><td rowspan="8">실질적 변형기준</td><td rowspan="6">단독기준</td><td rowspan="3">세번변경기준</td><td>2단위 세번변경</td></tr>
<tr><td>4단위 세번변경</td></tr>
<tr><td>6단위 세번변경</td></tr>
<tr><td rowspan="4">부가가치기준</td><td rowspan="3">부가가치율</td><td>직접법</td></tr>
<tr><td>공제법</td></tr>
<tr><td>순원가법</td></tr>
<tr><td colspan="2">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td></tr>
<tr><td>특정공정기준</td><td colspan="2">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td></tr>
<tr><td>선택기준</td><td colspan="3">“or 조건”</td></tr>
<tr><td>조합기준</td><td colspan="3">“and조건”</td></tr>
<tr><td rowspan="12">보충적 기준</td><td rowspan="12"></td><td>미소기준</td><td></td></tr>
<tr><td rowspan="3">누적기준</td><td>재료누적</td></tr>
<tr><td>상품누적</td></tr>
<tr><td>공정누적</td></tr>
<tr><td>중간재</td><td></td></tr>
<tr><td>간접재료</td><td>공구, 금형, 설비, 연료, 촉매제 등</td></tr>
<tr><td rowspan="2">재료가격</td><td>원산지재료의 가격</td></tr>
<tr><td>비원산지재료의 가격</td></tr>
<tr><td>공구, 부속품</td><td></td></tr>
<tr><td>용기, 포장</td><td></td></tr>
<tr><td rowspan="4">대체가능물품</td><td>개별법</td></tr>
<tr><td>선입선출법</td></tr>
<tr><td>후선입선출법</td></tr>
<tr><td>평균법</td></tr>
<tr><td>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td><td></td></tr>
<tr><td>직접운송원칙</td><td></td></tr>
<tr><td>역외가공</td><td></td></tr>
</table>

자료: 관세청 FTA포털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윤영호, FTA 원산지 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2009, p.106.

3.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Krueger(1999)는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산지규정의 '숨겨진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NAFTA를 예로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미국산 중간재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중간재 산업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Krishna and Krueger(1995) 연구의 초점은 NAFTA 원산지규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교역과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고려하면서 FTA 체결 이전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 제3국으로부터 최종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미국은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멕시코는 관세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미국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rishna and Krueger(1995)와 Falvey and Reed(1998)의 연구에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특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역내산 중재 사용이 증가한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오히려 역내산 중간재 수요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이 역내산 중간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 해당 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Rosellon(2000)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역내산 중간재 수요가 증가함을 보였으나, Ju and Krishna(2005)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역외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에서 마련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제시된 모든 종류의 기준에 대해 엄격성 지수를 부여, 최소 1에서 최대 7점 범위 내에서 지수를 만들었다. 그는 엄격성 지수와 관세철폐 스케줄을 이용하여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Cadot et al(2002)은 NAFTA의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세특혜수준의 결합효과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수준이 클수록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되는 것을 나타났다.

Anson et al.(2005)은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멕시코 입장에서 NA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 여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Carrere and de Melo(2004)의 경우 NAFTA에 관해 세 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여 원산지규정 관려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공정기준 충족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려 비용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내용이 NAFTA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stevadeordal et al.(2006)은 원산지규정과 FDI관계를 멕시코 제조업 122개 산업을 대상으로 NAFTA 체결 이후 7년 동안 이루어진 FDI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멕시코 내 투자를 결정할 때 NAFTA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고려 수담임을 밝혔다.

정인교(1999)은 CGE모형을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원산지규정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김한성 외 3인(2008)은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과 품목별 특성을 살펴볼 때, 유형별로는 FTA 체결 상대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FTA 원산지 조항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미주 지역에 위치한 칠레 및 미국과 체결한 한·칠레 FTA와 한·미 FTA는 NAFTA 유형을 따르고 있고, 유럽의 EFTA와 체결한 한·EFTA FTA는 PANEURO 유형을 동아시아에 위치한 싱가포르 및 ASEAN과 맺은 한·싱가포를 FTA와 한·ASEAN FTA는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최홍석(2007)은 세계 각국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상 특혜원산지규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원산지규정의 실체적, 절차적 까다로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주요무역국강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유의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재시하고 있다.

조정란(2010)은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완만하고 중립적이며 단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노덕률(2010)은 원산지증명 관련 비용과 업무 부담률이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Ⅲ. FTA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1.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은 Estevadeordal(2000)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었는데, 엄격성지수는 세번변경을 중심으로 지수가 부여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먼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엄격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6, 4, 2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정공정기준이 결합하는 경우 각각 7, 5, 3점이 부여된다. 세 번변경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7점,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요구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에 따라 4-5점을 부여하고 있다.[2)]

<표 3> 엄격성지수의 요건

엄격성지수(y*)	지수요건
7	CC< y* ≤CC&TECH WO
6	CH&RVC < y* ≤ CC
5	CH < y* ≤ CH&RVC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인 경우 RVC(>50%)
4	CS&RVC < y* ≤ CH 부가가치기준이 단일기준인 경우 RVC(50%이하)
3	CS < y* ≤ CS&RVC
2	CI < y* ≤ CS
1	y* ≤ CI

주: CI는 HS 6단위 이상에서의 세번변경을 의미함.
자료: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김한성외 3인(2008)

2)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p.130-131.

다음의 <표 4>는 <표 3> 엄격성지수의 요건을 참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유형별 엄격성 지수를 정리하였다.

<표 4>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엄격성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7	완전생산기준	WO
	특정공정기준	TECH
	원재료에 대한 조건과 결합기준	RM, RVC+RM, RM+TECH, RM+CC+TECH OR RVC, RM+CC OR RM+RVC, RM+CC, RM+CC+ECTC, RM+CH, RM+CH+RVC, RM+CH OR RVC, RM+CH OR RM+RVC
	원재료에 대한 조건과 선택기준	CC+TECH OR RVC+TECH, CC+TECH OR RVC, CC+TECH, CC+RVC, CC+TECH+ECTC OR NCS+TECH, CC+TECH+ECTC
	2단위 변경 결합기준	CC+TECH OR RVC+TECH, CC+TECH OR RVC, CC+TECH, CC+RVC, CC+TECH+ECTC OR NCS+TECH, CC+TECH+ECTC
6	2단위 변경과 특정세번예외	CC, CC+ECTC, CC+ECTC OR NCS
	2단위 변경 선택기준	CC OR NCH, CC OR NCH/NCS+RVC, CC OR NCH+RVC, CC OR CH+RVC, CC OR NCS, CC OR NCS+RVC, CC OR CS+RVC, CC OR RVC, CC OR RVC+TECH, CC OR TECH, CC OR ECTC, CC OR ECTC OR NCH+RVC
5	4단위 변경 결합기준	CH+ECTC OR NCH+RVC, CH+ECTC OR CH+RVC, CH+RVC, CH+TECH, CH+ECTC+RVC, CH+RVC OR NCS+RVC, CH+RVC OR RVC
	명시된 4단위 변경기준	NCH, NCH OR RVC, NCH+RVC, CH OR NCH, CH OR NCH+RVC
	부가가치기준 (50%초과)	RVC>50%
4	4단위 변경과 특정세번예외	CH, CH+ECTC, CH+ECTC OR NCS, CH+ECTC OR NCS OR NCS+RVC, CH+ECTC OR RVC, CH+ECTC OR TECH, CH+ECTC, CH OR CS+TECH

엄격성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4단위 변경 선택기준	CH OR NCS, CH OR NCS+RVC, CH OR CS+ECTC+RVC, CH OR CS+RVC, CH OR CS+TECH, CH OR RVC, CH OR TECH OR RVC, CH OR NCS OR RVC
	부가가치기준 (50%이하)	RVC≤50%
3	6단위 변경결합기준	CS+RVC, CS+ECTC OR CS+NRVC, CS+ECTC+RVC
	명시된 6단위 변경기준	NCS, CS OR NCS, NCS OR RVC, NCS+RVC
2	6단위 변경과 특정세번예외	CS, CS OR RVC, CS+ECTC
1	6단위이상에서의 변경	CI

주: CC(HS 2단위 세번변경), CH(HS 4단위 세번변경), CS(HS 6단위 세번변경), RVC(부가가치기준), TECH(특정공정기준),ECTC(특정세번 제외기준), RM(원재료에 대한 조건), WO(완전생산기준), NCH/NCS(명시된 4단위 변경/명시된 6단위 변경), NRVC(특정세번에 한해 부가가치기준), CI(HS 6단위이상에서의 세번변경).

자료: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 김한성외 3인(2008), 이용근・안창달(2011)

2.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표 5>는 한국이 체결한 9개의 FTA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와 터키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4-5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인도 CEPA가 4.07로 원산지기준이 가장 엄격한 FTA로 그리고 한・터키 FTA가 5.04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 터키와 체결한 FTA가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고, 칠레, 터키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이 가장 느슨한 FTA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FTA인 페루와 터키의 FTA 중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느슨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터키 FTA는 WO(완전생산기준), RM(원재료에 대한 조건), TECH(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연구에 따라 FTA별 엄격성 지수가 상이한 원인은 원산지기준(Preference Criterion)에 따른 엄격성 지수를 부여하는 과정상에서 차이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원산지규정 엄격성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정인교외 3인 (2005)	김한성외 3인 (2008)	고영제 (2008)	이용근 · 안창달(2011)	본 연구 (2015)
한 · 칠레	4.69	4.82	5	4.80	
한 · 싱가포르	4.57	4.59	5	4.59	
한 · EFTA		4.59	5	4.59	
한 · ASEAN		4.53	5	4.53	
한 · 인도				4.07	
한 · EU				4.9	
한 · 페루					4.1
한 · 미국		4.45	5		
한 · 터키					5.04

다음의 <표 6> FTA의 품목별(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FTA마다 품목간 엄격지수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모든 FTA에서 1차산품(1-10류), 가공1차산품(11-24), 의류직물(50-67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차산품(1-10류)은 한 · 터키 FTA가 7, 가공1차산품(11-24)은 한 · 미 FTA가 5.88, 의류직물(50-67류)은 한 · EU FTA가 6.67로 엄격성 지수가 가장 엄격하다.

<표 6>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품목군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 EFTA	한 · ASEAN	한 · 인도	한 · EU	한 · 미국	한 · 페루	한 · 터키
1차산품(1-10)	6	5.99	6.98	6.89	6.83	6.72	5.98	6.57	7
가공1차산품(11-24)	5.77	5.74	5.86	5.19	4.13	5.86	5.88	5.21	5.51
광물(25-27)	4.66	4	3.99	4	3.07	4.04	3.97	3.64	4.04
화학제품(28-40)	3.98	4.13	4.02	3.99	3.35	4.23	3.86	2.99	4.11
가죽제품(41-43)	4.86	4.27	4	4.03	3.67	4.69	4.14	4	4.13
종이목재(44-49)	4.21	4	4	4	3.07	4.69	4.55	4.8	4.03
의류직물(50-67)	5.83	5.25	5.16	5.44	5.57	6.67	5.7	5.78	6.26
비금속제품(68-70)	5.20	4.69	3.72	3.85	3.1	4.29	4.55	4.34	4.0

품목군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미국	한·페루	한·터키
금속제품(71-83)	4.51	4.25	4.07	3.99	3.61	4.15	4.35	3.08	4.01
일반기계(84)	4.22	4.07	4.17	3.99	3.09	4	2.95	2.43	4.16
전기기계(85)	4.05	4	4.08	3.85	3.1	4	2.65	3.63	4.9
운송기기(86-87)	4.39	4.68	4.03	4.33	3.82	4	4.09	4	5.56
기타운송기기(88-89)	4.39	4.26	4.02	4	3.0	4	4	4	4.0
정밀기기(90-92)	4.14	4.07	4.45	3.96	3.02	4	3.84	4	5.0
기타제조품(93-97)	4.9	4.33	4.28	4.02	3.11	4.1	4.3	3.94	4.66
전체	4.82	4.59	4.59	4.53	4.07	4.9	4.45	4.1	5.04

주: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국 FTA는 김한성외 3인(2008)의 연구, 한·인도 FTA, 한·EU FTA는 이용근외 1인의 기존연구에서 인용하였으며, 한·페루 FTA와 한·터키 FTA는 저자가 작성함.

Ⅳ. 결 론

FTA에서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원산지규정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관세철폐의 이익을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상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FTA를 통한 대외개방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도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우회수입의 방지, 역내 투자활성화 등과 같은 원산지규정 도입 목적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FTA 원산지규정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미 체결된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한국이 체결한 9개의 FTA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7개의 FTA에 대해서는 국내 기존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페루, 터키와 체결한 FTA 그리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7개의 FTA에서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4-5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인도 CEPA가 4.07로 원산지기준이 가장 엄격한 FTA로 그리고 한·터키 FTA가 5.04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 터키와 체결한 FTA가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고, 칠레, 터키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규정이 가장 느슨한

FTA로 분석되었다.

품목별(산업별)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는 FTA마다 품목간 엄격성지수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모든 FTA에서 1차산품(1-10류), 가공1차산품(11-24), 의류직물(50-67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차산품(1-10류)은 한·터키 FTA가 7, 가공1차산품(11-24)은 한·미 FTA가 5.88, 의류직물(50-67류)은 한·EU FTA가 6.67로 엄격성 지수가 가장 엄격하다.

본 연구에서 주암점을 두었던 한-칠레, 한-페루 FTA 체결에 따른 시장 전망은 페루시장은 자동차, TV, 의약품 등은 9%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이 페루시장 수출 경쟁력에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건설 수요 증가, 청정개발 메커니즘 확대, 성형수술 시장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기시장은 2012년 기준 7천 4백만명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많아 풍부한 노동력과 향후 구매력 확대가 기대된다. 對터키 수입품은 농수산물 비중이 작고, 주로 광물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 철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은 7년내 전 품목의 관세 철폐 효과 기대해 볼 만하다.

본 연구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2014년 이전에 체결한 9개의 FTA에 대해 기존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 12월 호주, 2015년 1월 캐나다와 발효된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영제, "An Analysis of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and Implications for Korea's FTA",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권순국,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2014, pp.165-192.

김관우・백형관, 『FTA 원산지 실무완성』, 두남출판사, 2013.

김세영・조국형,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2, pp.69-91.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박현희・조성제,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447-470.

이용근・안창달,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5호, 2011, pp.171-196.

이제현・김기영, "한・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3권 제3호, 2008 pp.159-184

임목삼,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3호, 2013, pp.21-36.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 05-21, 한국경제연구원, 2005.

정재완, "한국과 중국 농수산품의 경쟁력과 양국 농수산품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2호, 2013, pp.117-141.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3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253-272.

윤영호, 『FTA 원산지 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2009.

최문・이상빈, "한・중 FTA협상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12권 2호, 2011, 현대중국학회, pp.241-277.

최홍석, "FTA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황윤진,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과 한・중, 한・일간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2012, pp.279-299.

Anson José,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Jaime de Melo,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3), 2005, pp.501-517.

Cadot, Olivier, Antoni Estevadeordal, Jaime de Melo,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anuscript, University of Lausanne, 2002.

Cadot, Olivier, Antoni Estevadeordal, and Akiko Suwa-Eisenmann,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anuscript, University of Lausanne, 2003.

Carrere, C and J.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CEPR Working Paper, 2004.

Estevadeordal, Antoni, J. E. Lopez-Cordova and K. Suominen, ″How do Rules of Origin Affect Investment Flows?: Some Hypotheses and the Case of Mexico,″ INTAL-ITD Working Paper 15, 2006.

Estevadeordal, Antoni and 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a World Map and Trade Effects,″ manuscript, IDB, Washington DC, 2003.

Estevadeordal, Antoni, ″negoto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34, 2000, pp.141-200.

Estevadeordal, Antoni, ″Rules of Origin in FTAs: A World Map,″ Presented at the seminar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tin America and the Carribbean and Asia-Pacific, April 22-23, Washington DC., 2003.

Estevadeordal, Antoni and 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15, 2004.

Falvey, R. and G. Reed,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haftliches Archiv 134, 1998.

Hadri, K.(2000), ″Testing for Stationarity in Heterogeneous Panel Data,″ Econometric Journal, 3, 148-161.

Im, K.S., M.H. Pesaran and Y. Shin(2003), ″Testing for Unit Root in Heterogeneous Panels,″ Journal of Econometrics, 115, 53-74.

Kao, C.(1990), "Spurious Regression and Residual-based tests for Cointegration in Pane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90, 1-40.

Kao, C. and M. H. Chaing(2000), "On the Estimation and Inference of a Cointegration Regression in Panel Data," Advances in Econometrics, 15, 179-222.

Krishna, K. and A. O. Krueger,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Krueger, A. O.,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J. R. Melvin, J. C. Moore and R. Riezman eds.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 Essay in Honour of John S. Chipman, 91-101, New York: Routledge, 199.

Levin, A., C.F. Lin and C. Chu(2002), "Unit Root Tests in Panel Data: Asymptotic and Finite Sample Properties," Journal of Econometrics, 108, 1-24.

Pedroni, P.(1999), "Critical Values for Cointegration Tests in Heterogeneous Panels with Multiple Regressor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 653-670.

Pedroni, P.(2000), "Fully Modified OLS for Heterogeneous Cointegration Panels," Advances in Econometrics, 15, 93-130.

Pedroni, P.(2004), "Panel Cointegration: Asymptotic and Finite Sample Properties of Pooled Time Series Tests with an Application to the PPP Hypothesis," Econometric Theory, 20, 597-627.

Phillips, P.C.B. and H. Moon(2000), "Nonstationary Panel data Analysis: An Overview of Some Recent Developments," Econometric Reviews, 19, 263-286.

Rosellon, P. L.,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9, 397-425, 2000.

www.fta.go.kr

www.fta.customs.go.kr

www.kosis.kr

ABSTRACT

A Study on the Restrictiveness of Rules of Origin in Korea FTA

Son, Yong-J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ictness of the rules of origin for each product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FTA rules of origin, and present reference data on the rules of origin for FTAs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Of nine FTAs concluded in Korea, this study gave focus on the FTAs with Peru and Turkey and cit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remaining seven FTAs. The strictness level in the FTAs concluded with Peru and Turkey, and the seven FTA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as between 4 and 5. The Strictness level for the CEPA between Korea and India was 4.07, which has the most strict FTA rules while the strictness level in the Korea Tureky FTA was 5.04, which was the least strict. Rules of origin in the Korea Turkey FTA of the FTAs which have been concluded so far were least strict because products for which WO, RM and TECH standards were applied increased relatively.

Keywords : Restrictiveness, Rules of Origin, FTA

부 록

1. 한국무역보험학회 정관
2. 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칙
3. 논문심사위원단 운영규칙
4.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요령
5.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연구윤리헌장
6.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7. 한국무역보험학회 표절규정

1. 한국무역보험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한국무역보험학회(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약칭 KATCI ; 이하 “이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무역보험(무역보험법 기준)에 관한 경제, 경영, 법학, 상무 등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 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학회는 학회지의 발간, 학술발표대회의 개최 및 그 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의 4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무역보험과 관련되는 학과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무역보험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과정에서 무역보험과 관련되는 학과를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무역보험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각 기업체에서 5년 이상 무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

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

④ 기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제단체 및 기업체로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⑤ 명예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타 기관과의 유대강화와 학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명예회원은 이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 중 학회의 목적에 배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와 임원

제 7 조 (기구 및 임원)

이 학회에는 다음의 기구 및 임원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회장
5. 차기회장
6. 부회장
7. 감사
8. 사무국장

제 8 조 (총회)

① 총회는 이 학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학년도말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9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의 개정,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학회의 해산과 청산 등 총회의 부의 안과 그 밖의 이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술지와 학회보의 발간, 국내외 학술발표대회, 세미나 등의 개최
2. 국내외의 제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교류업무
3. 정관의 시행세칙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4. 차기회장의 선임 및 사무국장의 지명 동의
5.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 동의
6.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 결의
7. 사무국의 운영, 회원의 회비, 기금 조성, 재산 등의 관리운영
8. 그 밖의 이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 11 조 (회장)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은 1명으로 한다.
③ 회장은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시에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2 조 (차기회장)

①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 총회에서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② 차기회장은 1명으로 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③ 차기회장은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1명의 후보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차기회장은 회장임기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② 부회장은 8명 이내를 둔다.
③ 부회장은 정회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학회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감사)

①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 정기총회에서 호선된 5명 내외의 전형위원에게 위촉하여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 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1명의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사무차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무를 통괄한다.
④ 사무차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발표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자체평가와 논문심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연구윤리위원회 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기타 이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예, OO위원회 또는 OO TF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 계

제 19 조 (재정)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예산)

①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해 산

제 21 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2 조 (정관 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의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은 발기인 중에서 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되며, 초대부회장, 감사 및 운영이사는 초대회장이 임명한다.
2.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1999년 6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3장 중 기구의 개선에 관한 조항은 차기회장의 회장임기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학술논문집 "무역보험연구"지(학술발표대회논문집 포함)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 편집방향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의 광역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논문의 심사와 기준 및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할 차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 경제, 경영, 법학 등 무역보험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3편 이상이고, 무역보험 관련 대외활동이 현저한 자
4. 1종 이하의 타 등재(후보)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자

제 5 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① 학회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으신 분의 수연(회갑, 정년퇴임, 고희, 팔순, 미수 등)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학회의 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논문투고요령과 작성방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논문의 투고자격은 제출일 현재 이 학회의 온라인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으며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로 한다.

제 6 조 (편집의 방향과 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된 논문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접수받으면,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의 “무역보험연구”지 논문투고요령과 원고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④ 게재 대상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이 해당 권 호에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이 경우 투고건수는 1건으로 본다.

⑤ 이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정상적인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나,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⑥ 게재 대상 논문의 필자들이 특정한 광역지역에 편중된 경우에는, 새로운 광역지역에 소속된 필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⑦ 게재 대상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이 이 규칙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무역보험에 직접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⑧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동일 필자가 4회 간격 이내에 연속적으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았더라도 이는 게재 편수의 선정에서 후순위로 한다.

⑩ 타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된 논문은 이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7 조 (논문 게재여부의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
2.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3. 수정보완후 재심사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간에 크게 다른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인제공자를 배제한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편성순서)

논문집의 편성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된 순위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집의 특성과 연구분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논문심사 및 게재 예정의 논문이 결정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출간절차를 밟는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이 사무국에 접수된 후에는 투고증명서를, 제출된 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각각 발행한다.

제 10 조 (벌칙)

편집위원회는 사무국에 제출된 논문이 심사 전후를 막론하고 표절, 중복 등으로 게재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최하 2년 이상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기타)

①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논문심사위원단 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학술논문집 “무역보험연구”지(학술발표대회논문집 포함)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단,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단)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을 둔다.

제 3 조 (위원단의 구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배정)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내·외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3. 최근 5년 이내의 국내·외 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 토론 또는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심사위원단장은 각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절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배정, 투고논문의 심사적합여부를 예비심사하는 편집위원, 간행이사 등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5 조 (논문의 작성방법)

① 투고논문은 사회과학 표준에 따른 각주(footnote)와 참고문헌을 표기하고, 논문내용에 관한 간략하고 정확한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저자 중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50% 이상 공헌한 자를 제1저자로 따로 표기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시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처리한다.

③ 논문의 작성은 국문(한문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분야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 외국어로 된 논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사용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용 국문요약은 적어도 원문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게재용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이어야 한다.

⑤ 논문의 분량은 편당 A4 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필자에게 별도의 게재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기타의 논문작성방법은 이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요령에 의한다.

제 6 조 (논문의 심사기준과 절차)

①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게재여부의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필요시), 심사위원단의 본심사,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논문의 형식과 이 학회의 목적 적합성 등에 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적합여부의 판정은 예비심사에 참여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단장은 투고논문의 필자를 익명으로 하여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위원단 중에서 투고논문의 전문성, 소속기관과 연고지의 동일성 등

제척사유를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내용의 독창성(3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10점)
4. 선행연구와 문헌활용(20점)(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정확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20점)
6 기타 편집위원회에 특별히 전달할 사항 및 첨부자료(배점 없음.)

⑥ 심사위원은 제5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위원단장에게 제출한다.

⑧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이 학회의 홈페이지나 e-메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사위원은 수정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와 수정보완지시의 내용을 명기하여 심사위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료 등)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제출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에는 논문집의 출간 전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이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환불한다.

③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현금이나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 8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요령

Ⅰ. 논문투고요령

1. 이중게재 금지 :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
2. 논문투고신청서 :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연구분야, 성명(한글과 영문), 소속과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락처, E-mail 등을 표기한다.
3. 공동연구인 경우 : 소속과 함께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언어 : 논문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외국어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필수로 한다.
5. 연회비 : 논문 제출일 현재 연회비 3만원을 이 학회의 계좌에 납부하고, 비회원인 경우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가입비 면제).
6. 심사료 : 논문 제출시에는 심사료 5만원을 이 학회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7. 게재료 : 논문의 게재 확정시에는 게재료 15만원(연구비 지원논문 20만원)을 이 학회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매수(2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게재료(1Page당 1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논문심사료/게재료 납부통장】

우리은행 1002-544-035305, 예금주 : 한국무역보험학회

8. 논문투고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9. 논문제출 프로그램은 이 학회의 온라인 정회원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10. 논문제출처 : 학회 e-메일(katci9@hanmail.net)이나, 학회 홈페이지(www.katci.or.kr)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무역보험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논문
제목</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2">논문분야(√)</td><td colspan="5">무역보험(무역보험법 기준)에 관한</td></tr>
<tr><td>경제분야</td><td>경영분야</td><td>법학분야</td><td>상무분야</td><td>기타분야</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제 1
저자</td><td>성 명</td><td colspan="2">한 글</td><td colspan="3">영 문</td></tr>
<tr><td>소 속</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3">휴대폰</td></tr>
<tr><td colspan="5">E-mail</td></tr>
<tr><td rowspan="4">공동
저자</td><td>성 명</td><td colspan="2">한 글</td><td colspan="3">영 문</td></tr>
<tr><td>소 속</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3">휴대폰</td></tr>
<tr><td colspan="5">E-mail</td></tr>
<tr><td rowspan="4">공동
저자</td><td>성 명</td><td colspan="2">한 글</td><td colspan="3">영 문</td></tr>
<tr><td>소 속</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전 화</td><td colspan="3">휴대폰</td></tr>
<tr><td colspan="5">E-mail</td></tr>
<tr><td colspan="2">원고매수</td><td colspan="2"></td><td>제출일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우 편 물
수령주소</td><td colspan="5">우편번호)</td></tr>
<tr><td colspan="2">논문개요</td><td colspan="5"></td></tr>
</table>

한국무역보험학회 논문편집위원장 귀하

Ⅱ. 논문작성요령

1. 논문작성지침

① 투고신청서 : 논문제목, 필자의 성명, 소속, 직위, 연락주소, 전화번호, FAX 및 E-mail 주소 등을 명기한다.

② **논문구성 : 논문제목→ 저자 성명→ 목차→ 국문요약(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제목, 저자, 내용, Keywords) 순으로 작성한다.**

③ 분량 : 아래의 편집규격에 따라 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문장 : 국문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영문으로 쓰거나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 )에 원어를 표기한다.

⑤ 규격 : [편집용지] 16절(190 x 260), [여백주기] 한글(HWP) 기준의 위쪽・아래쪽 20, 왼쪽・오른쪽 20, 머리말・꼬리말 15, [글자모양] 신명조, 본문크기 10. 5포인트,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160 양쪽혼합정렬, 문단여백은 0, [각주] 글자크기 8. 5, 신명조, 줄간격 130으로 한다.

⑥ **본문 제목 : 장(章), 절(節,) 항(項,) 목(目) 등의 구분은 로마숫자 Ⅰ,Ⅱ,Ⅲ → 1,2,3 → 1),2),3) → (1),(2),(3) → ①,②,③의 순으로 표기한다.**

⑦ 본문중 문헌인용 : 저자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또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예, 홍길동(2010 : 23)은…

⑧ 참고문헌 배열 : 국내문헌, 외국문헌, 기타 문헌자료의 순으로 하되, 저자이름을 기준으로 자모순으로 같은 저자의 문헌이 여럿일 때에는 발간연도의 순으로 배열한다.

⑨ 영문초록(abstract) : 영문의 논문제목, 저자이름, 400자 이내의 영문초록, 핵심 주제어(keyword) 4-5단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논문편집규격

편집용지		문단모양	
위 쪽	20	정렬방식	양쪽혼합
아래쪽	20	왼 쪽	0
왼 쪽	20	오른쪽	0
오른쪽	20	첫 줄	들여쓰기, 20.0pt
머리말	15	문단 위쪽	0
꼬리말	15	문단 아래쪽	0
제 본		줄간격	160
용지종류	폭 190.0㎜		
	길이 260.0㎜		

3. 워드작성방법

구 분	글 꼴	글자크기
논문 제목	한글 : 가는헤드라인 영문 : 가는헤드라인	한글 : 17 영문 : 13
저자 이름	한글 : 신명조 영문 : 신명조	한글 : 13 영문 : 13
Abstract 주제	신명조	13
Abstract의 본문내용	신명조	10.5
Keyword	신명조	10.5
목 차	신명조	12
목차 내용	신명조	10.5
로마숫자(Ⅰ, Ⅱ…)의 제목	신명조	15
아라비아숫자(1, 2…)의 제목	신명조	12
참고문헌 제목	신명조	15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5
각주의 내용	신명조	8.5
표 제목	신명조	10.5
표 내용 및 자료표시	신명조	9
기타 논문전체의 본문 내용	신명조	10.5

4.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방법(※사회과학 표준에 따름.)

인용문	원칙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한다. ·문헌의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p.)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1) …에 관하여 홍길동(1996: 53)은 …… 2)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홍길동, 2000). 3) Levine et al. (1995)은 …… 4) 최근의 연구자료(홍길동, 2000; Levine, 1995)에 의하면……
각주	원칙	각주(footnote)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예, 1) 2) 3)…)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
	예시	1)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참조; 대법원 96누110044(1996. 12. 10.). 2) 홍길동, 『수출보험론』, 무역출판사, 2000, pp. 000-000. 3) 홍길동, 전게서, pp. 000-000; 상게서, pp. 000-000. 4) D. Lapp and J. Flood,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47(4)*, 2004, pp. 000-000. 5) Lapp and Flood, *op. cit.*, pp. 000-000; *Ibid.*, pp. 000-000.

참고문헌	원칙	·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어로 된 이름은 성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 글자만 표기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시에 따른다.
	예시	1) 홍길동, 『수출보험론』, 무역출판사, 2004. 2) 홍길동,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4. 3) Levine, J. W.,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 Van Nostrand, 1998. 4) Lapp, D. and Flood, J.,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47(4)*, 2004.

5. 기타

①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림파일의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그림 원본의 출력물 각 1장씩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

③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을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주해를 붙일 수 있다.

④ 문자로 숫자를 표기한 경우, 서양식 표기방법(예 : 100천, 1,500백만, 1만 2,345원 등)을 지양하고 동양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예: 5000, 100만 등).

5.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연구윤리헌장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 회원은 학술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학문적 양심, 도덕적 의무,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고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고 학술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학계의 신뢰받는 연구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이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회원은 이 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과 기타 이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학회의 임원은 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이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무역보험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이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이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년 7월 1일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원 일동

6.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이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회원이 학술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학회 내 학술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학회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술연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이 학회의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이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학문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학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학회 정관에 삽입함.)

제 2 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제 7 조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이 학회의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 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0 조 (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학회의 회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이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 중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2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하며 조사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 학회의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이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 17 조 (판정)

① 회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② 본조사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 또는 무혐의로 판정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 18 조 (연구지원기관 등에의 보고)

① 조사결과는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19 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피조사자의 공개사과 등을 명할 수 있다.

1. 회장은 조치결정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논문의 직권취소 및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본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할 수 있다.
3. 논문제출 자격정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하 2년 이상 금지시키되, 그 경중에 따라 연간 단위로 상향 조치한다.
4. 회장은 조치결과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연구지원기관에 징계의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5.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이 학회의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 개정 및 준용)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한국무역보험학회 표절규정

제 1 조(정의)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 조(유형)

이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자기표절 포함)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 3 조(심사주체)

논문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거나, “무역보험연구”의 발행일 이전에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판정 및 제재내용의 확정은 이 학회의 사무국, 논문심사위원단 및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4 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제재를 가한다.

1. 이 학회의 “무역보험연구”에 최하 2년 이상 투고를 금지한다.
2. 해당 권 호의 “무역보험연구”에서 논문을 삭제한다.
3.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표절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해당 표절자에게 통보한다.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지원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